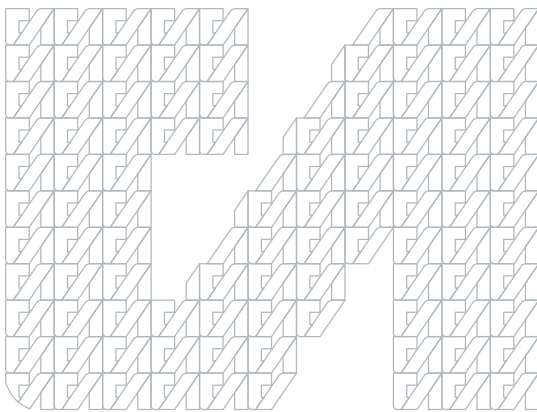


# 세종시 성평등 확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추진방안

Study on Methods to Enhance Effectiveness of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Analysis and Gender Equality in Sejong Area

류유선



**연구책임  
공동연구**

- 류유선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박민정 / 세종연구실 위촉연구원

정책연구 2017-00

## **세종시 성평등 확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추진방안**

발행인 박 재 목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 쇄 청맥기획 TEL 042-487-2589 FAX 042-487-188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자치특별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 요약 및 정책건의

### ■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 정책수립과 집행의 전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담아냄으로써 특정성에 정책효과가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배분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1년 제정됨으로써, 성주류화의 제도화가 완성되었음
- 이에 여성가족부는 전국 16개 시도에 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통한 성 주류화의 구체적 실천과 성평등의 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담당 센터의 부재로 인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으나, 2017년부터 대전세종연구원의 확대개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전담하게 되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진행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추진체계 및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성주류화 현황을 살펴보고,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는 컨설턴트들의 컨설팅 경험을 기반으로 성주류화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성평등 확산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 연구 방법

- 문헌연구 및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연도별 성과 분석
- 전국 16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대상 설문조사

- 세종시 성평등현황을 위한 성별통계 분석
-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및 젠더 전문가 콜로키움 및 자문

## ■ 연구내용

-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현황분석
- 세종시 인구변화 추세(지역, 청년, 어린이, 고령인) 및 특성
- 전국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대상과제 선정방식 분석
-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컨설턴트 및 수행공무원 심층면접 조사

## ■ 정책제언

-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교육 강화
- 실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인센티브 제도화
- 시민단체 및 의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 성별통계 추적
-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세부 전략 마련

# 차 례

1장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내용과 방법 .....	9
2장 성평등 확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선행연구 .....	11
1. 성주류화 .....	13
2. 성평등 확산(외국사례) .....	21
3. 성별영향분석평가 .....	37
4. 성인지예산 .....	41
3장 세종시 현황 .....	49
1. 세종시 인구 특성 .....	51
2. 주요 성주류화 정책추진현황 .....	58
4장 세종시 성평등지수지표 현황 .....	87
1. 성평등지수 .....	89
2. 세종시 성평등지수지표 현황 .....	91
5장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방식 .....	117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현황 .....	119
2.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대상과제 선정 방식 조사 .....	127
6장 정책제언 .....	145
1. 2017년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총평 .....	147
2.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언 .....	156
참고문헌 .....	163

## 표 차례

[표 1-1] 국가·지역 성평등지수 지표 .....	6
[표 2-1] 전문직 내 남성 집중 직업의 남성비율과 급여 .....	17
[표 2-2]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센터) 현황 .....	40
[표 3-1]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현황 .....	52
[표 3-2] 세종시 연령별 인구 .....	53
[표 3-3] 세종지역 대학졸업자 취업률 .....	58
[표 3-4] 세종특별자치시 성주류화 관련 법적근거 .....	63
[표 3-5]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 현황 .....	64
[표 3-6] 2012년 분석평가 추진 성과 .....	65
[표 3-7] 2013년 분석평가 추진 성과 .....	67
[표 3-8] 2014년 분석평가 추진 성과 .....	69
[표 3-9] 2015년 분석평가 추진 성과 .....	72
[표 3-10] 2016년 분석평가 추진 성과 .....	77
[표 4-1] 국가·지역 성평등지수 지표 구성 비교 .....	90
[표 4-2] 전국·세종시 성평등 지수, 지표 구성 비교 .....	92
[표 4-3] 세종시 취업가능 일자리 및 희망급여 .....	97
[표 4-4] 세종시 종사상 지위 .....	97
[표 4-5] 근로여건 만족도 .....	98
[표 4-6] 구직활동 여부 및 취업의 어려움 .....	99
[표 4-7] 세종시 광역의원수 .....	100
[표 4-8] 세종시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 .....	101
[표 4-9] 지자체 여성공무원 비율 .....	102
[표 4-10] 세종시 주요부서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 .....	102
[표 4-11] 2015년 전국 위촉직 여성참여비율 .....	103
[표 4-12] 2015년 세종시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	103

[표 4-13] 2016년 세종시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	104
[표 4-14] 세종시 평균 교육년수 .....	105
[표 4-15] 세종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105
[표 4-16] 세종시 공적연금 가입자 전체 .....	106
[표 4-17] 세종시 국민연금 가입자 .....	106
[표 4-18] 세종시 공무원연금 가입자 .....	107
[표 4-19] 세종시 기초생활수급자 .....	107
[표 4-20] 세종시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	108
[표 4-21] 세종시 건강검진 수검률 .....	109
[표 4-22] 세종시 스트레스 인지율 .....	110
[표 4-23] 세종시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	110
[표 4-24] 세종시 범죄발생지 .....	111
[표 4-25] 세종시 범죄발생지역 .....	111
[표 4-26] 가사노동시간 .....	112
[표 4-27] 세종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	113
[표 4-28] 세종시 가족관계 만족도 .....	113
[표 4-29] 세종시 육아휴직자 .....	114
[표 4-30] 여가시간 .....	115
[표 4-31] 세종시 여가활용 만족도 .....	116
[표 4-32] 세종시 인터넷 이용률 .....	116
[표 5-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점검 포인트 .....	120
[표 5-2] 조사 개요 .....	128
[표 5-3] 설문조사 참여센터 .....	130
[표 5-4] 지역센터 대상과제 선정방식 .....	130
[표 5-5] 대상과제 선정방법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 .....	134
[표 5-6] 대상과제 선정방법의 객관성 .....	135
[표 5-7] 대상과제 선정방법이 업무협조를 위한 효과성 .....	135
[표 5-8] 대상과제 선정방식 변경여부 .....	136

[표 5-9] 대상과제 선정방식 도입 이유와 선정기준 .....	136
[표 5-10] 지역별 현재·과제선정 방식의 장·단점 .....	138
[표 5-11] 대상과제 선정방식 체크리스트 사용 유무에 따른 만족도 차이1 ..	140
[표 5-12] 대상과제 선정방식 체크리스트 사용 유무에 따른 만족도 차이2 ..	141
[표 5-13] 대상과제 선정방식 변경 의향에 따른 만족도 차이1 .....	142
[표 5-14] 대상과제 선정방식 변경 의향에 따른 만족도 차이2 .....	142
[표 5-15] 대상과제 선정방식 만족도 항목 간의 상관관계 .....	144
[표 5-16] 체크리스트 사용 유무에 따른 대상과제 선정방식 변경의향 차이 ..	144
[표 6-1] 2017년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일정 .....	148



## 그림 차례

[그림 2-1]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추진체계도 .....	41
[그림 2-2]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흐름도 .....	44
[그림 3-1] 세종시 연도별 인구변화 .....	51
[그림 3-2] 연령별 인구 구성비 .....	54
[그림 3-3] 세종지역 11세 이하 인구 비율 추이 .....	55
[그림 3-4] 시도별 11세 이하 인구 비율(2016년) .....	55
[그림 3-5] 세종시 어린이 성비 추이 .....	56
[그림 3-6] 세종시 청소년 성비 추이 .....	57
[그림 3-7] 세종시 청년 인구 추세 .....	57
[그림 3-8]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연도별 발전 현황 .....	63
[그림 5-1]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운영체계 .....	121
[그림 5-2] 2017년 세종시 체크리스트 .....	123
[그림 5-3] 2017년 대전시 본청 체크리스트 .....	124
[그림 5-4] 2017년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추진 일정 .....	126



# 1장

## 서론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1장 서론

##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 세종시의 성장과 성주류화의 역할

2012년 출범한 이래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해왔다. 2010년(구 연기군) 83,504명이었던 인구는, 2012년 115,388명, 2015년에는 2십만 명을 넘었고, 2017년 4월 말, 세종시 인구는 258,00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http://www.sejong.go.kr/index.jsp>, 2017년 5월 5일 검색). 이와 같은 인구의 증가는 교통, 복지, 교육, 문화 등 인프라의 확장과 함께 도시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주민의 유입에 따른 지역민 증가와 이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지역민의 필요와 욕구를 담아내려는 세종시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절벽이라는 시대의 과제 앞에서 ‘여성’이라는 대상이 정책에서 주요해지고 있다. 정책형성에 주요한 참조집단이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지만, 여전히 출산과 양육, 돌봄 등 여성의 책임이라고 넘겨졌던 분야가 주를 이룬다는 점은 비판의 지점이 되고 있다. 여성 관련 정책이 사적영역 및 재생산과 계속 연계되면서 기존 여성의 역할과 위치를 강화하는 사회 담론을 재생산하는 효과를 지속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담론 속에서 여성이 정책대상으로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은 성주류화제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여성대회이후,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은 성평등의 주요 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다. 성주류화는 “정부기관과 정책에 젠더이슈를 체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the systematic incorporation of gender issues throughout all 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policies)” 이다(Pollack and Hafner-Burton, 2000:434, 류유

선·주혜진, 2016 재인용). 이는 모든 정책에 젠더이슈를 통합하는 것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모든 정부기관이 구조적으로 젠더이슈를 통합한다는 것은 정부기관이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에 젠더개념과 젠더이슈들을 구조화한다는 의지이며, 이런 정부기관의 종사자들은 젠더를 이해하여 정책의 수립과 실행과정에 젠더이슈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뜻이다. 즉 성주류화는 정부기관과 구성원 모두가 젠더를 체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주류화의 주요한 도구가 바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이다. 2002년부터 시작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적 기반마련과 제도화과정을 통해 성평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성평등의 개념은 모호하고 특정한 지표로 그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평등의 지표는 EU가 정의하는 성평등지수(Gender Equality Index)다. 유럽연합의 근본적인 가치인 권리와 공정을 바탕으로 하는 성평등과 이를 확산하기 위한 성평등지수는 물론 유럽연합의 정책 틀과 관련이 깊은 노동, 수입, 지식, 시간, 권력, 건강 등 6개의 영역에서 젠더격차(gender gaps)을 측정하는 종합 지표다(EIGE, 2015; 김경희 외, 2015<sup>1)</sup>).

유럽에서도 성평등은 규범적·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주제로 다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정책영역에서도 일관되게 정의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유럽의 성평등지수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평등한 품위와 완전함, 그리고 자산영역의 평등함(equal share of assets and equal dignity and integrity between women and men)”이라는 실용적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성평등지수는 섹스나 젠더의 공간적·문화적 유동성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EIGE, 2015). 즉 양성평등에 머물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나 성주류화에 대한 비판이다. 국적과 인

---

1) EIGE(2015), Gender Equality Index 2015-Measuring gender equality in the European Union 2005-2012, (<http://eige.europa.eu/sites/default/files/documents/mh0215616enn.pdf>, 검색 2017.05.50; 김경희외(2015), 성주류화 기반 정책 평가제도의 성평등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종, 종교와 언어, 연령과 지역, 학력과 계층 등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에서도 다양성을 확장하는 것이 다양한 지역민의 이해와 욕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실제적 성평등이라는 주장이다.

캐나다의 성분석플러스(Gender-Based Analysis plus)가 선제적 대응의 사례이다. 성분석플러스(GBA+)는 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와 다른 계획들이 남성과 여성의 다양한 그룹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를 분석하는 틀로 젠더 이외에 나이, 교육, 언어, 지리, 문화와 수입 등과 같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다. 1995년에 캐나다연방정부는 성평등의 발전 수단으로 GBA+를 시작했다. 캐나다 헌법의 일부인 자유와 권리헌장에 새겨진, 캐나다인의 주요한 가치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그들 내부의 모든 다양성을 포함하며, 시민 모두가 캐나다의 모든 생활 영역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포용적 민주주의사회를 의미한다(<http://www.swc-cfc.gc.ca/gba-accs/index-en.html>, 2017.05.05. 검색).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2016년 글로벌젠더격차지수(Global Gender Gap)의 경제분야 순위를 살펴보면, 아이슬란드(Iceland)가 1위, 그 뒤를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이 잇고 있으며, 캐나다는 35위에 그치고 있다(<http://reports.weforum.org/global-gender-gap-report-2016/rankings/>, 2017년 5월 10일 검색). 이런 맥락에서 캐나다에서는 ‘남녀가 동등하다 따라서 GBA+는 필요없다’ 라는 식의 이견은 성평등이 쉬운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캐나다 남성이 1달러는 버는 동안 해나다 여성은 73.5센트를 벌고 있는 객관적 현실은 남녀 격차만을 반영한 글로벌젠더격차지수가 캐나다에서 사회현상임을 설명한다. 삶의 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제분야에서 여성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http://www.swc-cfc.gc.ca/gba-accs/index-en.html>, 2017.05.05. 검색). 2016년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젠더격차지수에서 한국은 116위다.

여성가족부가 2017년 1월 2일 발표한 ‘2015년 지역성평등지수’에서 세종

이 포함된 충남의 분야별 성평등지수는 우려할 만하다. 경제활동분야에서 10위, 의사결정에서 15위, 교육 및 직업훈련에서 12위, 복지분야 14위, 보건 13위, 안전 14위, 가족 5위, 문화와 정보 15위다. 가족분야를 제외하고는 전 분야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세종지역의 성평등 수준이 충남과 동일하지 않지만 정확한 수치를 알기는 어렵다([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 2017년 5월 11일 검색).

**[표 1-1] 국가·지역 성평등지수 지표**

영역(3개)	분야(8개)	국가성평등지수의 구성 지표(23개)	지역성평등지수지표(23개)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성별 임금격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결정	국회의원 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관리직 비율
		정부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교육·직업훈련	평균 교육년수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여성의 인권, 복지	복지	비빈곤 가구주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장애인 고용률	건강검진 수검률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스트레스 인지율
		건강검진 수검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스트레스 인지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사노동시간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성평등의식, 문화	가족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가족관계 만족도	여가시간
		육아휴직자	여가 만족도



문화, 정보	여가시간	인터넷 이용률
	여가 만족도	여가만족도
	성별정보화격차	인터넷 이용률

성장 중인 세종시가 인권과 정의라는 차원에서 성평등을 이뤄나가기 위해 성주류화제도를 어떻게 안착시킬지, 그리고 여러 분야의 남녀격차를 어떻게 완화시켜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 □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의 부재

2008년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담당할 <정책의 분석·평가지원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 운영규정]에 대한 훈령을 제정하면서 센터 지정기준과 기능, 인력의 자격 기준 등을 규정이 마련했다. 각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과 자문을 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이 담당한다. 200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기도 여성가족연구원, 충남여성정책연구원, 부산가족여성연구원,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등 최초 5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기관을 선정된 이래로, 2012년에는 중앙센터 1곳과 전국 16개 시·도에 총 17개의 센터가 지정되면서 국가차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체계화가 마련되었다(우수정, 2014; 류유선·주혜진, 2016; 여성가족부, 2017<sup>2)</sup>).

각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지정을 받아 연 단위로 운영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2) 우수정(2014),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발전방안 모색,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868-895; 류유선·주혜진(2016).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연구; 여성가족부 (2017),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운영안내

인지예산제도를 자문·지원하고, 제도의 주체인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활동을 지원한다. 즉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동시에 성주류화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하게 하는 기능을 통해 지역의 성평등을 확산하는 기능을 한다.

각 시·도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제도의 주체인 공무원, 전문가집단,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거버넌스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고유 업무는 아래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지원(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대한 상담·자문,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한 대상정책 선정,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반영에 대한 이행점검, 대상정책별 개선안 도출 지원, 지역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sup>3)</sup>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지원<sup>4)</sup>
- 지역별 컨설턴트 운영·관리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sup>5)</sup>
- 지역별 성별영향분석평가 DB구축 및 관리운영 지원<sup>6)</sup>
- 지역별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발간
-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 개최(거버넌스 구축)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연구개발
- 지역별 성별통계 관리 및 사업수행, 실적보고 등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하여

---

3) 여성가족부(2016),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4) 여성가족부(2016),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5) 여성가족부(2016),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6) 여성가족부(2016),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sup>7)</sup>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부재는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체계적인 수행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성주류화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세종지역의 성평등을 확산할 성주류화제도, 이의 주요 도구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세종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한 시기다. 이에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세종시에 정착할 수 있는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6개 타시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채택하고 있는 대상과제 선정 방식에 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세종시 공무원, 시의원, 그리고 센터전문가들의 콜로키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트의 자문을 통해 세종시에 적합한 대상과제 선정방식과 추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성주류화와 성평등 확산의 외국사례, 성별영향분석과 성인지 예산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성평등 확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둘째, 세종시의 성평등 현황을 분석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는 지역 성평등지수에 세종시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발표

---

7) 여성가족부(2016),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하는 지역의 성평등지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종지역의 성평등지수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각종 통계를 수집 및 분석하여 유사하게 지표를 제시하였다.

셋째, 전국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과정과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시·도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선택된 대상과제 선정방식에 대해 각 센터의 만족도와 업무효율성도 함께 조사했다.

넷째, 젠더전문가 및 세종시 공무원과 시의원과의 콜로키움 및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대전 및 충남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연구원의 자문을 통해 세종시에 적합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방식을 제안했다.

## 2장

# 성평등 확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선행연구

1. 성주류화
2. 성평등 확산(외국사례)
3. 성별영향분석평가
4. 성인지예산



## 2장 성평등 확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선행연구

### 1절. 성주류화

#### 1. 성주류화

- 1975년 세계여성대회가 개최되면서 ‘양성평등’ 과 ‘성주류화’ 에 대한 이슈가 세계적으로 떠올랐다. 특히,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가 후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성 평등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 의 전제조건으로 성주류화를 채택 · 선언하게 된다 (정유선, 2015, 25쪽).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북경여성대회의 행동강령 이행차원에서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을 만들었으며, 2000년 이후 여성단체의 주도적 역할을 통하여 성주류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정책도구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를 국가정책 전반에 적용하는 형식으로 제도화되었다 (정유선, 2015, 25쪽). 또한 한국에서는 중앙·지방 및 교육기관이 제도를 수행하고 공무원의 주도하면서 전문가와 협력하는 구조 선택하였다 (성지혜·이미원 , 2012, 20-21)
- “성 주류화는 ‘여성’ 만을 대상으로 하던 이전의 접근과 달리 가부장적 규범, 제도, 조직, 나아가 구조적 질서를 문제시하고 이에 도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성 평등에 대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sup>8)</sup> (마경희, 2007, 39쪽). 다시 말하면, 성주류화란 “정치적, 경제적, 사

---

8) 마경희(2007).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여성학, Vol.23 No.1, p. 39

회적 영역의 모든 정책을 수립, 집행, 평가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삶의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양성(性)이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sup>9)</sup> 그 목적은 성평등 실현에 있다(정유선, 2015, 25쪽).

- 따라서 진정한 성 주류화란 단순히 사업 활동에 부수적으로 여성의 참여나 여성지원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사업의 과정, 참여인력, 예산배정, 투입물, 결과, 영향이라는 모든 요소 및 포괄적 과정의 변화를 의미한다(오은정, 2011, 18쪽).
- “성주류화는 모든 수준, 모든 단계의 모든 정책에 성평등의 시각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정을 평가·개발·개선·(재)조직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해야 한다. 남자가 사회 각 분야에 충분한 참여와 세력화를 이루기 위한 조직의 재구조화 과정이므로, 인력과 재정자원의 재분배, 제도와 문화의 변화 등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변화과정이 필요하다”(김경희, 2010, 10쪽).

## 2. 성주류화의 목표 및 전략

- “성주류화가 목표하는 전환은 여성을 남성 방식으로 동화시키거나 여성과 남성의 이원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주류를 변화시킴으로써 차이를 차별하지 않는 새로운 권력 관계의 비전을 의미한다”(허라금, 2008, 45쪽). 즉, 성 주류화는 모든 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체계적인 노력으로써 성평등 증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기존의 정책전략과 차별화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문옥희·박경애, 2014, 5쪽).

---

9) 김양희(2003). 젠더 통합된 환경정책의 의미와 발전 과제. 주제발표 2를 이용



-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정의(definition)에 의하면, 성 주류화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sup>10)</sup> 전략이다(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97; 최희경, 2007: 406).
- 하지만, 정부가 성주류화 전략을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전략으로 표방하였지만 실제 성주류화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이기순, 2008). 특히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여성정책의 추진전략으로 도입된 성주류화 전략이 기존의 성평등 전략과 차이가 나는 지점은 무엇이며, 성주류화의 개념과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허라금(2005)는 젠더에 대한 성찰 없이 남성위주로 짜인 발전의 틀 안에 여성을 단순히 포함시켜 남녀평등을 이루려는 정책은 진정한 의미에서 젠더 구조에 민감한 성주류화 정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이기순, 2008)하였으며, 이재경, 김경희(2012)는 과거 여성대상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지 못한 채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거나 형식적인 평등개념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이기순, 2016, 22-23 요약정리).

### 3. 성주류화 과정

- 성주류화는 모든 영역에서 젠더로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전략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여성 정책을 특정 분야 위주로 보는 것에서 탈피하여 모든 분야의 정책에서 젠더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성주류화의 과정에는 여성의 주류화-젠더 관점의 주류화-주류의 주류화로 세 단계를 포함한다(김경희, 2010, 13-14 요약정리).

10) 김양희(2003). 젠더 통합된 환경정책의 의미와 발전 과제. 주제발표 2를 이용

-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Women)는 “정치적인 문제로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성의 주류화가 젠더 관점의 주류화를 담보하는 것은 아님으로 젠더관점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젠더 관점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Gender)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 성 관점을 통합하도록 하는<sup>11)</sup> 것으로 여성만을 위한 특화된 여성 정책의 범주 뿐 아니라 일반사회정책 영역 또한 성 관점을 고려한 정책 조정이 필요함을 뜻한다.
- 주류의 전환(Transforming the Mainstreaming)은 주류의 젠더 구성을 바꾸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류자체의 특성과 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부의 여성이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입안의 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기존의 남성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정부 및 주류 영역이 성인지적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성주류화에서의 핵심은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주도해 왔던 영역(정부 부처, 과학기술영역, 직업세계)에서 여성들의 양적 질적 참여를 통한 성관점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 아래 [표 2-1 ]전문직 내 남성 집중 직업의 남성비율과 급여를 살펴보면, 2015년 법률전문가와 의료진료전문가에서 남성비율이 상당히 감소했다. 이것은 고임금 전문직에 여성의 진출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직업분야의 성주류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항공기선박기관사/ 관제사 혹은 공학 계통에 있어서는 7년 전 보다 더 강화되었거나 변함없이 남성만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부분에서 젠더의 차이를 줄여가려는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할 것이다.

11) 국회여성위원회(2004). 여성발전기금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표 2-1] 전문직 내 남성 집중 직업의 남성비율과 급여

(단위: %, 만원)

직업명	2015년		2008년	
	남성비율	월임금	남성비율	월임금
항공기선박기관사/관제사	100.0	510	100.0	488
금속/재료공학 기술자/시험원	99.3	434	97.5	298
컴퓨터HW통신공학전문가	94.7	413	92.6	339
금융보험전문가	83.6	524	84.5	453
인사경영전문가	82.7	488	86.6	389
법률전문가	73.7	687	90.7	486
의료진료전문가	76.1	661	83.7	535

자료: 최희선(2017), 최근의 성 전문직 증가와 노동시장 성과, 40쪽 <표3-6>전문직 내 남성 집중 직업 재구성

#### 4.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도구

- 국가는 성 주류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정책기구의 설치, 성인지통계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성인지교육 및 훈련, 정책과 프로그램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등이 제시된다(김재인 외, 2008: 83).
- 먼저 한국의 여성가족부 처럼 성 주류화 정책도구로서 ‘정책기구의 설치’는 정부 내의 모든 정책분야에서 성 주류화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중심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가리킨다(이은경, 2014, 37).
- ‘성인지교육 및 훈련’은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하여 정책 행위들의 젠더 관점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책행위자들이 성맹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정책에 대한 젠더 관점 반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정책을 기획·집행·평가할 때 젠더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안목과 기술을 쌓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김재인 외, 2008: 85).

- ‘성인지통계’는 성 주류화를 위해 정책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가장 구체적이며 기초적인 전략으로 2007년 4월에 개정된 <통계법> 제18조에서 여성 정책의 효과적 추진에 필요한 성별 통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계작성의 승인사항에 조사사항의 성별 구분을 추가하도록 하였다(전기택 외, 2012: 3).
-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은 성 주류화의 정책도구이면서, 본 연구의 대상이다. 특히 이 두 도구들은 성 주류화를 추구하는 주요하고 종합적인 정책도구로 볼 수 있다. 이 두 도구에서 모두 성 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정책도구들(성 주류화 지원하는 정책기구,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 등)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이은경, 2014, 38).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와 함께 성주류화를 실행하는 핵심도구의 하나로 북경세계여성회의 이후 세계 각국에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김둘순 외, 2010:285-333).
- 우리정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1) 및 동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포함시켰으며, 2004년 시범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이기순, 2016) 이어서 2005년부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시되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산시를 필두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 규정을 조례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이기순, 2015:134).

## 5. 성주류화를 관련 법적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 제 5조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 자치법규

6 대 광 역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 2017.1.5.] [조례 제6386호, 2017.1.5., 타법개정] - 서울시 각 구 양성평등 또는 성 평등, 기금관리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5.] [조례 제6386호, 2017.1.5., 타법개정]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6.1.1.] [조례 제5241호, 2015.11.4., 일부개정] - 부산시 각 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또는 성 평등 조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여성친화 행복도시 조성,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7.4.10.] [조례 제4952호, 2017.4.10., 일부개정] - 수성구, 서구,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 2016.2.22.] [조례 제5630호, 2016.2.22., 전부개정]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7.1.1.] [조례 제4846호, 2017.1.1.,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시행 2015.12.31.] [조례 제4670호, 2015.12.31.,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5.12.10.] [조례 제1577호, 2015.12.10., 전부개정]

경기도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 2017.3.13.] [조례 제5476호, 2017.3.13., 일부개정]
강원도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6.8.5.] [조례 제4057호, 2016.8.5., 일부개정]
충청도	충북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 2016.1.1.] [조례 제3860호, 2016.1.1., 전부개정]
	충남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6.2.22.] [조례 제4099호, 2016.2.22., 전부개정]
전라도	전북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 2016.9.30.] [조례 제4333호, 2016.9.30., 일부개정]
	전남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6.12.22.] [조례 제4122호, 2016.12.22., 일부개정]
경상도	경북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6.12.29.] [조례 제3852호, 2016.12.29., 일부개정]
	경남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5.12.10] [조례 제4082호, 2015.12.10., 일부개정]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5.12.31.] [조례 제1510호, 2015.12.31., 전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16.3.14.] [조례 제818호, 2016.3.14., 전부개정]

## 2절. 성평등 확산(외국사례)

### 1.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제도

#### 1) 영국<sup>12)</sup>

- 현재 영국의 성평등 관련 입법은 2010년 평등법을 중심으로 여러 규범들이 통합되어, 인종 및 종교 등 다른 평등문제들과 조화를 이루어 규율되고 있다. 2010년 평등법은 기존의 개별적인 법률들을 폐지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통합하여 구성하였음(전주열 외, 2016, 120쪽)
- 2010년 평등법 내의 규정들은 다양한 모습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조항은, 제11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별을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제12조에서 성적 지향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보호받아야 할 속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후에는 금지의 대상인 각종 차별의 유형, 특히 성차별의 유형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음(전주열 외, 2016, 129쪽)

#### (1) 법률

##### ① 제 11조 성별

- 우선 이 법은 제11조에서 성별(sex)에 따른 보호의 대상인 남성 또는 여성을 구분하였고, 성별에 서로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 속성(protected characteristic)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이 규정은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평등의무를 부과하거나 차별을 금지하는 규율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적 지향에 관한 규정인 제12조와 함께 다른 규정들이 규율하는 사항의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역할임.(전주열 외, 2016, 129~130쪽)

---

12) 전주열, 프랑스 재정법상 공회계 제도에 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vol. 21, 2016, p.133-169.

## ② 제 12조 성적 지향

- 제12조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분류하면서, 이 법이 동일한 성별, 반대되는 성별, 혹은 양 성별을 갖는 자의 성적 지향을 보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 보편적인 성적 지향과 함께 영국 사회의 성인식 변화에 따라서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성적 지향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호의 범주로 명확하게 포섭한 것임. (전주열 외, 2016, 130쪽)

## ③ 제 13조 직접차별

- 제13조는 다양한 원인을 통한 직접차별(direct discrimination)을 규정.
- 특정인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우하는 것보다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면 이것이 직접차별에 해당하며, 직접차별을 하는 경우는 연령, 인종, 장애여부 등 다양할 것임. (전주열 외, 2016, 130~131쪽).
- 성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제6항에 의하면 다른 것과의 연계를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성차별이 반드시 여성에 대한 차별만을 의미하지 않으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자가 남성인 경우에 임신과 출산 등에 관련된 여성에게 취해지는 (상대적으로) 특별한 대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열 외, 2016, 131쪽).

## (2)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 평등청 & 평등인권위원회

-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과거 영국이 고민하였던 성평등의 문제가 남녀양성평등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에 반해서 최근의 논제는 주로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전주열 외, 2016, 146쪽). 영국 사회의 성평등에 관한 의식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남녀의 문제에서 소수자 보호의 문제로 이동하였다 (전주열 외, 2016, 146쪽).
- 영국의 성평등 관련 국가업무는 국가차원의 행정조직과 전문조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성평등 및 차별금지와 관련된 행정조직으로



서는 평등청이 중심부서이며, 전문기관으로서는 평등인권위원회가 이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주열 외, 2016, 138쪽) 즉, 행정조직으로서 영국정부 소속의 평등청을 중심으로 업무가 운영되고 있으며, 비정부 전문기구인 평등인권위원회가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주열 외, 2016, 145쪽).

### ① 평등청

- 영국 정부 평등청(Government Equalities Office)은 영국 행정부 조직 내에서 모든 종류의 평등 (나이, 성별, 성적 지향과 장애 등)에 관한 다양한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인 평등청의 주요 업무는 정부 전체에서 성평등 관련 정책과 법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여성을 위한 정책, 성적 지향과 성전환자의 평등, 그리고 정부 부처간의 입법 및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주열 외, 2016, 141쪽). 이러한 기관들이 온라인 법률서비스와 전화상담 서비스로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작지만 중요한 부분이다 (전주열 외, 2016, 47쪽).

### ② 평등인권위원회

- 영국의 성평등 관련 업무를 행정부 내에서 평등청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구체적인 집행업무는 전문기관으로서 비정부 공공기관인 평등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주열 외, 2016, 142쪽)

## 2) 독일<sup>13)</sup>

○ 독일기본법 제3조 제2항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차선자, 2016, 26쪽).

---

13) 차선자, 「정책연구용역보고서-입법의 성평등영향분석을 위한 분석방법 및 지침개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16,

- 독일에서 입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은 기본법 제3조 제2항의 실질적 남녀평등 실현, 암스테르담 조약, 유럽연합 기본권 협약 및 연방 동등지위법 그리고 연방각부 공통 직무규칙(GGO)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신옥주, 2009:294-298) (차선자, 2016, 25쪽).
- “GGO의 제2조 및 45조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동등지위는 일반적인 원칙이며, 연방각부의 모든 정치적, 입법적, 행정적 조치에 있어서 각 영역에서 남녀의 동등지위가 촉진되어야 하므로, 연방정부의 법률안 초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소관 부처가 법률상 권한범위 내에서 당해 법률초안에 해당되는 연방각부와 국가규범통제위원회를 사전작업에 투입시켜야” (장민선, 2011, 80쪽) 함.

### 3) 오스트리아<sup>14)</sup>

- 오스트리아에서는 2007년 여름 연방정부의 결의를 실행하기 위해 입법에서의 양성평등지침 (Leitfaden für Gender Mainstreaming in der Legistik)이 마련되었고, 2008년 3월 연방정부의 결의를 통해 두 개의 입법 및 예산상의 양성평등화지침이 제정 (차선자, 2016, 30쪽).
- 입법이나 사업계획 수립시 실질적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는지 여부의 평가는 양성평등 관련 법령 및 사후적 영향평가의 원칙에 관한 법령, 그리고 2013년 연방예산법(Bundeshaushaltsgesetz) 제17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음 (차선자, 2016, 31쪽).
- 헌법 제13조 제3항은 “연방, 각 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운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차선자, 2016, 31쪽).
- 헌법 제51조 제8항은 “연방 예산 운용에 있어서 특히 실질적 양성평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투명성과 효율성

14) 차선자, 「정책연구용역보고서-입법의 성평등영향분석을 위한 분석방법 및 지침개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16,

그리고 연방의 신뢰 가능한 예산 집행 원칙에 기반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차선자, 2016, 31쪽).

#### 4) 스웨덴<sup>15)</sup>

##### (1) 법률

- 1989년에 최초로 제정되어 1994년에 남녀평등법으로 정착
- 스웨덴은 1989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될 무렵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미 80%가 넘어선 상태로 여성은 가정주부로서만이 아닌 근로자라고 하는 이중적 지위를 점하고 있었음.
- 남녀고용평등법을 입법화시키게 된 직접적 동기는 대다수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들 대다수가 성 정형화된 직업군에 고용되어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내의 성별 직종분리의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함이었음. (김미성 외, 2007, 97~98쪽)

##### (2) 2018년 양성평등청(Gender Equality Agency) 설치

- 스웨덴 정부는 양성평등 정책의 전략적, 조직적, 장기적, 효과적 시행을 위해 2018년 양성평등청을 설치할 계획임.
- 동 기관은 양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조치의 모니터링, 분석, 조정,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되며, 양성평등 정책 분야의 다수 과제를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될 예정

## 2. 양성평등의 사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 1) 영국

#### (1) 여성평등당 창당

---

15) 김미성, 전겨옥, 문경희,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고용과 남녀고용평등정책 비교, 아시아여성연구, Vol.46 No.2, p.85-128.

-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여성주의 정당은 2015년 5월 창당한 영국의 ‘여성평등당(Women’s Equality Party)’이다. “ ‘평등은 모두를 위해 더 나오니까’ 를 슬로건으로 내건 여성평등당은 지난해 11월 ‘서프레제트’ 를 이끈 에멀린 팡크허스트의 고향인 맨체스터에서 첫 전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6).
- “소피 위커 여성평등당 대표는 브렉시트의 여성 이슈나 테레사 메이 총리의 여성정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적으로 눈길을 끌었다” 17). “창당인사 중 한명인 유명 코미디언 샌디 톱스빅은 테드 강연에서 여성평등당 창당 과정을 밝히기도 했다” 18).

## (2) 옥스퍼드 대학의 양성평등 목소리<sup>19)</sup>

- “800여 년의 오랜 역사와 보수성으로 유명한 학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양성평등을 향한 변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 “18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옥스퍼드 대학교가 각 단과대학과 학부에게 미스터(Mr)와 미세스(Mrs)처럼 한 쪽 성에 따라 구별되는 직함을 홈페이지와 모든 인쇄물에서 제거하기로 했다<sup>21)</sup>.”

## (3) “생각하라, 행동하라, 보고하라 (Think, Act, Report Initiative)” 22)

- 여성 기업 위원회(Women’s Business Council)인 비공식적 자문기구를 구축하여 여성들이 경제 성장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성이 직면하는 여러 장벽들 중 가장 먼저 해결 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정부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멘토링, 스폰서쉽 계획 그리고 대상 개발 프로그램(targeted development programmes)에도 초점을 맞춰 다

16) “페미니즘 정당, 세계 정치판 혼든다”, <여성신문>, 2017.02.14.

17) “페미니즘 정당, 세계 정치판 혼든다”, <여성신문>, 2017.02.14.

18) “페미니즘 정당, 세계 정치판 혼든다”, <여성신문>, 2017.02.14.

19) 옥스퍼드대, “미스터, 미세스는 이제 그만” 양성평등 앞장<나우뉴스>, 2016.12.19

20) 옥스퍼드대, “미스터, 미세스는 이제 그만” 양성평등 앞장<나우뉴스>, 2016.12.19

21) 옥스퍼드대, “미스터, 미세스는 이제 그만” 양성평등 앞장<나우뉴스>, 2016.12.19

22) [NYPI 청소년 해외동향리포트-영국] 생각하라, 행동하라, 보고하라(Think, Act, Report Initiativ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해외동향, 2016.11.15.

음과 같은 일을 한다.

- 첫째, 여성 멘토들을 모집 및 훈련시켜 여성 멘티들에게 연결시키는 일이다. 즉, 멘토들이 여성 멘티의 창업 및 기존의 사업체를 키우는 일을 돕는다.
- 두 번째, 유연한 근무 시간이다. 그 후, 정부는 가정에서 환자나 노인을 돌보는 사람 혹은 자녀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만 유연 근무제가 적용되었으나, 2014년 7월 이후로 이 권리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확대되었다 (Pyper, 2015)<sup>23)</sup>.
- 마지막으로는 이사회 의 임원 여성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 (4) 영국 성별영향분석 평가

- 영국의 경우는 별도의 성별영향분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평등영향분석 (Equality Impact Assessment)의 일환으로 입법의 성별영향분석이 시행되고 있음. 성별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종, 성적 소수자 등 “공동체 내에서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사회전반의 평등실현에 초점을 두고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 Commission, EHRC)와 정부평등처 (Government Equalities Office, GEO)를 중심으로 평가가” (장민선, 2011, 82쪽) 이루어짐.
- 성평등 의무의 구체적 의무의 내용 중에 ‘현재 제안된 정책이나 실천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를 근거로 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것이 성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 (차선자, 2016, 38쪽) 함.
- 평가의 대상은 “ ‘정책’ 으로서 이를 넓게 이해하여 해당 기관의 기능, 활동, 의사결정 등 해당기관이나 조직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기획 및 개발 단계의 새로운 정책도 대상이” (장민선, 2011, 82쪽) 됨.

---

23) Pyper, D. (2015) ‘Flexible Working’, briefing paper , Number 01086, London: House of Commons.

- “공공기관은 제안된 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에 대해 평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해당기관의 모든 정책에 대해 영향평가가 시행되어야” (장민선, 2011, 82쪽)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평등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평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영향평가를 시행함 (차선자, 2016, 38쪽).
- “평가 수행 검토시에는 해당 정책이 성별에 영향을 줄 것인지가 아니라 성별에 관련성(relevance)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정책이 어느 정도 평등과 비례성(proportionality)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평가 수행 여부를” (장민선, 2011, 82쪽) 판단함.
- 이러한 성평등의무가 2010년 평등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평등의무’로 전환되게 되면서, 종래 성평등의무와 성별영향분석은 더 넓은 의미의 평등의무와 평등영향분석으로 발전함 (차선자, 2016, 38쪽).
- 평등의무에는 성별을 비롯하여 인종, 장애, 연령, 성전환, 종교, 성적지향 등 다양한 보호받는 특성들이 포함되었고, 평등영향분석은 해당 정책이나 의사결정이 성별을 비롯한 다양한 보호받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함 (차선자, 2016, 38쪽).
- 평등의무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도 확대되고,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이나 기능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모든 영역에서 의 차별 해소 및 평등 기회 증진, 좋은 관계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용이한 제도로 전환됨 (차선자, 2016, 38쪽).

## 2) 독일

### (1) 초저출산 늪 탈출<sup>24)</sup>

-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독일의 양성평등 및 출산정책 동향’ 자료를 보면 1994년 1.24에 불과했던 독일 합계출산율<sup>25)</sup>은 2014

24) “초저출산 늪 탈출, 뛰는 독일 기는 한국”, <국민일보>, 2017.04.03

25)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두산백과

년 기준 1.47까지 올라섰으며, 2012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임.

- 2007년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음.
  - 유급 육아휴직기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임<sup>26)</sup>.
  - 육아휴직수당은 기존 소득제한을 없애고 누구에게나 월 순소득의 67%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급액도 최대 1800유로(약 215만원)까지 기존보다 6배 늘렸음.
  - ‘12+2’ 제도 도입으로 남성이 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부 모두에게 추가 2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하였음.
- 수당 증가와 남성 육아휴직 장려의 ‘투 트랙 전략’은 남성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바꾸었으며, 2007년 기준 3.5% 수준이었던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는 7년 만에 34.0%까지 증가하였음.
- 출산율을 더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정책도 도입할 계획
  - ‘가족근로시간<sup>27)</sup>’

## (2) 임금공개법<sup>28)</sup>

- 독일에선 2017년 7월 ‘임금공개법’이 시행예정.
- 여성 노동자가 원한다면, 같은 일을 하는 남성 동료의 연봉을 확인할 수 있고, 차별이 있다면 연봉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남녀임금 격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 (3) 독일 성별영향분석 평가<sup>29)</sup>

- 국가조치가 성평등의 관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측 및 분석하는 정책지원 도구임 (차선자, 2016, 24쪽).

26) 유급 휴직 기간 감소는 30대 고소득 여성의 출산율 제고 효과로 이어졌다. 유급 휴직이 길어질 경우 경력단절 우려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

27) 아이가 어릴 때 단축 근로를 하며 가족과 시간을 갖다가 자녀가 성장하면 근로시간을 풀타임으로 바꾸는 정책이다.

28) “ ‘동일노동·임금’ 은 세계적 흐름...한국은?” ,〈여성신문〉, 2017.04.11

29) 차선자, 「정책연구용역보고서-입법의 성평등영향분석을 위한 분석방법 및 지침개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16.

- 성별입법영향평가는 입법평가지 적용되는 개별영향평가 도구임. (차선자, 2016, 24쪽).
- “입법평가가 법령안의 모든 영향(규범 경제 사회 환경)을 사전예측하여 합리적 최적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석도구라면, 성별영향평가는 입법평가지 법령안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가운데 성별영향을 예측하여 성주류화 정책(Gender Mainstreaming)을 지원하는 전문영향평가에 해당함” (차선자, 2016, 24쪽).
- 예컨대, 어떠한 법률이 동등처우정책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방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가 법률초안 작성에 참여하여 성별입법영향평가를 위한 지침(신옥주, 2009:298-301)에 따라 법률의 영향을 평가함 (차선자, 2016, 25쪽).
- 본안심사에서는 특정 생활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여 그들의 생활이 개선되었는지 또는 더욱 악화되었는지 그 효과를 조사하고, 그러한 효과를 기본법 제3조 제2항을 참작하여 차별 철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여성과 남성의 전통적인 성역할로부터의 자유롭고 자기결정적인 삶의 형성이라는 목표에 비추어 평가함(박영도, 2007:286) (차선자, 2016, 27쪽).

### 3) 오스트리아<sup>30)</sup>

- “낭만과 음악이 흐르는 예술 천국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여성들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정책의 선진지로 손꼽히며 ‘여성천국’으로 불리고”<sup>31)</sup> 있음.

#### (1) 여성경제활동참가율 80%, 정책 전반 여성 고려

- “비엔나의 성인지 정책은 오스트리아의 다른 어느 곳보다 앞서” 있음.

30) “낭만과 음악이 흐르는 ‘예술천국’으로”, <광주매일신문>, 2014.09.29

31) “낭만과 음악이 흐르는 ‘예술천국’으로”, <광주매일신문>, 2014.09.29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80%정도로 오스트리아 전체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비엔나는 행정 그룹 중 하나의 ‘국’으로 여성지위 향상과 조정국을 두고 있다.” “1992년 여성국 설치를 시작으로, 여성 이슈에 대한 아젠다를 구축해 여성정책 전반에 걸쳐 성인지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상당수의 국에는 젠더전문가도 지정돼 있다.
- “비엔나는 2005년에는 성인지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을 도입했다.” “재정부서아래의 예산, 재정과 통계국 안에 성인지 예산 전문가를 지정했다. 그해 산하 자치구의 예산부서에 성인지 예산을 위한 과제를 부여해 전체 예산과정에 성인지 예산을 통합하기 위한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비엔나의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부터 잘 구비돼 있다.” “특히 재정부서에 성인지 예산 전문가가 지정돼 있는 만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 (2)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배려한 공공 공간 정책” 32)

-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해 정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비엔나 시에는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기반이 매우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구현돼 있음.
- “우선 거리 곳곳에선 여성 친화적 교통수단을 쉽게 볼 수 있다. 유모차를 가지고 버스 탈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했고 보행자 도로를 개선해 왔다.” 33) “특히 3미터 앞에서도 얼굴이 보이도록 하는 야간 조명으로 여성안전 도모 안전한 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왔다.” 34)
- “특히 비엔나 시는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거지역을 만들기 위해 유럽의 여성건축가들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35) “그 결과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배치됐다. 건물 곳곳에 비가와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공동육아시설, 만남과 휴식공간으로 하나둘씩 채워졌다.” 36).

32) “낭만과 음악이 흐르는 ‘예술천국’으로”, <광주매일신문>, 2014.09.29

33) “낭만과 음악이 흐르는 ‘예술천국’으로”, <광주매일신문>, 2014.09.29

34) “낭만과 음악이 흐르는 ‘예술천국’으로”, <광주매일신문>, 2014.09.29

35) “낭만과 음악이 흐르는 ‘예술천국’으로”, <광주매일신문>, 2014.09.29

### (3) 오스트리아 성별영향분석 평가

- “오스트리아의 경우 헌법 규정에 따라 성평등 목표를 우선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하향식(톱다운) 방식으로 사업을 선정해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면 패널티를 부과해 체계적으로 성과 관리를 하고”<sup>37)</sup> 있음.
- 성별영향분석에서 중요한 핵심 질문은 “실질적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 (차선자, 2016, 31쪽).
- 성별영향평가에 관련된 중심 평가항목은 1)자연인, 법인 등에 대한 비용, 2)교육, 고용, 소득, 3) 육아, 가사, 돌봄 등 무급 근로, 4)공적 예산, 5)의사결정 절차 및 의사결정 기구의 구성, 6)육체적, 정신적 건강 등의 6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편됨 (차선자, 2016, 31쪽).

## 4) 스웨덴

### (1) 양성에게 동등한 보육의 책임

- 스웨덴 “사회보험청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육아휴직 수당 가운데 27%가 남성에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통신은 전했다.”<sup>38)</sup> “지난 1999년 육아휴직 수당 수혜자 중 남성이 12%였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sup>39)</sup> “스웨덴은 한 아이당 480일의 육아휴직 수당을 제공하며, 부모 가운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sup>40)</sup> “물론 엄마 아빠 모두 실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간 육아휴직 자격이 주어

36) “낭만과 음악이 흐르는 ‘예술천국’으로”, <광주매일신문>, 2014.09.29

37) “[이슈탐색] 아직도 걸도는 ‘성인지 예산’…떨기만한 남녀 성평등 사업”, <세계일보>, 2016.10.25

38) “양성평등의 나라 스웨덴, 육아 휴직자 4명 중 한 명은 아빠”, <연합뉴스> 2017.02.27

39) “양성평등의 나라 스웨덴, 육아 휴직자 4명 중 한 명은 아빠”, <연합뉴스> 2017.02.27

40) “양성평등의 나라 스웨덴, 육아 휴직자 4명 중 한 명은 아빠”, <연합뉴스> 2017.02.27

진다.” 41)

- 스웨덴은 공공보육 인프라가 잘돼 있으면서 양성이 평등하게 보육을 하도록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다. “스웨덴은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제도를 적용한 최초의 나라다. 또 출산휴가는 반드시 부모가 나눠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남성도 의무적으로 석달(daddy quota)의 휴가를 사용하며,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참여와 여성과 동등한 보육의 책임을 갖게 하고 있다.” 42)
- “올해부터는 아빠의 육아휴직 할당제를 90일로 확대해 현재 스웨덴에서는 부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총 480일이며 지원금은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43). 스웨덴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부모들이 직접 육아 기간과 최대 급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더44) 극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45)

## (2)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46)

-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성공사례로, 198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는 첫째 출산 뒤 30개월 이내에 둘째아이를 낳을 경우 그 사이에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낮아졌다.” 47). 하더라도 첫째 출산 당시의 급여에 맞춰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41) “양성평등의 나라 스웨덴, 육아 휴직자 4명 중 한 명은 아빠”, <연합뉴스> 2017.02.27

42) “[저출산 정책, 선진국서 배워라] 프랑스 ‘동거가족 인정’, 스웨덴 ‘스피드 프리미엄’ 으로 출산율 올랐다”, <여성신문>, 2016.10.21

43) “[저출산 정책, 선진국서 배워라] 프랑스 ‘동거가족 인정’, 스웨덴 ‘스피드 프리미엄’ 으로 출산율 올랐다”, <여성신문>, 2016.10.21

44) “[저출산 정책, 선진국서 배워라] 프랑스 ‘동거가족 인정’, 스웨덴 ‘스피드 프리미엄’ 으로 출산율 올랐다”, <여성신문>, 2016.10.21

45) “[저출산 정책, 선진국서 배워라] 프랑스 ‘동거가족 인정’, 스웨덴 ‘스피드 프리미엄’ 으로 출산율 올랐다”, <여성신문>, 2016.10.21

46) “[저출산 정책, 선진국서 배워라] 프랑스 ‘동거가족 인정’, 스웨덴 ‘스피드 프리미엄’ 으로 출산율 올랐다”, <여성신문>, 2016.10.21

47) “[저출산 정책, 선진국서 배워라] 프랑스 ‘동거가족 인정’, 스웨덴 ‘스피드 프리미엄’ 으로 출산율 올랐다”, <여성신문>, 2016.10.21

### (3) 양성평등 스웨덴 정부<sup>48)</sup>

- 현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 총리를 포함 23개 정부 부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명중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게 12명으로 구성된 스웨덴 내각은 완벽한 양성평등을 보여주고 있는 세계 최초의 페미니스트 정부이다.
- 스웨덴 정부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와 개인의 삶을 구성할 때 동등한 권력을 가져야만 함을 주창하고 국내외 정책 과제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양성 평등을 지지한다.
- 이는 궁극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정의의 문제이며, 양성평등은 현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들의 해결책이기도 하다. 또한, 양성평등은 현대의 복지사회에서 사회정의와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 (4) 인클루드 젠더 (Include Gender)<sup>49)</sup>

- 이 사이트에서는 각 정부기관의 우수 양성평등사업의 사례뿐만 아니라, 성평등에 관한 지식, 성평등 관련한 세미나, 일자리, 컨퍼런스 소식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함

### (5) 스웨덴 성별영향분석 모델<sup>50)</sup>

- 3R 모델은 스웨덴 지역협회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에 의해 개발된 성별영향분석 방법으로 정부 기관을 비롯한 일반 회사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평가 및 분석 도구.
- “주어진 상황 하에서 여성과 남성의 상이한 입장을 분석하기 위함이 주된”<sup>51)</sup> 목적으로 크게 3단계로 분류됨.

48) “양성평등 스웨덴 정부”, <스웨덴대사관>, 2015.11.19., <<http://www.swedenabroad.com/ko-KR/Embassies/Seoul/--/1/---sys37/>>(접속일:2017.11.13.).

49) ‘페미니스트 정부’ <스웨덴정부>, <<http://www.government.se/government-policy/a-feminist-government/>>, (접속일:2017.11.13.).

50) 박영란, 「외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동향」, 여성정책포럼 Vol.6, 한국여성개발원, 2004, p.20-26

51) 박영란, 「외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동향」, 여성정책포럼 Vol.6, 한국여성개발원, 2004, p.20-26

① “대표성 (Representation)” 52)

- 몇 명의 여성과 남성이 있는가? (예: 고위 관리 및 중역의 성별 수)
-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별 영향력 행사 측정: 중역 관리 중 여성과 남성 수는 각각 몇 명인가? (예: 직원 및 관리자의 성별 수)
- 실행자들의 성별 기여도 측정 (예: 신종 차 개발에 관여하는 사람 중 여성과 남성은 각각 몇 명인가?)
- 수혜 가능 계층성별 측정 (예: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 온 여성과 남성의 수는 몇 명인가?)

자료 : 박영란, 「외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동향」, 여성정책포럼 Vol.6, 한국여성개발원, 2004, p.20-26

② “자원 (Resources)” 53)

- 돈, 공간, 시간과 같은 자원들이 남성과 여성에게 얼마만큼 제공되는가? (예: 은행 대출을 하는 여성과 남성의 수는 각각 몇 명인가?)
- 판매원이 남성과 여성 고객에게 차를 판매하기 위해 소요하는 시간은 얼마라 되는가?
- 놀이방에 여아와 남아가 주로 활용하는 공간은 각각 어떤 것인가?

자료 : 박성정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선행 모범사례 연구」, 여성부, 한국여성개발원, 2003

③ “실태 분석 (Realia)” 54)

- 왜 남성과 여성의 대표성과 자원의 접근성이 다른가? (예: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 온 사람 중 왜 남성이 많은가?)
- 왜 은행 대출을 여성보다 남성이 많이 하는가?
- 왜 여아는 인형이 있는 공간을, 남아는 넓은 공간을 자주 활용하는가?

자료 : 박영란, 「외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동향」, 여성정책포럼 Vol.6, 한국여성개발원, 2004, p.20-26

52) 박성정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선행 모범사례 연구」, 여성부, 한국여성개발원, 2003

53) 박성정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선행 모범사례 연구」, 여성부, 한국여성개발원, 2003

54) 박영란, 「외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동향」, 여성정책포럼 Vol.6, 한국여성개발원, 2004, p.20-26

## 5) 호주<sup>55)</sup>

-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더 라인 (The Line)’ 온라인 미디어 활용 프로젝트
  - 2010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로 청소년층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임.
  -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남녀 관계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하기 위하여 12~20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페이지를 제작함.

## 6) 프랑스<sup>56)</sup>

-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평등의 ABCD (ABCD 1’ egalite) 프로젝트
  - 어린 시절 학생들의 학과 성적과 학창시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불평등적 인식 형성을 막고, 학교 안팎의 성별고정관념을 학생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프랑스 여성관리부와 프랑스 교육부가 함께 진행한 시범 프로젝트임.

## 7) 그리스<sup>57)</sup>

- 부모(아버지) 및 교사들의 위한 성평등 교육
  - 그리스에서는 부정적인 성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모, 특히 아버지의 성평등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식에서 부모에 대한 성평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

---

55) 이수연,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2004, p.86

56) 이수연,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2004, p.20-26

57) 이수연,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2004, p.79

### 3절. 성별영향분석평가

#### 1.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GenderImpact Assessment)는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과 같은 요인들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국가정책의 성 주류화 도구로 성별통계와 함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선민, 2014, 24).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각 법·제도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김재인 외, 2008: 84). 한국의 경우, 그것은 일반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집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 분석한다(여성부, 2009).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계획, 그리고 사업 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경제 등의 분야에서 드러나는 성차별적 요인을 개선하여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는 성주류화제도의 하나로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근거로 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1항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여성부가 시범분석을 실시한 이후 본격적으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행하고 있으며, 최근 2008년 6월에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의 2’에서는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의 근거 규정이 되고 있다(김경희, 2010).

## 2.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발전 과정

- 연혁별로 살펴보면, 2002년 (구)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2004년 10개 과제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형성하였으며, 2005년 본격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이어 2006년 기초자치단체, 2007년 시·도 교육청까지 그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더욱 힘입어 2013년 304개 기관의 20,372개 과제 시행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자문을 골자로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8년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를 근거로 최초로 5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했다.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고, 2012년 시행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시·도에 16개 센터를 지정했고, 이를 총괄한 중앙센터를 두었으며, 2016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개정하면서 제도의 법적 기반을 확실히 했다.
- 지난 10여 년간 성 주류화 도구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이에 비해 정책 효과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은아, 2016, 265-288쪽). “우리나라의 성 주류화는 정부가 주도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시켰으나 아직까지 시민단체와 의회, 일반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최유진, 유희정, 문희영, 2014, 22쪽).



### 3. 성별영향분석평가 효과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여 개선이 된 정책은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요구와 삶의 경험, 특성과 차이가 반영됨으로써 성 주류화가 되고, 그 결과 성별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이은경, 2014)
- 지금껏 국내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분야를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과학기술, 교육, 국방, 농림해양수산, 문화체육관광, 보건,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통신 등 그 범위가 다양하다(여성가족부, 2014, 65-68).
- 특히, 지역개발 분야에서 젠더 특성의 도입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도시 공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신도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평가 결과와 이로부터 도출된 개선안을 개발·실시계획 및 시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완성된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전혜림, 2016,10)
- 또한 정책참여율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2007년 A도 재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구직희망자 가운데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참여율이 17.8%(남성 82.2%)로 매우 낮음을 확인하였다.(이은경, 2014) 이에 A도는 여성의 재취업지원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 참여자 20% 할당제를 도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2008년 여성 참여율이 25.9%까지 확대되었다(여성가족부, 2011a: 14).

#### 4.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현황

- 여성가족부는 센터지정을 통해 전국 16개시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정착과 확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표 2-2]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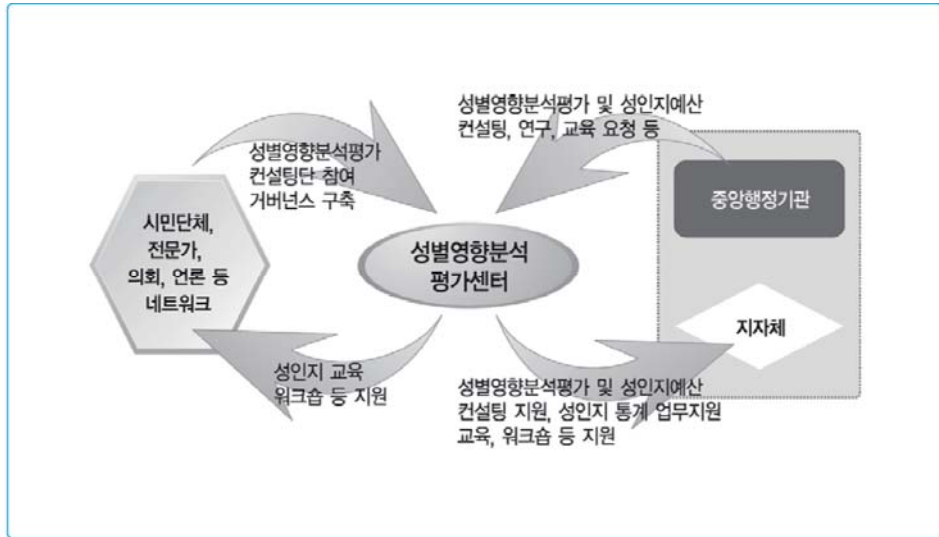
(단위: 개소)

구분	사업대상	위탁기관명	인력	
			운영	컨설턴트 <sup>58)</sup>
중앙	중앙행정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	32
지역	서울-지자체	서울여성가족재단	2	29
	부산-지자체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	15
	대구-지자체	대구여성가족재단	2	29
	인천-지자체	인천여성가족재단	2	28
	광주-지자체	광주여성재단	3	15
	대전, 세종-지자체	대전세종연구원	2	20
	울산-지자체	울산여성가족개발원	2	19
	경기-지자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	35
	강원-지자체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3	23
	충북-지자체	충북여성발전센터, 충북여성재단	2	22
	충남-지자체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	24
	전북-지자체	전북연구원	2	17
	전남-지자체	전남여성플라자	2	28
	경북-지자체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	15
	경남-지자체	창원대학교	2	26
제주-지자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	18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71(재구성)

58) 컨설턴트는 중복 인원 포함

## 5.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추진체계



[그림 2-1]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추진체계도<sup>59)</sup>

## 4절. 성인지예산

### 1. 성인지예산

- 성 주류화 도구인 성인지예산의 틀짜기는 정치적으로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사회단체활동 영역에서 비롯되었다.<sup>60)</sup> 대표적으로 예산감시운동이 있었는데, 이는 여성단체들의 여성예산확보운동의 한 계기가 되

59)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운영안내, 5쪽

60) 국민의 정부(1998-2003) 때에는 지역별로 지방자치와 예산감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예컨대 2002년 10월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시민운동지원기금의 지원으로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함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 워크숍에서 지역살림 및 주민자치, 지방자치활성화 등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된 관심은 예산과 조례였는데, 예산심의 및 예산분석 실습이 내용으로 있었다. 이 워크숍 참여자는 인천지역의 단체 활동가들뿐 아니라 자치 및 예산에 관심 가진 활동가들 그리고 인하대사회과 교수가 포함되었다. 인천참여자치연대(2002.10.11.) 참고.

었고 여성단체들의 운동에서 성인지예산의 틀짜기가 시작되었다.(이은경, 2014) 즉 성인지예산은 정치적으로 여성친화적인 정권을 활용하여 지방자치에 관심을 두는 운동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은경, 2013 재인용).

- 이러한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모든 재정활동을 대상으로 그것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을 함축하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방식이다.
- 성인지예산은 예산의 편성·집행과 관련하여 성별 변수, 젠더 관점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간에 존재하는 상이한 요인(재정수요, 상황, 조건, 특성, 예산집행 영향)들을 고려하는 것이다.(이은경, 2014) 즉 성인지예산은 복지예산이니 여성예산이니 하는 예산의 특정 범주가 아니라 성평등한 자원배분의 과정이다(여성가족부, 2010b: 7).

## 2. 법적근거<sup>61)</sup>

- 「국가재정법」 제16조, 제26조, 제34조, 제57조, 제68조의2, 제71조, 제73조의2, 부칙 제5조, 부칙 ④, 시행령 제9조, 시행령 제10조, 시행령 제28조의2
- 「국가회계법」 제15조의2, 시행령 제5조

---

61)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매뉴얼」,2016, p.6

### 3. 성인지예산의 실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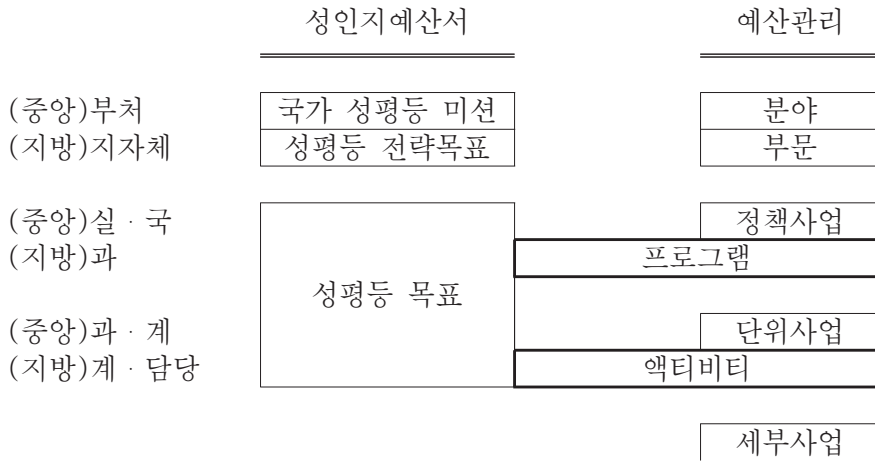
-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 간에 형성되어야 하는 성별 형평성을 정부가 관장하는 예산운영 시스템 속에 투입시켜 주류화 하는 것으로 성인지예산을 실시함으로써 정부 예산에 포함되는 예산수치(재정수입 및 지출사업 금액) 중 상당수가 여성과 남성의 재정혜택 균등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임성일, 2012:6).
- 예컨대 만일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을 건설하고자 예산을 편성한다면, 성인지예산서에 의해 성별 화장실 평균 이용시간 등 몇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여자 화장실변기 수를 남자 화장실 변기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이은경, 2014) 법령을 개정할 수 있다.<sup>62)</sup>

### 4. 성인지 예산 보고서

- 성인지 예산서
  - “사업(예산)이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과 성과목표 설정을 통해 사업(예산)”<sup>63)</sup>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국가재정법 26조 성인지예산서의 작성, 지방재정법 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성인지예산서의 작성)

62) 이는 정부가 성인지예산서 작성으로 인하여 예산사업을 개선할 수 있다고 예시한 것이지만, 실제 성인지예산서에 의해 개선된 사례는 아니다. 이 사례는 한국에서 성인지예산 제도가 실시되기 전 이미 2008년 3월에 개정된 법령(<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성인지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기에 여기서 언급하였다.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의 성인지예산 워크숍 자료집(2012.3.8.: 4쪽) 참고.

63) 조선주, 성인지 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2013)



[그림 2-2]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흐름도<sup>64)</sup>

-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1.1.>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③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6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연계방안 연구(2011) p.17

2012.3.21., 2013.1.1., 2014.1.1.>

#### 9. 성인지 예산서

국가재정법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국가재정법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17.]

국가재정법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 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4.1.1.>

####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목개정 2008.12.31.]

국가재정법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 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7.]

국가재정법 부칙 <법률 제8050호, 2006.10.4.> 제5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제34조제 9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제출,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및 제58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제출은 각각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국가재정법 부칙 <법률 제10288호, 2010.5.17.> ④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 및 제7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1 회계연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부터 적용하고,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결산서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7.9.>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규모
-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신설 2009.3.25., 2010.3.15., 2010.7.9.>  
[제목개정 2010.7.9.]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 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 10. 성인지 예산서

시행령 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 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0.7.9.]



## ○ 국가회계법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6.>

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 성인지 기금결산서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본조신설 2008.12.31.]

시행령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② 법 제15조의2제1항 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1. 성인지 결산 또는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 또는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지방재정법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7. 성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

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 7. 성인지 예산서

####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부칙 <법률 제10439호, 2011.3.8.>제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 2017년 12월 18일)

#### ○ 성인지결산서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예산)의 수혜를 받았는지 또한 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 (「국가재정법」 제57조)<sup>65)</sup>

65)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매뉴얼」, 2016, p.6

## 3장

# 세종시 현황

제1절. 세종시 인구 특성

제2절. 성주류화 정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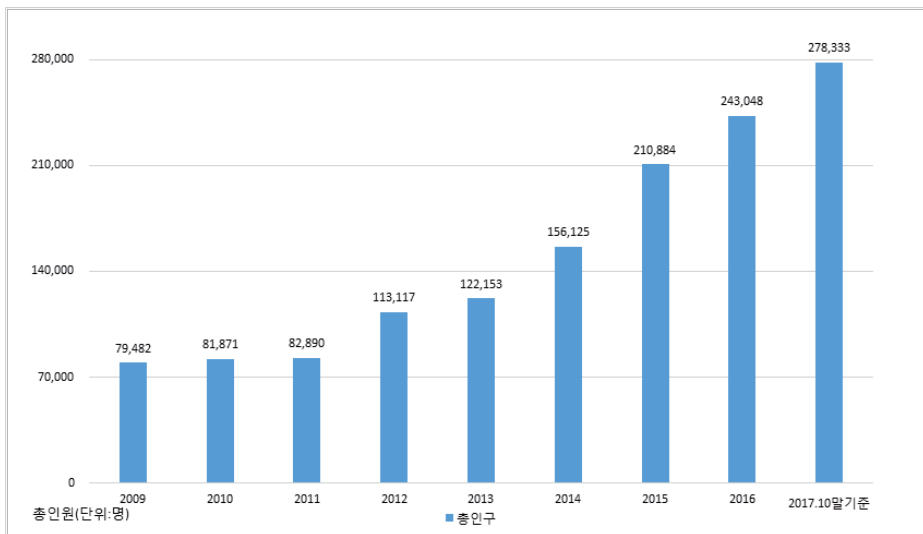


## 3장. 세종시 현황

### 1절. 세종시 인구 특성

#### 1. 인구 추이

- 2009년 79,482명이었던 세종시 인구는 2014년 156,125명으로 5년 만에 두 배가 증가했고, 2017년 10월말 기준, 278,333명으로 거의 4배가 증가했다.
- 세종시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행정수도라는 국가정책의 영향이 크다.



[그림 3-1] 세종시 연도별 인구변화<sup>66)</sup>

6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토대로 재구성함.

- 2017년 10월 말 기준, 세종시 지역별 인구를 보면, 조치원읍이 전체인구 가운데 16.8%인 46,88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도담동(32,692명), 종촌동(30,586명)순이다.
- 읍면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치원읍을 제외한 면 지역의 인구는 일 만명이 안 되고, 각 동 인구는 2만 명 이상으로 증가세에 있다.
- 성별인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은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적고, 동지역은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은 특성을 보인다.
- 외국인은 조치원읍에 집중거주하고 있다. 장군면과 도담동, 아름동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 남성외국인이 여성외국인 보다 많다.

[표 3-1]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현황

(단위: 명)

구분	인구수						
	전체인구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78,333	274,092	136,880	137,212	4,241	2,514	1,727
조치원읍	46,884	45,620	23,315	22,305	1,264	644	620
연기면	2,870	2,776	1,535	1,241	94	61	33
연동면	3,631	3,484	1,806	1,678	147	125	22
부강면	6,753	6,526	3,494	3,032	227	178	49
금남면	9,713	9,444	4,932	4,512	269	167	102
장군면	6,720	6,397	3,535	2,862	323	154	169
연서면	8,263	7,979	4,239	3,740	284	201	83
전의면	6,802	6,391	3,314	3,077	411	313	98
전동면	4,102	3,927	2,140	1,787	175	132	43
소정면	3,029	2,834	1,476	1,358	195	153	42
한솔동1)	20,173	19,979	9,793	10,186	194	101	93
새뜸동2)	21,342	21,319	10,357	10,962	23	12	11
도담동3)	32,692	32,517	15,702	16,815	175	77	98
아름동	24,570	24,432	12,030	12,402	138	57	81

중촌동	30,586	30,479	14,735	15,744	107	35	72
고운동	26,307	26,288	12,834	13,454	19	9	10
보람동4)	23,896	23,700	11,643	12,057	196	95	101

주: 1) 가람동 포함, 2) 나성동, 다정동 포함, 3) 여진동 포함, 4) 반곡동, 소담동, 대평동 포함.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통계 통계DB 주민등록인구통계(2017년 10월 31일 기준)

## 2. 고령 인구 현황

- 젊은 도시 이미지가 강한 세종시는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세대별로 보았을 때, 어린이와 10대 청소년, 20,30 대 청년층, 40, 50대 장년층과 노년층 전 세대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 성별로 보면, 25세부터 39세까지, 60세 이상부터는 여성의 수가 많고, 그 이외의 연령대에는 남성의 수가 더 많다.

[표 3-2] 세종시 연령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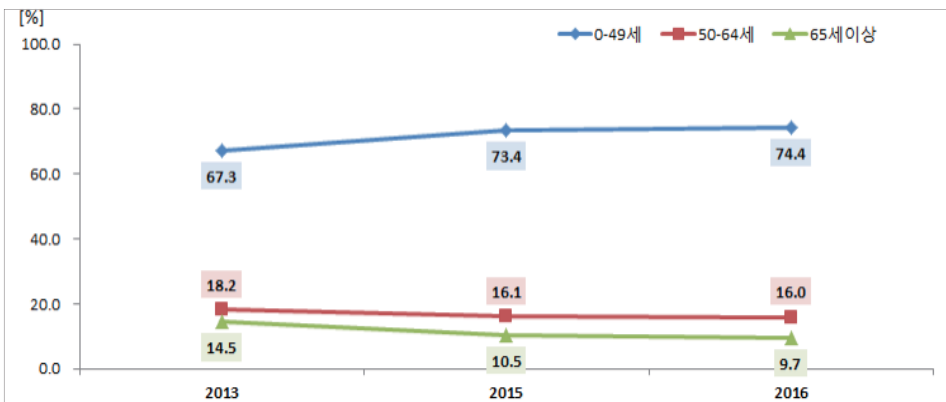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2,214	101,444	100,770	238,533	119,398	119,135	274,092	136,880	137,212
0~4세	14,036	7,205	6,831	16,797	8,663	8,134	18,919	9,717	9,202
5~9세	14,300	7,240	7,060	17,524	8,804	8,720	20,538	10,434	10,104
10~14세	12,145	6,175	5,970	14,404	7,255	7,149	17,231	8,622	8,609
15~19세	10,321	5,316	5,005	12,153	6,241	5,912	14,062	7,168	6,894
20~24세	10,887	5,712	5,175	12,535	6,630	5,905	13,979	7,419	6,560
25~29세	11,066	5,512	5,554	13,323	6,523	6,800	15,443	7,516	7,927
30~34세	17,537	8,421	9,116	20,010	9,682	10,328	21,579	10,357	11,222
35~39세	20,615	10,202	10,413	25,372	12,461	12,911	29,882	14,580	15,302
40~44세	20,390	10,815	9,575	23,816	12,478	11,338	27,498	14,107	13,391
45~49세	15,302	8,377	6,902	19,421	10,598	8,823	23,324	12,721	10,603
50~54세	13,192	7,015	6,177	14,553	7,703	6,850	16,641	8,710	7,931
55~59세	11,886	6,129	5,757	14,179	7,225	6,954	16,338	8,344	7,994
60~64세	8,570	4,293	4,277	10,497	5,213	5,284	12,204	6,085	6,119
65~69세	6,437	3,104	3,333	7,325	3,531	3,794	8,381	4,050	4,331
70~74세	5,615	2,445	3,170	5,781	2,599	3,182	5,943	2,716	3,227

75~79세	4,659	1,893	2,766	4,994	2,014	2,980	5,652	2,324	3,328
80~84세	3,108	1,057	2,051	3,430	1,189	2,241	3,779	1,347	2,432
85세이상	2,148	533	1,615	2,419	589	1,830	2,699	663	2,036

자료: 세종시통계, 연령별(5세계급) 인구현황 : 5세계급별, 계, 남, 여로 구분(조사시점 : 매년 10월 31일 기준)

- 2016년 세종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세종인구의 9.7%로 전국평균 13.6%보다 낮다. 타 시도에 비해 세종지역의 낮은 고령인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림 3-2] 연령별 인구 구성비<sup>67)</sup>

- 2016년 기준, 세종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성별비율은 71.8명이며, 전체 남성인구 가운데 8%, 여성인구 가운데 11.3%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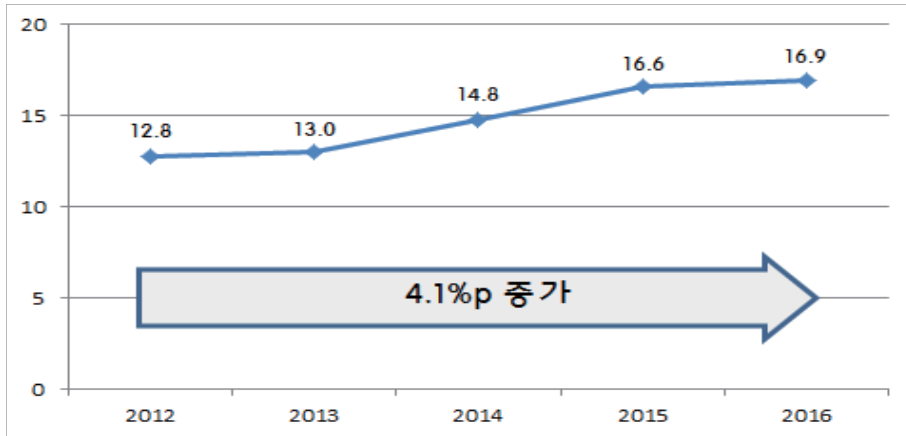
### 3. 어린이인구 추이

- 2016년 기준, 세종지역 11세 이하 어린이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1%로 어린이 인구가 증가하며, 타 시도에 비해 어린이 비중도 크다(충청지방통계청, 2017<sup>6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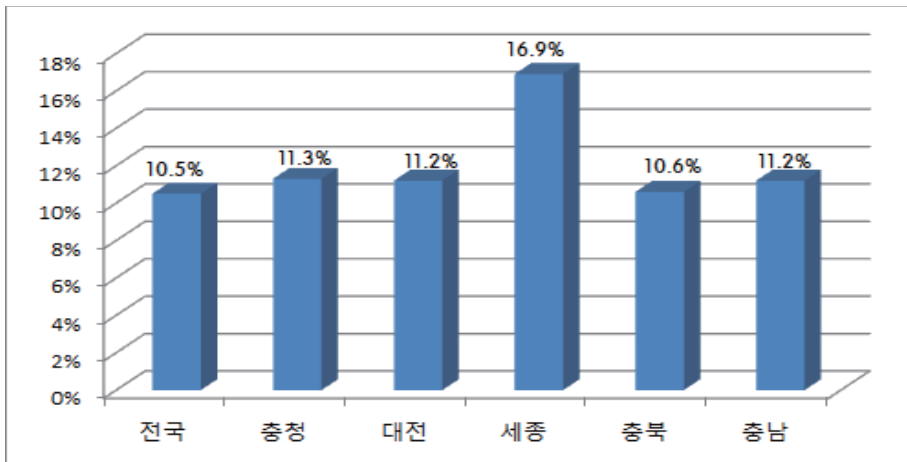
67) 충청지방통계청(2017), 세종지역 「2017년 통계로 보는 실버세대」

68) 충청지방통계청(2017), 최근 4년간 세종지역 어린이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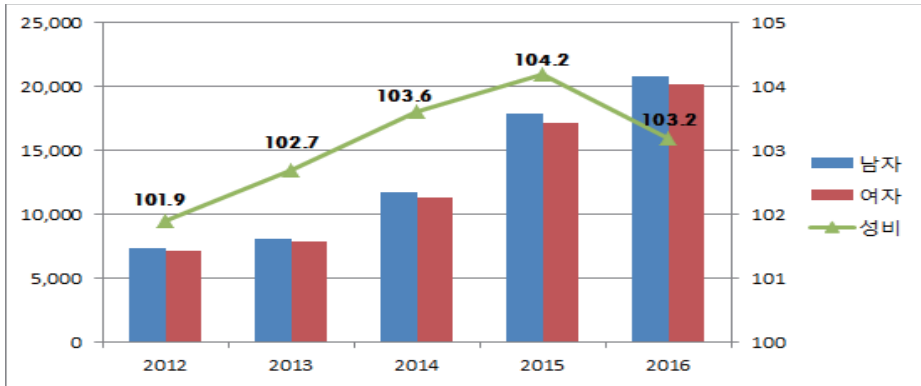
[그림 3-3] 세종지역 11세 이하 인구 비율 추이<sup>69)</sup>



[그림 3-4] 시도별 11세 이하 인구 비율(2016년)

- 어린이의 성비로 보았을 때, 2012년 이후 남성어린이가 여성어린이 비율보다 높아지고 있다.

69) 충청지방통계청(2017), 최근 4년간 세종지역 어린이 통계, 9쪽 인용



[그림 3-5] 세종시 어린이 성비 추이

#### 4. 청소년인구 추이<sup>7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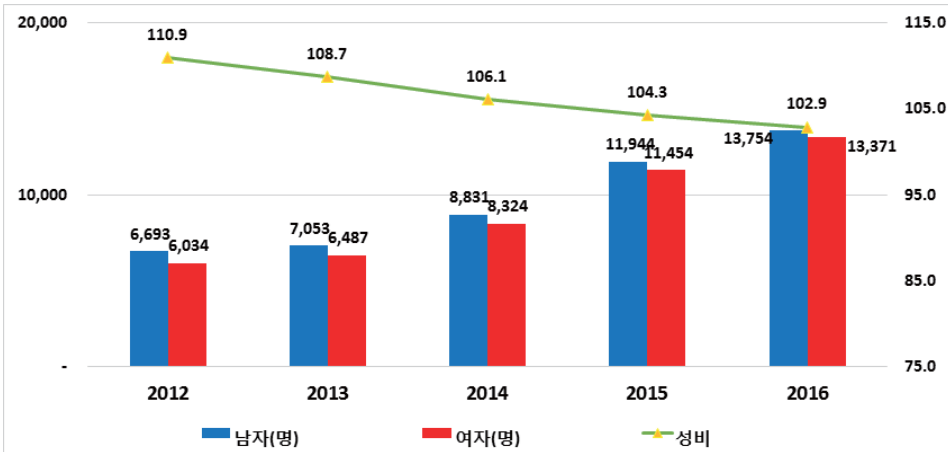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세종지역 10세~19세 미만 청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 243,048명의 27,125명<sup>71)</sup>으로 11.2%로 매년 조금씩 증가(2014년 11.0%, 2015년 11.1%)하며, 전국 청소년 연령구간(10~19세)인구비율 평균은 10.6%으로 세종시는 청소년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는 광주광역시 12.8%, 제주특별자치 시도 11.8%, 대전광역시 11.6%, 울산과 경기도 11.3%로 세종시는 전국에서 청소년의 비율 6위로 중상위 도시다.<sup>72)</sup>
- 세종시 청소년의 성별 인구의 차이는 2012년 이후 성별의 차이가 매년 좁아지고 있다.
- 세종시 ‘2017 시정 주요통계’ 연령별(10세 단위) 인구 현황에 따르

70) 청소년 연령에 대한 범위가 조사기관 및 연구기관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해당 연구보고서에서는 행정안전부 5세별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 ‘10~14세’, ‘15~19세’를 ‘청소년’으로 함.

7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활용하여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를 추출 ‘10~14세’, ‘15~19세’를 합하여 세종시 청소년 인구수(명)를 재가공 함.

7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활용하여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를 추출 ‘10~14세’, ‘15~19세’를 합하여 각 시도의 전체 인구의 청소년 비율을 산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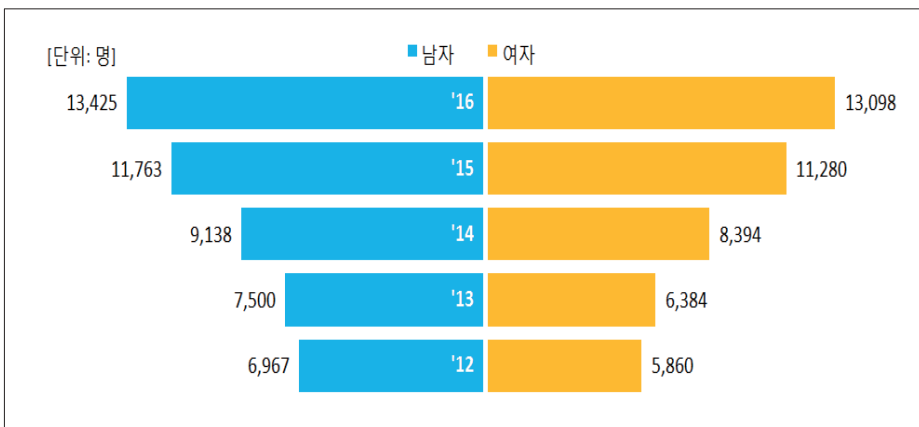
면 2017년 9월 10~19세의 청소년은 31,001명으로 전체인구의 11.4%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그림 3-6] 세종시 청소년 성비 추이

## 5. 청년인구 추이

- 20세부터 29세 사이 세종지역 청년인구는 2012년 12,827명에서 2016년 26,523명으로 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 2012년 118.9%였던 남녀 성비가 2016년에는 102.5%로 낮아지고 있다.



[그림 3-7] 세종시 청년 인구 추세<sup>73)</sup>

- 세종지역 대학생 수는 전문대 1개와 3개 일반대학교를 합해, 2016년 24,247명이다.
- 2016년 취업률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각각 49.8%와 45.6%로 나왔다.

[표 3-3] 세종지역 대학졸업자 취업률

구분	전체				일반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취업자	제외자	취업률	졸업자	취업자	제외자	취업률	졸업자	취업자	제외자	취업률
2016	4,378	1,888	502	48.7	3,137	1,429	268	49.8	1,241	459	234	45.6
2015	4,162	1,731	427	46.3	2,830	1,225	261	47.7	1,332	506	166	43.4
2014	3,579	1,485	452	47.5	2,625	1,067	330	46.5	954	418	122	50.2
2013	4,009	1,767	486	50.2	2,684	1,165	299	48.8	1,325	602	187	52.9
2012	4,250	1,911	437	50.1	2,906	1,255	305	48.3	1,344	656	132	54.1

주: 취업률=취업자/(졸업자-제외자)X100

자료출처: 대학알리미 대학정보공시, 충청통계청(2017), 최근 4년간 세종지역 대학졸업자 취업동향, 5쪽 인용

## 2절. 주요 성주류화 정책추진현황

### 1.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적 기반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1.9.15. 제정, 2012. 3. 16. 시행)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분석평가의 대상정책, 시기, 결과반영, 교육 등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73) 충청지방통계청(2017), 최근 4년간 세종지역 대학졸업자 취업동향, 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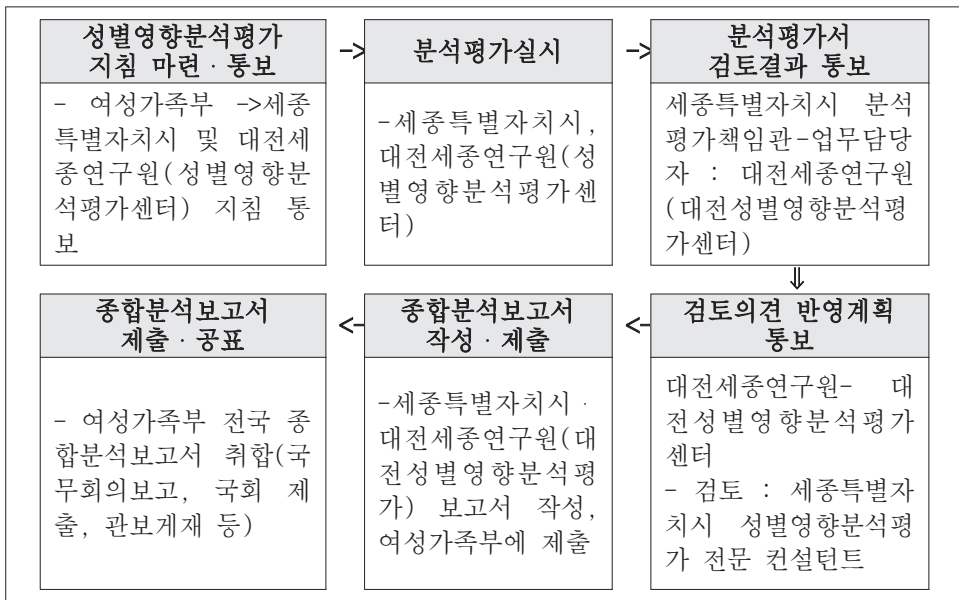
- 2015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시행 2015. 7. 1)으로 전면 개정되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법적근거도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세종특별자치시도 상기의 법령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별도의 자치법규를 통해 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독자적이며 실천적인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양성평등기본조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을 제·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2016년 6월에 이들 조례의 제·개정을 완료하여 이에 근거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 세종시는 2016년 6월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본방향과 기준, 방법, 그리고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는 것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있다.

## 2.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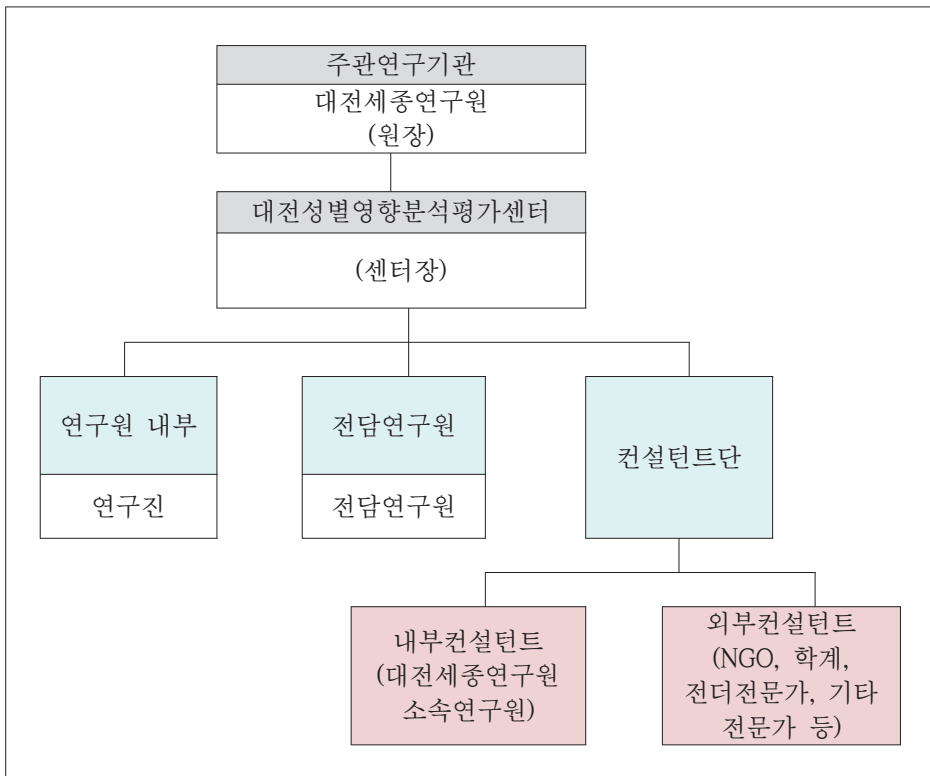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기존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였다. 출범이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꾸준히 추진하였고 2012년 92개, 2013년 77개, 2014년 77개로 타 시도에 비해 100개미만의 적은 과제를 추진하였으나, 2015년에는 세종시의 추진의지로 과제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세종특별자치시 차원에서 2015년 여성가족과를 신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였으며, 이에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247개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다(전년대비 170개 과제 수 증가).

- 2012~2015년까지 지속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 가능한 지역센터가 지정되지 않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과 별도 용역을 체결하여 컨설팅과 교육 등 일부부분에서 대해서 지원받았다.
- 2015년에는 여성가족부와 협의 하에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전년도에 추진하지 못한 계획 및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였다.
- 2016년 10월 대전세종연구원 개원하였으며, 2017년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는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사업운영 하였다.
- 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 ②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1.09.15, 제정, 2015.08.04., 일부개정)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2015.07.01, 시행, 2016.05.10., 일부개정)
- ③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절차



## 2) 조직 및 인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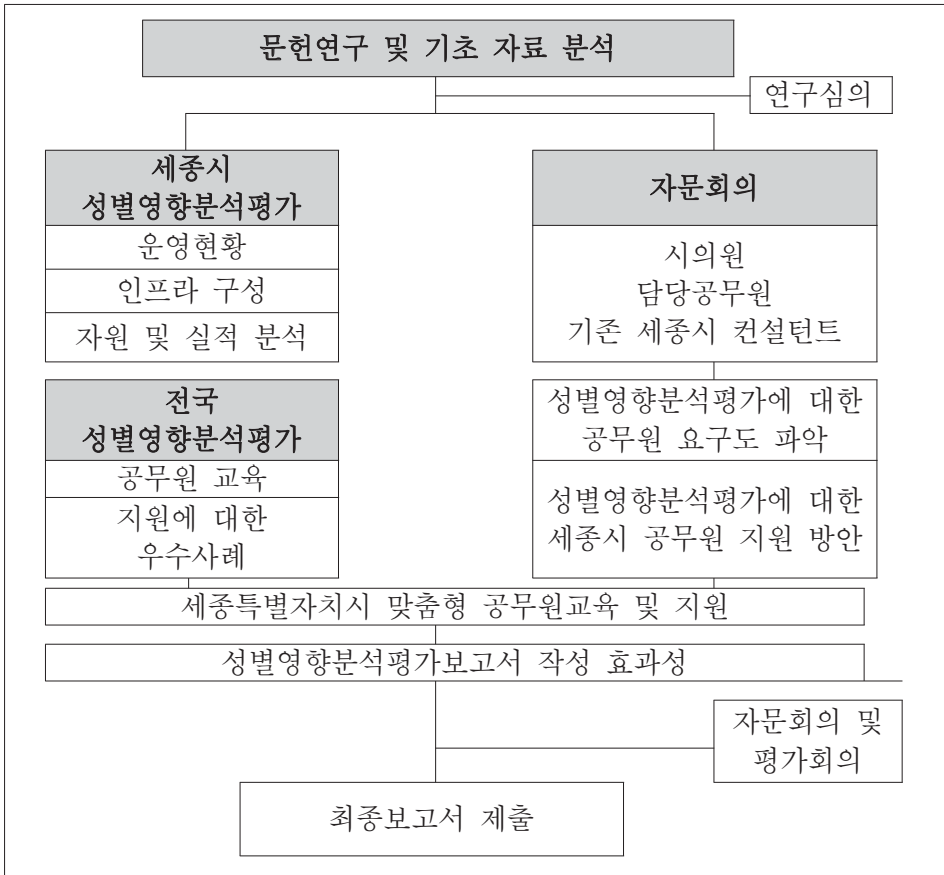
- 대전세종연구원의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센터장 및 연구위원 1명, 전담연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컨설턴트 구성은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연구원 2명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전문가들은 전년도 세종시 컨설턴트로 참여 하였거나, 대전-세종 지역의 대학교수,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젠더 전문가 및 법령분야 전문가, 대전지역 기존컨설턴트를 활용, 관련학과에 학위가 있는 지역인재로 구성되어 있다.



### ○ 연구추진체계

- 전국 각 시·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가 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센터가 없는 세종시의 경우 제도의 체계화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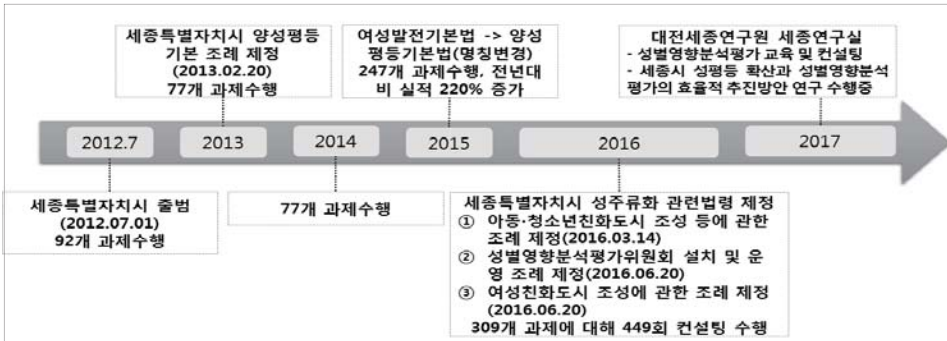
-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센터가 부재한 세종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는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담당해왔으며, 2016년 10월 31일 대전세종연구원이 확대개원하면서 세종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는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담당하게 되었다.



### 3)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발전 현황

- 세종특별자치시 성주류화 관련법령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림 3-8]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연도별 발전 현황

[표 3-4] 세종특별자치시 성주류화 관련 법적근거

구분	조례명	근거조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2016.06.20. 제5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2016.06.20. 제9조(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결정이나 정책결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시장은 각종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제1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②시장은 새로운 택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인지 예산·결산	없음	없음
성인지 통계	양성평등기본조례	양성평등기본조례(전부개정)2016.03.14. 제4조(실태조사 등)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2017.04.17. 기준)

#### 4) 세종시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서 내용

- 세종시의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에 대한 내용은 2012년부터 2014년 까지는 세종시에서 여성가족부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2015년, 2016년도는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발간한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내용은 당 해 년도의 사업 실적을 법령, 계획, 사업을 구분하고 대상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서를 컨설팅을 받은 후 제외대상, 원안동의, 개선의견(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중단), 기타(미완료)를 구분한 분석평가 추진의 총괄표와 사업내용, 우수 사례를 제시하였다.

[표 3-5]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 현황

(단위 : 개)

년도	법령	계획	사업	전체
2017 <sup>74)</sup>	15	0	82	97
2016	18	2	288	309
2015	205	1	41	247
2014	77	0	0	77
2013	77	0	0	77
2012	92	0	0	92

##### (1)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자치법규 제정이 추진되면서 조례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시작되었다.
-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조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조

74)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7년 11월 실적

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은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균형을 권고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세종시 정책추진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개선건의 40건 중 수용 34건(85%))

[표 3-6] 2012년 분석평가 추진 성과

(단위: 건수)

구분		총계	법령	계획	사업	
전체(=1+2+3+4)		92	92	0	0	
1. 제외대상		10	10	0	0	
평가 대상	2. 원안동의	36	36	0	0	
	3. 개선의견	40	40	0	0	
	반영결과	계	40	40	0	0
		수용	34	34	0	0
		불수용	5	5	0	0
		일부수용	1	1	0	0
4. 기타(중단 등)		6	6	0	0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 □ 정책개선 우수사례

##### ①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의 발주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조항의 내용 중 정책연구용역심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 관련성이 있으며, 책연구용역심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할 필요성’에, 제5조 ③항의 일부 내용을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강조토록 개선하였다.

<b>제·개정안</b>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b>개선안</b>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은 성별 관련성이 있으며, 특히 관련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인 위원의 자격, 요건에서 성별 편중성이 우려되는 바, 민간인 위원의 위촉 시 성별 균형이 고려될 수 있도록 권고 검토하였다.
- 전문가검토의견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 고려, 위원회 : 12명 (당연직 5명, 위촉직 7명) / 위원수 : 남 8명(당연직 5명), 여 4명(여성 비율 : 57%(위촉직 위원))으로 하였다.

**(2)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2년과 동일하게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업과 계획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았고, 법령만 이루어 졌다. 법령에 대한 개선안은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는 세종시의 여성가족담당부서에서만 실시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각인되어 있어 세종시 타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참여율이 저조하였다.(개선의견 14건 중 수용<sup>75)</sup> 3건(21.4%))

75) 반영결과와 수용과 일부수용을 합하여 수용률을 산술함.

[표 3-7] 2013년 분석평가 추진 성과

(단위 : 건수)

구분		총계	법령	계획	사업	
전체(=1+2+3+4)		77	77	0	0	
1. 제외대상		22	22	0	0	
평가 대상	2. 원안동의	36	36	0	0	
	3. 개선의견	14	14	0	0	
	반영결과	계	3	3	0	0
		수용	2	2	0	0
		불수용	8	8	0	0
일부수용		1	1	0	0	
4. 기타(중단 등)		5	5	0	0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 □ 정책개선 우수사례

##### 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자격·요건 등 성별특성 관련 조항과 성별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에 관한 분석 지표를 개선하였다.
- 제61조(구성)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비율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함께 도시계획 수립 시에 성인지 정책 전문가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였다.
- 도시계획수립에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요구 차이나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성인지 정책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제·개정안	<p>제61조(구성)</p> <p>④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 의회 의원</li> <li>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li> <li>3. 토지이용·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관광·농림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li> </ol>
개선안	<p>제61조(구성)</p> <p>④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b><u>여성 혹은 성인지정책 전문가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u></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 의회 의원</li> <li>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li> <li>3. 토지이용·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관광·농림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li> <li><b><u>4. 성인지정책전문가</u></b></li> </ol>

### (3)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 지난 2년간 세종시의 각부서 담당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증진됨으로써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가 비교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 하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법령만을 실시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계획 및 사업에 대한 각 부서의 실적이 전무하다.(개선의견 8건 중 수용 7건(87.5%))
- 분석평가 과제수는 77건, 컨설팅 과제수는 70건으로 컨설팅 지원<sup>76)</sup> 비율은 90.9%이다.

76)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과 별도 용역을 체결하여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컨설팅을 지원 받음.

[표 3-8] 2014년 분석평가 추진 성과

(단위 : 건수)

구분		총계	법령	계획	사업	
전체(=1+2+3+4)		77	77	0	0	
1. 제외대상		13	13	0	0	
평가 대상	2. 원안동의	56	56	0	0	
	3. 개선의견	8	8	0	0	
	반영결과	계	8	8	0	0
		수 용	7	7	0	0
		불 수 용	1	1	0	0
		일부수용	0	0	0	0
중 단		0	0	0	0	
4. 기타(미완료 등)		0	0	0	0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정책개선 현황

법령명	주요 개선 실적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관리 조례 <sup>77</sup> 전부개정조례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촉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특정성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신청서 작성란에 성별구분란을 추가 함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조례	경관 조례안 제 27조(공동위원회구성및운영) 1항 4호에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로 반영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 조례	제4조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제20 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디자인 조정 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명한다 “라는 원안을 수용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제 1항 중 “20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로 검토의견 반영
세종특별자치시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위촉위원의 성별균형고려 규정 포함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의 성별균형 고려 규정 포함 제 17 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 □ 정책개선 우수사례

### ① 세종특별자치시 지방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성별 관련성 분석 결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촉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위원회 여성비율 증가가 필요하다.

제·개정안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선안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u>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u>

77)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546호, 2014.12.22., 전부개정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변경



#### (4)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sup>78)</sup>

- 2015년에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에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되면서 2012~2014년에는 지원받지 못했던 사업과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었다.
- 세종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은 2012~2014년까지는 100개 미만 과제를 추진, 2015년에는 247개 과제를 수행, 전년대비 320%(2014년 77과제) 큰 증가폭을 보였고, 세종시에서도 2015년도 부서개편을 통해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였다.
- 대상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종전과 같이 법령의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계획 1건(0.4%)과 사업 41건(16.6%)으로 2012년부터 전무했던 성별영향분석평가 계획과 사업에 큰 변화를 보였다. 대상과제 검토 의견 통보는 개선의견 10건이 법령에 대한 것이었으며,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률은 100%이다.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대상과제 선정·발굴부터 컨설팅을 통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고 개선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지만,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담당사업과 성별관련성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고 적절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컨설턴트와 담당공무원, 사업담당공무원 등이 함께 활발한 의견교환을 하는 경험을 통해 형식적 제도가 될 수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내실화하는데 기여하였다.
- 2015년도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처음 추진하였으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지표 설명과 유사 정책개선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부족했다. 분석평가서 작성단계에서 컨설팅을 통해 지표 설명과 정책개선안 도출을 지원하였고, 기관담당공무원의 의지로 각 부서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하였으나 분석평가서의 오작성 사례가 다수

78)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참고 하여 작성

발견되었다. 따라서 향후 대상사업 담당공무원을 보다 특화하여 분석평가서의 지표에 대한 설명과 개선안을 공유하는 등의 실무중심 교육을 추가 편성하고 대면컨설팅 등을 통해 분석평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3-9] 2015년 분석평가 추진 성과

(단위 : 건수)

구분		총계	법령	계획	사업	
전체(=1+2+3+4)		246	205	1	40	
1. 제외대상		36	36	0	0	
평가 대상	2. 원안동의	200	159	1	40	
	3. 개선의견	10	10	0	0	
	반영결과	계	10	10	0	0
		수 용	10	10	0	0
		불 수 용	0	0	0	0
		일부수용	0	0	0	0
		중 단	0	0	0	0
	4. 기타(미완료 등)		0	0	0	0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 정책개선 현황

법령명	주요 개선 실적	향후 개선 계획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구성 12명 남 7명, 여 5명으로 성별균형 반영	성별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및 결원 충원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공직조서서식변경(별지 제 4 호 서식) - 군번 기재란 삭제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성별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및 결원 충원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 제1항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여,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성별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및 결원 충원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구성) ①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성별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및 결원 충원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 ①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성별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및 결원 충원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성별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및 결원 충원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제8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두되, 성별의 고른 참여를 보장한다.	성별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및 결원 충원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20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인 내외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양성의 고른 참여를 보장한다.	성별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및 결원 충원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조제2하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한다.	성별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및 결원 충원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 □ 정책개선 우수사례

### ① 세종시 도시재생전략계획<sup>79)</sup>

- 건설지역 행정업무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읍면지역 삶의 질 향상,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하였다. 주요 정책 개선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유형 검토(양성평등한 가족과 문화조성을 위해 성평등 마을 조성으로 도시재생권역별 주요이슈로 제시), 전의역 일원 활성화 지역 재생 방향(전의역 일원 활성화지역 목표 중 묘목산업 활성화 및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에 여성 인적자원의 적극적 활용 내용을 제시), 주요 개선사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반영 예정(성별 구분통계, 여성편의시설 설치 등)이다.

행정 및 업무기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 및 삶의 질 개선	공동체적 커뮤니티 활성화
↓	↓	↓	↓
<b>건설지역 행정업무 강화</b>	<b>지역경제 활성화</b>	<b>읍·면지역 삶의 질 향상</b>	<b>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b>
-공공시설 이전부지를 활용한 행정업무기능 유치 -ISBB 기능지구와 연계한 R&D 기능 활성화 -유휴부지 및 신규개발을 통한 업무단지 조성 -행정 및 업무 기능 강화에 대비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지역 내 역사·문화·자연자원의 관광 자원화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신성장(첨단융합산업) 기반 마련 -시장 특성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역세권 기능 회복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	-주거취약계층에게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 -면소재지, 취약지역의 계획적 정비 유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복지기능 강화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노후주거지의 생활안전확보	-민·관·산·학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 구축 -주민 스스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사업 추진 -복합커뮤니티센터, 전문가, 지역주민 등과 네트워크 구축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②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sup>80)</sup>

- 시(市)에서 공무원 대상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포상대상과 포상의 종류, 포상절차 등을 규정하는 조례이다.

79) 세종특별자치시,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80)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28.

- 해당 조례의 개정안은 포상에 필요한 서류인 공적조서 서식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변경(추후 수혜자의 성별 현황을 파악하고자 ‘성별’란을 추가)하였고, ‘군번’을 작성하는 서식 내용은 군에 다녀온 남성에게만 해당하여 여성과 군대 미필자의 불편한 인식과 포상선정 기준에 의도하지 않은 혼란의 우려가 있어 공적조서 기재란에서 삭제하도록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해당부서에서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공포하였다.

□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2015. 7. 30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이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적조서내 ‘군번’을 기재토록 함</li> <li>•포상의 성별수혜과약 미비</li> </ul> <p><b>[별지 제4호 서식]</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 colspan="4">공 적 조 서</td></tr> <tr><td>성 명</td><td colspan="3">(한자)</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군번</td><td colspan="2">국적</td></tr> </table>	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	국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별지 제4호 서식&gt; 공적조서</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 colspan="4">공 적 조 서</td></tr> <tr><td>성 명</td><td colspan="3">(한자)</td></tr> <tr><td>생년월일</td><td></td><td>국적</td><td></td></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별지 제5호 서식&gt; 포상대상</li> </ul> <p><b>[별지 제5호 서식]</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 colspan="10">포 상 대 상</td></tr> <tr> <td>고수</td> <td>포상 년월일</td> <td>포상 유형</td> <td>포상 기간</td> <td>의뢰 일련 번호</td> <td>공적 조서 번호</td> <td style="border: 2px solid red;">성별</td> <td>생년 월일</td> <td>포상 대상 기준 요건</td> <td>기타 비고</td> </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able> <p><small>(포상대상은 포상일, 입사일, 사망일로 구분 할애할 수 있다.)</small></p>	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			생년월일		국적		포 상 대 상										고수	포상 년월일	포상 유형	포상 기간	의뢰 일련 번호	공적 조서 번호	성별	생년 월일	포상 대상 기준 요건	기타 비고										
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	국적																																																					
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																																																						
생년월일		국적																																																					
포 상 대 상																																																							
고수	포상 년월일	포상 유형	포상 기간	의뢰 일련 번호	공적 조서 번호	성별	생년 월일	포상 대상 기준 요건	기타 비고																																														

자료: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

### (5)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sup>81)</sup>

- 2015년부터 세종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적을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2016년 또한 246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1개 과제

81) 2016년 충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 보고서,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가 줄어든 수치이지만 세종시와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적극적인 의지의 결과이다.

- 세종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은 2012~2015년까지는 새로운 도시를 구성 및 기반 확립의 시기이므로 법령에 대한 요구가 중점적으로 많았지만, 2016년에는 세종시의 사업분야의 확대가 요구되었다.
- 대상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 1건(0.4%), 사업 136건(55.2%), 법령(109건(44.3%))으로 전년대비 법령은 205개 사업에서 109개 사업으로 46.8%감소, 사업은 41개 사업에서 136개 사업으로 231% 큰 증가폭을 보였다. 대상과제 검토의견 통보는 개선의견 1건이 법령에 대한 것,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률은 100%이다.
- 2016년에 309개 과제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 이는 전년대비 113개 과제에서 크게 증가하여 세종시는 지방정부합동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행점검 등의 제도 전반에 걸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과제 선정에서부터 형식적이 평가서가 작성되거나 전문가 의견 및 컨설턴트의 의견을 미수용 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 세종시는 매년 양적인 성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나, 각 실국 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성인지 예산 안에서 컨설팅 지원이 부족한 점은 전체 사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업무지원 전담조직(센터)이 지정이 되어, 집중적인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무리한 성과 중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전체 제도에 대한 불신, 부정적인 인식을 주어 업무 담당자의 평가서 작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각 실국간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충분한 교육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표 3-10] 2016년 분석평가 추진 성과

(단위 : 건수)

구분		총계	법령	계획	사업	
전체(=1+2+3+4)		246	109	1	136	
1. 제외대상		47	47	0	0	
평가 대상	2. 원안동의	197	61	0	136	
	3. 개선의견	1	1	0	0	
	반영결과	계	1	0	0	0
		수용	1	0	0	0
		불수용	0	0	0	0
		일부수용	0	0	0	0
	중단	0	0	0	0	
4. 기타(미완료 등)		1	0	1	0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정책개선 현황

법령명	주요 개선 실적	향후 개선 계획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성별구분, 특성, 균형참여 관련 사항 중 참여(위원회) 관련 성별균형 참여 뿐아니 라 다양한 배경의 아동청소년 참여위원 포함 노력명시	성별균형 참여 및 다양한 배경의 참여위원 포함하여 조례제정 완료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정책개선 우수사례<sup>82)</sup>

- ① 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를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 조성하며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증  
진을 도모하였다.

82)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  
과보고서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는 아동과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행복도시 세종’을 강조하고 있기에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표현을 ‘행복하게’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법률의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의 차이가 고려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법률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2016. 3. 14 제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이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후
제3조(시장의 책무) ①~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b>행복하게</b>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추가)	제6조(아동·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b>아동·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며</b>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8조(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 시장은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 시장은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b>성별 특성을 고려하여</b>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구성) ②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9조(구성) ② ~시장이 <b>성별과 인종적, 사회적 배경의 균형을</b> 고려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역의 우수한 먹거리를 학교급식 중심으로 공공급식분야까지 확대하여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 정립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학교 현물급식 명시 등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급식과 연계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 지역 농산물 중심으로 한 학교 급식문화 형성은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법률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그 과정에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법률에서 정하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조항으로 특정 성별의 참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자격 요건도 완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과 여성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6. 20 제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이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후
(제정)	제7조(구성)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원</li> <li>2.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li> <li>3.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li> <li>4.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li> <li>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li> <li>6.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li> <li>7.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li> <li>8.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③ 사업 - 농업인교육활성화(농업인대학운영지원)

- 과제선정의 적절성 :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농장 경영과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 분석평가 주요 내용 및 개선 필요성 : 대부분 농가경영주는 남성 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교통수단이 남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로서 여성의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여성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 개선내용 : 중앙부처의 농업인대학 평가 시 여성의 교육 참여 비율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그에 맞는 예산이 차등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원활한 교육 참여를 위한 교육방법을 발굴하고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전통 식품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물론 부부교육과 현장연찬 교육 과정 등을 편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농업인교육활성화(농업인대학운영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이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후(개선완료)
○ 여성농업인의 원활한 교육참여를 위한 교육 방법실시 : 농산물가공, 전통식품 등의 교육과정 개설 및 부부교육, 현장연찬교육 등 제안	○ 로컬푸드 가공교육 실시(떡 만들기) ○ 관련 예산 확보(2,500천원) 및 교육 실시(8회)

④ 사업 - 건강한 생활습관 함양(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 과제선정의 적절성 :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 실천률을 높이고, 비 흡연인구의 흡연인구로의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홍보를 강화하여 건강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여성 흡연인구의 증가와 청소년 흡연 등의 문제는 개인의 건강악화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에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대상자의 특징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 분석평가 주요 내용 및 개선 필요성 : 보건복지부의 2015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금연클리닉 이용자의 90%는 성인 남성인 반면 여성과 청소년의 이용 비중은 각각 8.5%, 1.2%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에 지역금연센터를 열어 금연클리닉 이용이 적은 청소년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 를 제공, 청소년과 여성 금연클리닉 이용률 저조로 인한 새로운 대안책으로 지역금연지원센터는 청소년에게 금연 상담을 해주고 청소년상담센터와 함께 청소년에게 금연지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이 많은 직종인 콜센터,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금연교육과 금연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개선내용 : 정부지침 중 여성금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 차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하였고, 이에 따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홍보물 제작 예산을 편성, 금연클리닉에 여성흡연자를 위한 별도 전담 상담원을 배치하고 공간분리를 통하여 여성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 건강한 생활습관 함양(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성별영향분석평가 이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후(개선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침 중 여성의 금연에 대한 대책 검토후 차년도 업무계획에 반영</li> <li>○ 차년도 금연사업 계획에 여성금연에 대한 별도 계획안 마련</li> <li>○ 여성 전용금연 홍보물품 제작 비용 예산 마련</li> <li>○ 여성대상 금연클리닉 참여 홍보</li> <li>○ 여성전용 상담실 마련 및 상담사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전용금연 홍보물품 제작 예산 확보 (1,000천원)</li> <li>○ 여성 대상금연클리닉 참여홍보 배포 (총 11회 /총 3,050명 참여)</li> <li>○ 여성 전용상담실 및 상담사 배치 (보건소 2층 / 1명)</li> </ul>

**⑤ 사업 - 지역관광활성화(국내외 관광객유치 증대사업)**

- 과제선정의 적절성 : 박람회 참여하는 국내외 참여자들을 위한 관광홍보관 운영하여 세종시의 관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력 있

는 국내외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관광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관광설명회 개최와 세종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과정에 여성 종사자들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관광지를 방문하는 여성은 물론 아동 등의 이용자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기에 본 과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분석평가 주요 내용 및 개선 필요성 : 최근 성장하는 기업, 지자체는 여성에 대한 관점, 경험,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 관광객들의 여건과 욕구가 무엇인지가 면밀히 파악되어야 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나홀로 여행객들이 증가, 여성의 낯선 곳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 증가하면서 여성관광객의 안전을 염두에 둔 세종 관광홍보 콘텐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세종시 관광홍보시-관광객 모집, 대표 축제와 주요 관광지 팸투어 진행 및 서포터즈 운영 점검,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의 주요 대형 국외여행 관광업체와 관광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협력 등에 대해 성인지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 개선내용 : 관광객의 성별통계를 생산하고 관광객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계획 수립, 관광지의 ‘여성안전’ 대책 점검 및 관광안내소에서의 여성친화적 이용시설물 등을 홍보하고 관광협회 구성원의 성인지력 향상과 여성친화도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안하였다.

□ 지역관광활성화(국내외 관광객유치 증대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이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후(개선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협회의 여성친화적 관광산업(시대흐름의 변화와 지역관광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령화사회대비, 1인 가구증가, 여성안전, 사회적약자층의 관광인프라등) 정책토론회 개최</li> <li>○ 관광객의 성별통계 및 만족도 조사용역</li> <li>○ 관광지의 ‘여성안전’ 대책 점검 및 관광안내소에서 여성친화적 시설물 홍보</li> <li>○ 관광협회 구성원의 성인지력 향상과 여성친화도시 개념 이해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협회의 여성친화적 관광산업 정책토론회 추진 중</li> <li>○ 관광객의 성별통계 및 만족도조사 용역 발주 검토 중 (하반기 진행)</li> <li>○ 관광지의 ‘여성안전’ 대책 점검 및 여성친화적 요소 홍보 추진 검토 중</li> <li>○ 관광의 날 기념행사 시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관련 교육 예산 반영 검토 중</li> </ul>

⑥ 사업 - 방호구호활동 기반 구축(의용소방대 운영)

- 과제선정의 적절성 : 화재 발생시 화재진압활동과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그에 맞는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체적, 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여성의 다양한 조건들을 배려한 사업계획과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분석평가 주요 내용 및 개선 필요성 : 의용소방의 역할은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재난에 대한 대비, 화재진압 지원 등의 일에 주로 참여하고 있고 여성들은 화재예방에 관한 홍보와 지역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의용소방대의 봉사활동은 자연보호, 연탄봉사, 독거노인 돌봄봉사, 목욕봉사, 복지회관 급식봉사, 밀반찬봉사, 사회복지기관 청소, 재활용품 수집 판매로 불우이웃돕기, 불조심 캠페인, 호국보훈가족 잔치, 민방위의 날 훈련 종료 때까지 지역의 주변 교통정리 등 의용소방대로서 화재진압 외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봉사단체처럼 많은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를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화재진압현장에서 직접 소방을 하지는 않지만 화재현장에 달려가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식사와 차 대접, 힘든 상

황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며, 화재진압이 끝나면 뒷마무리와 정리정돈까지 참여하고 있다. 여성들은 주로 주부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낮 시간 활용도 등 남성에 비해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인식이 있고, 지역사회를 위해 돌봄의 역할을 여성의 역할로 구분하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화재진압 현장에서의 봉사영역, 일상에서의 봉사활동에 여성이 주로 참여가 많다. 다시 말해서 안전복지 서비스와 각종 재난현장의 보조역할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소방홍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 개선내용 : 양성 평등한 관점에서 화재 발생 시 안전에 취약한 여성에 대한 별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재난재해 대비 역할 가이드라인 구체적 마련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조례가 제정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재난재해 대비 훈련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성희롱예방교육, 성인지력 향상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제안하였다.

**일본의 성인지적 재난재해 대비 지침<sup>83)</sup>**

1. 재난부서의 여성직원비율을 전체 직원 중 여성비율에 가깝게 여성을 등용할 것
2. 재난담당부서의 직원에게 성 인지관점에서의 재난대응방법을 교육훈련시킬 것
3. 대피소에 수유실, 남녀별 빨래건조실, 탈의실 설치할 것
4. 대피소: 영유아동반, 독신여성, 여성가구를 위한 별도 구역 설정, 칸막이 사용
5. 여성용 화장실과 탈의실, 욕실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조명, 주변 환경 등)
6. 대피소의 관리책임자에게는 남녀 모두 배치
7. 대피소 자치운영조직에는 여성이 적어도 30% 이상 되도록 함.
8. 대피소에서 조리, 설거지, 청소 등을 여성이 전담하지 않도록 고려
9. 여성용품은 여성직원이 배부하도록 할 것
10. 임시주거시설이 장애인, 영유아동반 여성, 임산부,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 고려 여부

83)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2015.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안태윤)

□ 방호구조활동 기반 구축(의용소방대 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 이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후(개선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의용소방대원의 재난재해 대비훈련 및 전문성강화를 위한 예산 마련</li> <li>○ 남녀 의용소방대원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력 향상 교육 실시</li> <li>○ 소방서와 협력을 통해 남녀 의용봉사대원의 편의장비, 공간 등 의견 수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강사양성 (생활안전, 수호천사, 심리상담사) 전문 교육 훈련 예산편성(17,000천원)</li> <li>○ 센터 및 지역대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별도 공간 마련</li> </ul>

⑦ 사업 - 산학연 지원(창업보육 활성화 지원)

- 과제선정의 적절성 : 대학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남성과 여성의 창업에 대한 욕구와 그에 따른 수요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창업의 영역에 대한 여성과 청년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 분석평가 주요 내용 및 개선 필요성 : 2015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인구 증가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성장에 의해 남성과 여성의 고용전망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수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제조업(48%), 건설업(1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1%)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여성의 경우 제조업(3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2%) 순으로 나타나, 창업 또는 구직 시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서비스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개선내용 : 사업수혜자로서 대학생과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성별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안, 수혜 대상자의 경우, 대표자 성별에 따라 업종이 정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고려하여 성별 및 업종의 특성에 따라 특화된 교육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 창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참여자를 선정할 때 여성우대 가점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사항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 산학연 지원(창업보육 활성화 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이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후(개선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혜자(대학생, 예비창업자 등) 대상,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 실시</li> <li>○ 성별 및 업종의 특성에 따라 특화된 교육 제공</li> <li>○ 여성 창업인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 참여자 선정 시 여성 우대가점을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보육 지원 사업 지원 : 창업성장지원, 창업 활성화 지원, 창업 네트워킹, 워크샵 등 개최 (홍익대, 한국영상대/80,000천원)</li> <li>○ 청년 비상 프로그램 지원 사업 : 세종 시민 창업 특강(4주), 창업동아리(6개팀), 기업탐방(6개팀) ((고려대학교/100,000천원)</li> <li>○ 세종시 경영 안정자금 이차차액 보전 : 여성·장애인기업 1.0%p 추가보전</li> </ul>



## 4장

# 세종시 성평등지수지표 현황

1. 성평등지수
2. 세종시 성평등지수지표 현황



## 4장. 세종시 성평등지수지표 현황

### 1절. 성평등지수<sup>84)</sup>

- 성평등의 목적, 방향 그리고 기준 등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성평등수준 향상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특정 국가의 성평등과 관련한 장점과 약점,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평가 등을 가능하게 함(European Commission: 2003).<sup>85)</sup>
- 우리나라는 “2009년 여성가족부가 국가 성평등 수준의 다각적인 파악과 개선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가 성평등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성평등지수를”<sup>86)</sup> 개발하였으며, 2010년부터 “국가 성평등수준과 추이를 담은 국가 성평등 보고서를 발간하기”<sup>87)</sup> 시작하였음.
- 국가 성평등지수는 남녀평등 상황과 성평등 개선 정도, 성평등이 심각한 부문과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과 관심을 재고시키는 “동시에, 성평등지수와 국가경쟁력, 복지(well-being)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지수(Socio-economic indicators)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sup>88)</sup> 있음.
- 지역 성평등지수는 지역별로 성평등수준과 남녀불평등 원인이 다르고 성평등 관련 정책과 조례 등 법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시의 성평등수준과 불평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동시에 지방정부의 성평등 관련 정책 방향과 과제, 정책의 실효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지역성평등지수를 활용하고 있음.

84)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인용

85) 여성가족부(2011). 2011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 3.

86) 여성가족부(2011). 지역 성평등 지수 표준안 개발연구, p. 3

87) 여성가족부(2011). 지역 성평등 지수 표준안 개발연구, p. 3

88) 여성가족부(2012). 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p. ii

[표 4-1] 국가·지역 성평등지수 지표 구성 비교<sup>89)</sup>

영역(3개)	분야(8개)	국가성평등지수의 구성 지표(23개)	지역성평등지수지표(23개)
성평 등한 사회 참여	경제 활동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15 ~ 64세)
		성별 임금격차	성별 임금격차
		상용근로자 비율	상용근로자 비율
	의사 결정	국회의원 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4급 이상 공무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관리직 비율
		정부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교육 · 직업 훈련	평균 교육년수	평균 교육년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여성 의 인권, 복지	복지	비빈곤 가구주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장애인 고용률	건강검진 수검률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스트레스 인지율
		건강검진 수검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스트레스 인지율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가사노동시간
		강력범죄(홍악범) 피해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성평 등 의식, 문화	가족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 만족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가족관계 만족도	여가시간
		육아휴직자	여가 만족도
	문화, 정보	여가시간	인터넷 이용률
		여가 만족도	여가만족도
		성별정보화격차	인터넷 이용률

자료: 여성가족부,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89) 여성가족부,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연구 13쪽, 2016년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 분야 및 지표 구성과 2016년 국가성평등지수를 인용

## 2절. 세종시 성평등지수지표 현황

- 세종시 성평등지수 지표 현황은 2016년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 분야 및 지표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 성평등지수표에 현황의 지표에 대한 데이터는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연구의 지역성평등지수 구성 지표의 통계적 정의, 자료원을 참고하여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보고서, 행정자치부 지자체 여성공무원 통계 등 세종시 자료를 추가하여 재구성 하였다.

[표 4-2] 전국·세종시 성평등 지수, 지표 구성 비교<sup>90)</sup>

분야	지표명	자료원 <sup>91)</sup>	세종시 자료원 및 설명
경제 활동 분야 (3개)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세종통계 홈페이지 - 충청남도(구) 연기군의 자료 활용 성비제시 없음 - 지역별고용조사는 세종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
	성별 임금격차(성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세종시 사회조사 - 세종시 사회조사 보고서 활용, 취업가능 일자리 및 희망급여 - 지역별고용조사는 세종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세종시 사회조사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재가공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세종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
의사 결정 분야 (4개)	광역 및 기초의원 성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DB	동일한 자료 활용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 성비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동일한 자료 활용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90) 전국의 성평등 지수 지표 자료원을 이용하여 세종시의 자료를 만들었고 해당자료에서 업데이트 하였음

91)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연구

	관리직 비율 성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지역별고용조사」로 보정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 지자체 여성공무원 비율, 주요 부서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 제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는 세종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성비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세종시 내부자료 -2015년 전국 위촉직 여성참여비율, 2015년 세종시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2016년 세종시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은 세종시 내부자료 활용
교육· 직업 훈련 분야 (3개)	평균교육년수 성비	통계청, 「인구총조사」	세종시 사회조사 -세종시 사회조사의 교육정도를 활용 -인구총조사는 세종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동일한 자료 활용
복지 분야 (2개)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동일한 자료 활용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기초생활보장자 비율 성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동일한 자료 활용
보건 분야 (3개)	건강관련 삶의 질 (EQ-5D)의 성별 격차	질병관리공단, 「지역사회건강조사」.	동일한 자료 활용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동일한 자료 활용 -보건복지부「건강보험통계」추가활용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질병관리공단, 「지역사회건강조사」.	동일한 자료 활용 -보건복지부「지역사회건강조사」추가활용
안전 분야 (2개)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인식 성비	통계청, 「사회조사」	동일한 자료 활용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의 성비	경찰청, 내부자료 원자료 분석	경찰청의 「경찰청범죄통계」,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경찰청의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의 성비자료는 세종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
가족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동일한 자료 활용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는 세종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



분야 (4개)			-전국지표만 기입
	셋째 아 이상 출생 성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동일한 자료 활용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통계청, 「사회조사」	동일한 자료 활용
	육아휴직자의 성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분석	동일한 자료 활용
문화 정보 분야 (3개)	여가시간의 성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동일한 자료 활용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는 세종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 -전국지표만 기입
	여가만족도 성비	통계청, 「사회조사」	동일한 자료 활용
	인터넷 이용률 성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동일한 자료 활용

## 1) 경제활동

- 세종통계 주요통계 및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2017년 시정 주요통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 ① 경제활동참가율

- “만 15세~64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성비”<sup>92)</sup>를 나타내고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세종시는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93)</sup>
- 해당지표는 세종통계의 주요통계에 제시되어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2016년 10월 충청남도 (구)연기군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인구 191천명 중 122.6천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 64.1%이며, 성별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 세종시 ‘2017 시정 주요통계<sup>94)</sup>’ 제시되어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201.5천명 중 136.2천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 67.6%으로 전년 대비하여 증가했으며, 성별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 ② 성별 임금격차

- 해당 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세종시 사회조사의 ‘취업가능 일자리 및 희망 급여에 대한 내용으로 분석하였다.
- 만 18세 이상 인구 중 29.8%가 구직(또는 이직)계획이 있었으며,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 형태는 「관리·전문직」 38.1%, 「사무직」 28.6%, 「판매·서비스직」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취업가능 일자리 및 희망급여에 관련한 남녀 비교를 살펴보면, 구직계획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으나, 취업가능 일자리가 남자에 비해 한정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희망급여 또한 남성에 비해서 1,472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통계표 ‘여성 고용동향’을 활용

93) 2018년 상반기 발표예정

94) 2017년 11월 발간, 시정주요통계는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함.

[표 4-3] 세종시 취업가능 일자리 및 희망급여

(단위 : %, 만원)

구분	만 18세 이상	구직계획 있음	취업가능 일자리								희망급여 <sup>95)</sup> (연봉 또는 연소득)	구직계획 없음
			소계	관리, 전문직 (교직 포함)	사무직	판매·서비스 직	농림어업 숙련 직	기능원 (기술 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원	단순 노무 종사 자		
전체a)	100.0	29.8	100.0	38.1	28.6	13.8	0.3	10.5	1.5	7.2	3,696	70.2
남자	100.0	26.7	100.0	36.3	23.7	11.2	0.7	18.4	2.9	6.7	4,507	73.3
여자	100.0	32.8	100.0	39.6	32.6	16.0	-	4.1	0.2	7.6	3,035	67.2

a) 세종시민

자료: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재가공

③ 상용근로자 비율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세종시의 상용근로자 비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수의 지표는 세종시 사회조사의 종사상의 지위, 근로여건 만족도, 구직활동 여부 및 여성취업 장애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분석하였다.
- 종사상 지위의 남녀 비교에서는 남자의 73.7%는 직업이 있었으나, 여자는 45.4%만이 직업이 있었으며, 근로형태에서도 임시근로자(11.7%), 무급가족봉사자(10.5%)인 경우가 남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여자의 종사상 지위의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세종시 종사상 지위

(단위 : %)

성별	직업 있음	계	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직업 없음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 있음	고용원 없음		
전체a)	59.5	100.0	76.8	65.8	7.0	4.1	6.2	12.3	4.7	40.5
남자	73.7	100.0	76.4	68.3	4.1	4.0	7.2	15.3	1.1	26.3
여자	45.4	100.0	77.5	61.7	11.7	4.1	4.6	7.4	10.5	54.6

a) 세종시민<sup>94</sup>

자료: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재가공

95) 만18세 이상 인구 중 구직계획이 있거나, 직장의 변경 계획이 있는 경우 희망하는 급여 수준, 2015년 문항의 항목 변경으로 '일에 대한 여성의 능력부족(2.5%)' 항목을 '기타'로 합산

- 근로여건 만족도에 있어서 전반적인 근로여건은 물론 근로여건과 관련된 세부적인 만족도 문항( ‘하는 일’ , ‘임금 수준’ , ‘고용안정성’ , ‘근무환경’ , ‘근로시간’ ) 전체에서 모두 남자의 만족도가 여자의 만족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근로여건 만족도**

(단위 : %)

근로여건	성별	임금 근로자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하는 일	남자	76.4	100.0	60.7	23.1	37.6	33.7	5.6	4.6	1.0
	여자	77.5	100.0	55.9	18.5	37.4	39.6	4.5	3.5	1.0
임금수준	남자	76.4	100.0	43.1	13.3	29.8	40.9	16.0	12.4	3.6
	여자	77.5	100.0	36.1	8.9	27.2	43.3	20.6	16.9	3.7
고용안정성	남자	76.4	100.0	59.3	29.2	30.1	29.9	10.8	7.4	3.3
	여자	77.5	100.0	49.9	22.1	27.8	35.8	14.3	10.9	3.4
근무환경	남자	76.4	100.0	51.9	19.8	32.1	35.8	12.3	9.7	2.6
	여자	77.5	100.0	49.0	17.5	31.5	39.7	11.3	10.0	1.3
근로시간	남자	76.4	100.0	50.5	21.0	29.5	35.8	13.7	10.4	3.3
	여자	77.5	100.0	47.6	18.5	29.1	39.1	13.3	9.9	3.5
전반적 근로여건	남자	76.4	100.0	51.4	17.7	33.7	39.4	9.2	7.5	1.8
	여자	77.5	100.0	45.7	15.4	30.3	43.1	11.3	9.2	2.1

자료: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재가공

- 구직활동 여부에 있어서 응답자의 40.5%는 직업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여자의 경우 54.6%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의 취업의 어려움의 이유로 여성은 희망직종의 일자리 부족(40.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희망근무시간 불일치(27.5%)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은 희망직종의 일자리 부족(36.3%) 다음으로 희망임금수준 불일치(29.8%)인 것으로 나타나 남녀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4-6] 구직활동 여부 및 취업의 어려움

(단위: %)

구분	직업 없음	계	구직 경험 있음	취업의 어려움									구직 경험 없음
				소계	희망 임금수준 불일치	희망 근무시간 불일치	희망직종 의일자리 부족	희망직종 의자격요 건미충족	채용정보 접근의어 려움	근로 여건 미비	기타		
전체 <sup>a)</sup>	40.5	100.0	10.9	100.0	18.4	20.2	38.8	8.7	4.9	2.7	6.4	89.1	
남자	26.3	100.0	15.5	100.0	29.8	11.7	36.3	6.7	6.2	-	9.3	84.5	
여자	54.6	100.0	8.6	100.0	8.6	27.5	40.9	10.4	3.8	5.0	3.8	91.4	

a) 세종시민

자료: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재가공

## 2) 의사결정

- 세종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성평등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위원회 여성참여현황을 활용」하여 지자체 여성공무원 비율,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 주요부서별 여성관리직 현황,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성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 ① 세종시 광역의원 비율

-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의원연맹(IPU)에 따르면, ‘2016년 여성의 의회 진출에 관한 보고서’에서 세계 전체 여성 의원 비율은 평균 23.3%로 10년전 보다 6.5% 증가하였고, 1위는 아프리카 르완다로 하원의원 전체 80명 중 여성의원이 49명으로 의원의 61.2%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sup>96)</sup>
- 우리나라의 의원비율은 IPU 193개국 중 116위였으며, 비교적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의 여성의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6) “G7 중 여성 국회의원이 가장 적은 나라 일본” <아이사투데이>, 2017.03.0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분석결과 2014년 전국의 광역의원수는 789명, 이중 여성의 비율은 14.3%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기초의원은 20%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광역의원의 여성비율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 의원이 15명으로 그 중 12명이 남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자는 3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성비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7] 세종시 광역의원수**

(단위: 명, %)

시·도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 국	789(84)	113(55)	676(29)	14.3
세종시특별자치시	15(2)	3(2)	12(0)	20.0

주: 1)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포함.

2) ( )는 광역의원비례대표 수.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②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 중에서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34.9%,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12.6%, 6급 이상 공무원 27.5%, 6급 공무원 32.2%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세종시의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30.8%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12.9%, 6급 이상 공무원은 28.2% 6급 공무원은 39.9%으로 나타나 전국 통계 수치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전국 통계 수치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관리직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목표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표 4-8] 세종시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			6급 이상 공무원			6급 공무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국	303,401	106,012	34.9	22,083	2,775	12.6	93,910	25,872	27.5	71,827	23,097	32.2
세종	1,514	467	30.8	233	30	12.9	536	151	28.2	303	121	39.9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p.49, 2016.12.31기준

### ③ 관리직 비율 성비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를 살펴보면 1995년도 전체 공무원 277,387명 중 여성공무원은 54,472명으로 전체 19.63%에 해당했으나,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303,401명 중에 여성공무원은 106,012명으로 전체 34.94%로 나타났으며, 20년간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특히 전체공무원의 증가비율이 9.37%인 것에 비해, 여성공무원의 증가비율은 94.61%인 것으로 나타나 그 증가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전체 공무원의 34.9%로 여전히 남성공무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부산(38.9%)이었으며, 다음은 서울시(37.9%), 경기도(3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는 전국대비 낮은 비율로 30.8%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체 34.9%, 매년 여성공무원은 증가하였으나, 남성공무원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지자체 여성공무원 비율

(단위: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공무원	279,636	281,035	284,355	287,299	289,914	296,273	303,401
(증감)	(+1,333)	(+1,399)	(+3,320)	(+2,944)	(+2,615)	(+6,359)	(+7,128)
여성공무원	83,282	84,239	87,239	89,979	94,346	99,865	106,012
(증감)	(+1,104)	(+957)	(+3,000)	(+2,740)	(+4,367)	(+5,519)	(+6,147)
여성공무원 비율	29.8	30	30.7	31.3	32.5	33.7	34.9
(증감)	(+0.3)	(+0.2)	(+0.7)	(+0.6)	(+1.2)	(+1.2)	(+1.2)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p3, 2016.12.31.기준

- 세종시 주요부서에서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21.7%), 예산(17.6%), 인사(16.7%), 감사(33.3%), 실국 주무과(23.7%)로 조사되었다. 이는 감사 부서를 제외한 모든 주요부서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전국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종시 주요부서에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국 평균과 가장 많은 차이 부서는 예산(21.4%), 기획(16.8%), 인사(15.3%), 실국 주무과(14.3%)에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10] 세종시 주요부서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기획			예산		
	전체	여성	비율 (%)	전체	여성	비율 (%)	전체	여성	비율 (%)
전국	37,041	13,837	37.4	1,898	731	38.5	1,679	651	38.8
세종	203	48	23.6	23	5	21.7	17	3	17.6
구분	인사			감사			실국 주무과		
	전체	여성	비율 (%)	전체	여성	비율 (%)	전체	여성	비율
전국	1,906	612	32.1	2,351	626	26.6	29,207	11,217	38.4
세종	6	1	16.7	18	6	33.3	139	33	23.7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p.17, 2016.12.31.기준



④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 지방자치 단체 소속위원회에서 여성참여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전국 위촉직 여성참여 전체 비율 평균은 29.9%, 세종은 29.6%로 나타나 전국 수준과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세종시 여성위원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세종시의 위원회는 총 85개이며, 위촉직 위원수는 1,18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여성위원은 총 350명으로 전체의 29.6%로 조사되었다.
- 2016년도 세종시 위원회별 여성위원 참여 현황에 대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총 147개이며, 위촉직 위원수는 2,05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여성위원은 총 699명으로 전체의 33.9%로 조사되었다.
- 통계청 KOSIS에서 제공한 2016년 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위원회 여성참여현황은 지역별로 제공되지 않고 서울시 각 구와 전체의 현황에 대해서 제공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전체 위촉직 여성 비율의 평균이 32.3%인 것으로 나타나, 세종시의 위촉직 여성 비율(33.9%)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2015년 전국 위촉직 여성참여비율

(단위: %)

구 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비 율(%)	27.3	32.1	29.4	24.5	31.7	29.1	37.5	33.1
구 분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청	충청
비 율(%)	39.4	28.6	31.5	22.6	24.2	32.9	24.6	31

자료: 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위원회 여성참여현황

[표 4-12] 2015년 세종시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단위: 명, %)

구 분	위원회수	위촉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수	위촉직 여성위원수	위촉직 여성비율
계	85	1,182	350	350	29.6

자료: 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위원회 여성참여현황.

[표 4-13] 2016년 세종시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단위: 명, %)

구분	위원 회수	위원수			여성위원수(비율)		
		계	당면직	위촉직	계	당면직	위촉직
계	147	2,591	532	2,059	724(27.9%)	25(4.6%)	699(33.9%)

자료: 세종시, 내부자료 활용

### 3) 교육 · 직업훈련

- 2016년 세종시 사회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교육정도와 교육부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여 평균 교육년수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 ① 평균 교육년수

- 현재 세종시는 인구총조사의 평균 교육년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 세종시 사회조사의 조사대상자 교육정도를 활용하여 평균 교육년수를 추정해 보았다.
- 질문의 항목 중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0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9년, 고등학교 12년, 대학(4년제 미만) 14년, 대학교(4년제 이상) 16년, 대학원 석사과정 18년, 대학원 박사과정 20년으로 추정하고 조사대상자들의 성별에 대한 평균 교육년수 추정하였다.
- 세종시 사회조사 대상자의 평균 교육년수는 12.9년, 여성은 12.2년 남성은 13.7년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1.5년 교육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 조사년도의 차이가 있지만, 2010년 한국의 사회지표의 평균 교육정도의 전국 평균은 11.6년, 여성은 10.9년, 남성은 12.4년으로 2016년 세종시 사회조사 대상자 성별에 따른 평균 교육년수 1.5년의 차이를 동일하게 보이고 있으며, 전국에 비해 세종시의 교육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세종시 평균 교육년수

(단위: 명, 년)

구 분		여 성(N=1528)		남 성(N=1454)	
교육정도	교육년수	N	평균년수	N	평균년수
안받았음	0년	98	12.2	25	13.7
초등학교	6년	172		105	
중학교	9년	169		131	
고등학교	12년	303		307	
대학(4년제 미만)	14년	237		152	
대학교(4년제 이상)	16년	426		537	
대학원 석사과정	18년	98		137	
대학원 박사과정	20년	25		60	

자료: 2016년 세종시 사회조사 재가공

②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세종시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여성의 진학률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남성의 경우에는 전국 수치는 물론, 전국 남성 수치에 비해서 매년 낮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5] 세종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국	70.7	74.5	67.4	70.9	74.6	67.6	70.8	74.6	67.3
세종	67.7	71.8	65.1	68.5	75.9	62.8	66.9	73.0	62.2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여성가족부,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연구를 재가공

4) 복지

- 세종시의 복지관련 성평등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계」 내부자료, 여성가족부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보고서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①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가입자의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세종시 여성의 비율은 전국의 평균적인 여성비율에 비해서 적은 수치이지만, 전국 평균과 세종시의 평균의 차이가 2013년의 7.9%, 2014년 5.8%, 2015년 2.9%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세종시 공적연금 가입자 전체(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단위: 명, %)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7,282,238	10,236,670	41.6	7,574,426	10,341,563	42.3	7,938,292	10,494,002	43.1
세종시	16,947	33,282	33.7	23,380	40,715	36.5	30,465	45,324	40.2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내부자료, 여성가족부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재가공

- 국민연금 가입자의 세종시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의 평균적인 여성비율에 비해서 적은 수치이지만,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과 세종시의 평균의 차이가 2013년의 7.3%, 2014년 5%, 2015년 1.7%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세종시 국민연금 가입자  
(단위: 명, %)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6,692,641	9,476,698	41.4	6,967,593	9,586,528	42.1	7,315,852	9,740,937	42.9
세종시	14,232	27,493	34.1	17,604	29,786	37.1	23,826	34,008	41.2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세종시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의 평균적인 여성비율에 비해서 적은 수치이지만, 다른 연금과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과 세종시의 평균의 차이가 2013년의 10.5%, 2014년 8.7%, 2015년 6.9%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세종시 공무원연금 가입자**

(단위: 명, %)

시·도	2013년			2014년			2015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454,954	617,656	42.4	468,031	613,116	43.3	480,124	612,914	43.9
세종시	2,715	5,789	31.9	5,776	10,929	34.6	6,639	11,316	37.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②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의 여성비율은 전국 여성평균비율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기초생활수급자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기초생활수급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2016 세종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2년 3,439명에서 2014년 3,274명, 2015년 4,192명으로 2012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5년 4,19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19] 세종시 기초생활수급자**

(단위: 명, %)

시·도	2013년				2014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1,258,582	711,258	547,324	56.5	1,237,386	693,995	543,391	56.1
세종시	2,695	1,468	1,227	54.5	2,677	1,477	1,200	55.2
시·도	2015년							
	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국	1,554,484	854,262	700,222	55.0				
세종시	3,618	1,982	1,636	54.8				

주: 일반수급자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5) 보건

- 보건과 관련하여 세종시의 성평등지수를 살펴보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를 활용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성별 격차,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 ① 건강관련 삶의 질(EQ-5D<sup>97)</sup>)

-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은 5개 지표, 즉, 자기관리(Self-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y), 통증/불편감(Pain / Disability), 그리고 불안과 우울(Anxiety and Depression)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포괄하는<sup>98)</sup> 지표값에 대한 성비<sup>99)</sup>다.
- 세종시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강 관련 삶의 질 지수가 낮고, 전국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가 낮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sup>100)</sup>의 성별분리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16년도 세종시의 건강관련 삶의 질(EQ-5D)지수는 0.953점, 전국평균은 0.945점으로 세종시의 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세종시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단위: 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sup>101)</sup>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전국	0.948	0.934	0.963	0.947	0.932	0.963	0.945
세종	0.924	0.913	0.935	0.940	0.928	0.952	0.953

자료: 질병관리본부, 「2008-2015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97) 건강관련 삶의 질을 5가지 범주로 종합한 지표로 0~1점 사이에 분포

98) 여성가족부(2011). 2011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건강과 대안

99) 여성가족부,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14쪽, 통계적 정의

100) 통계청, KOSIS e-지방지표 : EQ-5D지표(시도/시/군/구)

101) 통계청, KOSIS e-지방지표 : EQ-5D지표(시도/시/군/구)

## ② 건강검진 수검률

- 건강검진 수검률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통계」를 활용하였고, 매년 전국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성별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률은 매년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세종시 전체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남성의 수검률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종시 여성은 2012년 74.8%, 2013년 73.7%, 2014년 75.8%, 2015년 75.3%로 매년 증가, 감소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세종시 건강검진 수검률<sup>102)</sup>**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여성	남성	합계	여성	남성	합계	여성	남성
전국	72.1	70.3	73.7	74.8	73.1	76.2	76.1	74.6	77.5
세종시	75.2	73.7	76.4	77.2	75.8	78.3	77.3	75.3	78.9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통계」.<sup>103)</sup>

## ③ 스트레스 인지율

-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 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 세종시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성별과 상관없이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전국평균에서는 여성의 스트레스가 많은 반면 세종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KOSIS의 2016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성별분리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종시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응답자 합계가 25.3%로 나타나 전년대비 6.6%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02) 수검률=건강검진수검인원/건강검진대상인원\*100.

103) 건강검진대상인원은 1차 수검자 기준임.

[표 4-22] 세종시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여성	남성	합계	여성	남성	합계	여성	남성
전국	24.4	26.0	22.5	26.5	28.6	24.4	25.5	27.3	23.5
세종시	33.6	32.9	34.4	28.1	27.4	28.8	31.9	31.2	32.6

자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 6) 안전

- 안전과 관련하여 세종시의 성평등지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청의 「사회조사」, 경찰청 「범죄분석」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과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했으나, 경찰청의 「범죄분석」은 현재 세종시를 구분하여 조사한 자료가 없어 경찰청의 「경찰청범죄통계」, 검찰청 「범죄분석통계」를 활용하여 세종시의 범죄발생지 건수를 분석하였다.

### ①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는 2년마다 실시되지만 세종시는 2016년 한차례 조사되었다. 2016년 세종시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전국평균보다 4.7% 높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녀의 차이는 전국평균의 차이보다 좁게 나타났다.

[표 4-23] 세종시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sup>104)</sup>

(단위: %, %p)

구분	2012년 <sup>105)</sup>				2014년				2016년			
	전체	여성	남성	남녀 차이	전체	여성	남성	남녀 차이	전체	여성	남성	남녀 차이
전국	13.8	11.4	16.2	4.8	9.5	7.4	11.7	4.3	13.2	10.6	15.9	5.3
세종시	-	-	-	-	-	-	-	-	17.9	15.3	20.4	5.1

주: 1) ‘매우 안전’ 과 ‘비교적 안전’ 의 합임. 2) 2008~2010년 15세 이상, 2012년 이후는 13세 이상. 3) 세종시의 ‘매우안전’ 이라고 응답한 여성과 남성의 상대표본오차가 신뢰도가 낮음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104) ‘매우 안전’ 과 ‘비교적 안전’ 의 합임.

105) 2012년 이후는 13세 이상.



②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 해당 주제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서 경찰청의 경찰청 범죄통계 ‘범죄발생지’와 검찰청 범죄분석통계의 ‘범죄발생지역’을 분석 하였다.
-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의 ‘범죄발생지’ 건수에서는 세종시가 2015년 46건에서 2016년도 58건으로 범죄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세종시 범죄발생지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전국	25,334	25,765
세종	46	58

자료: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KOSIS 재가공.

- 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서는 세종시의 강력범죄(흉악+폭력)사건이 2014년 388건, 2015년도 44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세종시 범죄발생지역

(단위: 건)

구분	범죄별	2014년	2015년
전국	범죄발생 총 건수	1,933,835	2,020,731
	강력범죄(흉악)	34,126	35,139
	강력범죄(폭력)	233,655	248,707
세종시	범죄발생 총 건수	3,717	3,897
	강력범죄(흉악)	92	75
	강력범죄(폭력)	296	372

자료: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KOSIS 재가공.

## 7) 가족

- 가족과 관련하여 세종시의 성평등지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6년 세종시 사회조사의 조사대상자 교육정도와 교육부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여 평균 교육년수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① 가사노동시간

-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세종시가 아직 조사되지 않고 있어, 생활시간조사의 20세 이상 인구의 취업여부별 평균시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 가사노동시간을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취업유무와 상관없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취업유무와 상관없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감소와 증가는 매우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26] 가사노동시간<sup>106)</sup>

(단위: 시간:분)

구분	2004년				2009년				2014년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국	2:38	0:32	4:56	0:57	2:36	0:37	4:44	1:06	2:30	0:41	4:33	1:08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분석.

②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서 셋째 아 이상 출생의 성비를 비교해보면 셋째 아 이상 출생은 여아보다 남아가 많이 출생하였고, 세종시의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여아 백명 당 남아의 수)는 2012년 146.0명, 2013년 103.9명, 2014년 116.9명, 2015년 120.3명으로 남아가 여아에 비해 많이 출생하였다.
- 그러나, 2016년도 세종시의 출생성비는 106.4명, 전국 출생성비는 107.4명으로 세종시의 셋째 아 이상의 출생 성비는 전국출생성비보다 여아가 많이 태어나고 있음을 나타냈다.

106) 가사시간=가정관리 시간 + 가족 보살피기 시간, 20세 이상. 요일평균

[표 4-27] 세종시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단위: 명, 여아 백명 당)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여아	남아	성비	여아	남아	성비	여아	남아	성비
전국	21,151	22,561	106.7	20,654	21,802	105.6	19,112	20,524	107.4
세종시	83	97	116.9	123	148	120.3	156	166	106.4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③ 가족관계 만족도

-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가족관계의 만족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관계에 ‘만족’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나, ‘만족’과 ‘보통’을 묶어 전국과 세종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국(여성 : 95.7%남성 : 96.1%)적으로는 남성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지만, 세종(여성 : 97.4%, 남성 : 95.9%)은 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가족관계의 ‘불만’ 응답자 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세종시의 남성이 가족관계 만족도에 있어 ‘불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28] 세종시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성별	2012년			2014년			2016년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전국	여성	54.2	41.0	4.8	53.8	41.5	4.7	54.7	41.0	4.4
	남성	58.2	37.9	3.9	56.6	39.6	3.9	58.2	37.9	3.7
세종시	여성	-	-	-	-	-	-	66.4	31.0	2.6
	남성	-	-	-	-	-	-	68.0	27.9	4.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여성가족부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

④ 육아휴직자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모성보소지급자현황(년)의 수치값은 총 3가지로 출산전후휴가수급자(년), 육아휴직수급자수(년), 육아기근

로단축수급자수(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세종시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세종시 육아휴직수급자수(년)자료를 성별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 전국적으로 육아휴직자는 매년 여성과 남성 모두 증가하였고, 남성의 비율도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육아휴직 남성의 비율은 2013년 2.8%, 2014년 3.6%, 2015년 4.6%, 2016년 6.3%로 증가 하였고, 세종시 육아휴직 남성의 비율은 2013년 1.2%, 2014년 3.2%, 2015년 5.7% 매년 증가하였으나 2016년 남성비율이 4.8%로 감소하였다.

**[표 4-29] 세종시 육아휴직자**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여성	남성	남성 비율	계	여성	남성	남성 비율	계	여성	남성	남성 비율
전국	169,952	163,751	6,201	3.6	193,894	184,987	8,907	4.6	211,516	198,106	13,410	6.3
세종시	434	14	420	3.2	580	547	33	5.7	704	670	34	4.8

주 : 1) 해당년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지급자수로 동일인이 해당년에 여러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한명으로 계산함, 2) (주의사항) 해당년도에 중복을 제거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순수 수급자수로 여러 년도의 육아휴직수급자수를 합하여 사용하면 안됨(수치가 크게 증가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고용보험시스템)」, 모성보호지급자현황(년).

## 8) 문화·정보

- 문화·정보와 관련하여 세종시의 성평등지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사회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여가시간의 성비, 여가만족도 성비, 인터넷 이용률 성비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 그러나 현재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세종시에 대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가시간의 성비는 전국에 대한 자료만을 작성하였다.

① 여가시간

- 여가시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전국조사에 대한 부분만 분석하였는데, 여가시간은 2009년과 2014년도의 비교에서 취업자와 비취업자, 여성과 남성 모두 여가시간이 줄어들었다.

[표 4-30] 여가시간<sup>107)</sup>

(단위: 시간:분)

구분	2009년						2014년					
	취업자			비취업자			취업자			비취업자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평균	여성	남성
전국	3:52	3:23	4:11	6:44	6:03	8:23	3:36	3:15	3:51	6:13	5:38	7:33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분석. 여성가족부,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② 여가 만족도

- 여가활용 만족도에 대한 자료는 원자료의 5점 리커트척도를 ‘매우 만족’ 과 ‘약간만족’ 을 합해서 ‘만족’ 으로, ‘보통’ 은 자료활용 하였으며, ‘약간불만족’ , ‘매우불만족’ 을 합해서 ‘불만족’ 으로 3점 리커트척도로 변경하여 분석하였다.
- 여가활용 만족도는 전국과 세종시 모두 여성보다 남성의 만족도가 높았고, 전국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세종시 여성의 ‘불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에 세종시 여성의 여가활용 만족도 ‘불만’ 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났다.

107) 20세 이상 인구 중 교제활동, 미디어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일반인 학습 등과 관련된 교제와 여가활동 시간에 대한 성비.

[표 4-31] 세종시 여가활용 만족도<sup>108)</sup>

(단위: %)

구분	성별	2013년			2015년			2017년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전국	여성	25.8	47.8	26.4	24.9	49.0	26.2	26.9	45.8	27.3
	남성	28.4	47.9	23.8	27.1	48.9	24.0	27.6	47.4	25.1
세종시	여성	-	-	-	32.7	46.0	21.3	31.2	43.4	25.4
	남성	-	-	-	33.5	44.9	21.6	34.8	44.7	20.6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③ 인터넷 이용률

- 인터넷이용실태분석을 위해 통계청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별 인터넷 이용률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지역과 성별의 인터넷 이용률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 인터넷 이용률은 지역과 성별에 상관없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세종시의 경우 2014년도 70.9%, 2015년은 81.5%, 2016년에는 9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이용률 증가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2016년에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표 4-32] 세종시 인터넷 이용률<sup>109)</sup>

(단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전국	83.6	79.8	87.3	85.1	81.9	88.4	88.3	85.6	91.0
세종시	70.9	-	-	81.5	78.5	84.3	91.0	-	-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내부자료, 여성가족부,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연구」, 통계청 KOSIS를 활용하여 2016년도 이용률 작성

108) 2011년 이후는 13세 이상 인구.

109) 2016년 자료는 KOSIS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의 성별이용률을 추출하여 작업하였고, 세종시의 2014년, 2016년도의 성별에 대한 이용률이 제공되어않아 지역별 이용률만을 작성함.

## 5장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방식

- 1절.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현황
- 2절.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대상과제  
선정 방식 조사





## 5장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방식

### 1절.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현황

#### 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주체

- 여성가족부의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서는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지침의 64쪽에서는 각 부처의 실무담당자가 대상사업을 선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특히 지침 140쪽의 분석평가책임관의 역할은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는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첫 번째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여성가족부의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운영 안내]에 따르면,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지원” 항목에서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한 대상정책 선정”을 역할 가운데 하나로 기술하고 있다.
-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한 첫 번째 과정인 ‘대상과제’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가 담당을 하고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지원하는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방식

- 지역의 각 센터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은 모두 달랐다. 선정 방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센터들은 지역의 총괄담당자, 컨설턴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등과 협의 및 역할관계에 따라 선정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의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서는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주체와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18년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하거나, ’ 17년 예산서 중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 하라고 기술하며,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주요한 기준을 “각 부처 실무담당자가 대상사업 선정 시 아래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표 5-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점검 포인트

선정기준	해당여부
<p>▶수혜집단에서 성별격차가 발생하는 사업</p> <p><input type="checkbox"/>정책(사업)의 대상집단을 성별로 구분할 수 있는 사업인가?</p> <p><input type="checkbox"/>정책(사업) 수혜 정동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가?</p>	<p><input type="checkbox"/> 예</p> <p><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업</p> <p><input type="checkbox"/>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가?</p> <p>-고용, 복지, 안전, 시설설치, 개선 사업</p> <p>*예술·문화활동 지원, 생활체육활성화, 폐기물 등 자원 재활용 사업, 혁신도시 및 뉴타운 건설사업, 신도시조성사업,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빈곤층 지원사업 등</p>	<p><input type="checkbox"/> 예</p> <p><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p>▶수혜대상 범위가 넓고 중요 정책(사업)</p> <p><input type="checkbox"/>기관의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p> <p><input type="checkbox"/>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p> <p><input type="checkbox"/>기관장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p>	<p><input type="checkbox"/> 예</p> <p><input type="checkbox"/> 아니오</p>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64쪽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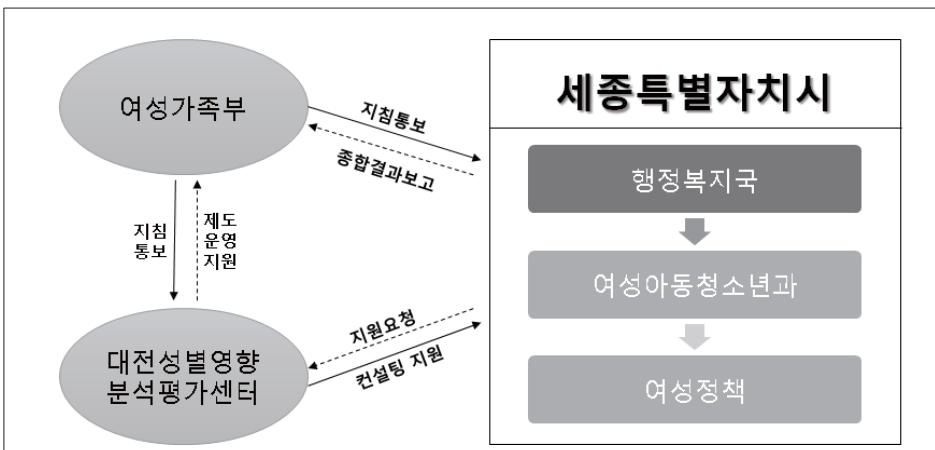
- 위의 내용을 볼 때, 여성가족부는 사업에 대한 대상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 ‘점검포인트’를 이용해 각 부처 실무담당자가 대상과제를 선정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 3.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 1) 세종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부재

-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정착을 지원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없다. 이런 이유로 2016년까지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하다가 2017년 대전세종연구원이 확대·개편되면서,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그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다.
-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지역센터가 변경되면서, 대상과제 선정 주체와 방식도 변화하게 되었다. 세종시의 성평등을 확산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세종시에 적합한 대상과제 선정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2)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추진



[그림 5-1]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운영체계

#### 4. 2017년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방식

- 2016년까지 세종시는 실무담당자와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가 공동으로 대상과제를 선정했다.
- 2017년에는 대상과제 선정에 있어서, 선정 근거와 목표, 객관성을 확보, 그리고 대전시와의 연결성을 위해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체 크리스트’를 만들었다.
- 체크리스트는 연구진 회의 및 자문을 거쳐 구성했다. 특히 세종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를 염두에 두고 ‘아동, 돌봄, 안전, 여성일자리’ 등을 고려항목에 삽입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 사업명 / 단위사업_세부사업명 :					
◆ 부서명 :					
◆ 성 명 :			◆ 전화번호 :		
선정 내용			세부 사업1	세부 사업2	...
			( )	( )	
제 외 의 경 우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사는 사업인가?				
	2. 일반수용비만 있는 사업인가?(홍보물, 현수막 등)				
	3. 차년도 사업 계획이 없는 사업인가?(일몰이면 O, 아니면 X)				
고 려	1. 아동에 관련한 사업인가?				

대 상 의 경 우	2.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사업인가?			
	3. 안전과 관련한 사업인가? (안전의식 개선교육, 홍보, 안전시설 설치, 주거환경 개선 등)			
	4. 일자리 창출 및 지원과 관련한 사업인가? (청년, 여성, 노인 등)			
	5. 전년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했던 사업인가?			
	6. 기관의 중장기 계획사업인가?			
	7. 단체장의 공약사업인가?			
	8. 세종시가 주관하는 주요 축제사업인가?			

[그림 5-2] 2017년 세종시 체크리스트

## 5. 대전시의 사례

- 대전시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마련된 체크리스트는 매년 컨설턴트 및 실무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거쳐 수정·보완되고 있다.
- 대전시의 경우, 대전시 본청과 5개 자치구(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중구)별로 2016년에 수립된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게 대상과제를 선정하는데, 2017년에는 2016년 체크리스트를 좀 더 보완했다.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본청)	
사업명	단위사업명 :
부서명:	
성명/전화번호:	

선정 내용		세부 사업 1 ( )	세부 사업 2 ( )	...	
제외의 경우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	
	2. 일반수용비(물품구입비, 간행물비 등)만 있는 사업인가? ※ 사업비(위원회 참석비 등)로 활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	
	3. 차년도 사업 계획이 없는 사업인가?(일몰이면 o, 아니면 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	
고려 대상의 경우	1. 2017년 대전광역시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	
	대전광역시 분청성평등 목표 ("1번" 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택1 하여 표기)	1-1.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
		1-2. 일자리 창출 및 지원과 관련한 사업인가? (청년, 여성, 노인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
		1-3. 안전한 문화 만들기와 관련한 사업인가? (안전의식 개선 교육, 홍보, 캠페인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
		1-4. 안전한 도시 만들기와 관련한 사업인가? (안전시설 설치, 주거환경 개선, 자율 방법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
	2. 세부사업의 예산이 5천 만원 이상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	
	3. 당해연도 신규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	
	4. 기관의 중장기 계획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	
	5. 단체장의 공약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	
	6. 대전시가 주관하는 주요 축제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	
7.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1회 이상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였던 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		
8.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1회 이상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였던 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 오	...		

[그림 5-3] 2017년 대전시 분청 체크리스트

○ 2017년 대전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시 기	진 행	비 고	
컨설턴트 위촉식 및 교육	3월 10일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위촉식 및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실시	
총괄담당자 회의	3월 23일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참석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총괄담당자)	2017년 주요 업무 협의	
대상 과제(안) 확정	4월	대전성 별영향 분석평 가센터 · 여성정 책담당	대상과제 체크리스트 배포	사업담당자가 직접체크
			체크리스트 취합	잠정적 대상과제 목록 작성
			목록 배포 및 대상과제(안) 확정	실국별 내부 협의
대상과제 확정	5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작성담당자 교육	5월	여성정책담당 (교육대상 : 대상과제 담당자)	총 2회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법)	
분석평가서 작성	6월	대상 과제 담당자	대상과제 담당자 분석평가서 초안 저장	GIA시스템에 작성
			서면컨설팅 대면컨설팅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담당컨설턴트
			분석평가서 보완 및 GIA 컨설팅 요청	GIA 컨설팅 요청 필수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확정	6월	성인지예산 총괄담당자	기금 포함	

성인지 예산서 작성	7월	대상 과제 담당자	대상과제 담당자 성인지예산서 초안 작성	e-호조에 작성
			서면컨설팅 대면컨설팅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담당컨설턴트
			예산서 수정 및 작성완료	e-호조 시스템에 최종안 작성
검토의견서 작성	9월~ 10월	여성정책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담당컨설턴트가 GIA를 통한 전문가 검토의견 제시
반영결과서 제출	10월~ 11월	대상과제 담당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담당컨설턴트가 GIA를 통한 전문가 검토의견 제시
우수사례 발표대회	11월 (예정)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 석평가 워크숍	12월 (예정)	여성가족부		

[그림 5-4] 2017년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추진 일정



## 2절.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대상과제 선정 방식 조사

### 1. 조사 개요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부재한 세종시의 경우, 제도 수행의 전 과정에서 센터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지원과 자문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 또한 지원기관이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바뀌면서 제도 수행과정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 타 16개 시·도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을 구축 및 정착하고 있는데 비해 세종시는 지역에 적합한 체계를 찾지 못한 한계가 있다.
-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대상과제의 주체와 선정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들 사이에 잦은 이견이 있다. 한편으로는 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대상과제 선정 방식에 대한 논란의 계속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세종시에 적절한 대상과제 선정방식을 제안하기 위해, 16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의 전담연구원을 대상으로 대상과제 선정 방식과 만족도,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개방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구글 설문을 활용하였다.

[표 5-2]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전국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표집 방법	여성가족부 지정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연구원께 E-mail 발송하여 회신 받음
조사방법	구글 설문을 활용 <a href="https://goo.gl/forms/fQZ6Ufj6AangZnLH3">https://goo.gl/forms/fQZ6Ufj6AangZnLH3</a>
조사기간	2017년 5월 23일 ~5월 30일 까지

- 수집된 자료는 편집과 코딩화, 클리닝 과정을 거쳐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으로 통계처리하였다.
- 수집된 자료의 전체 16개 센터는 통계를 분석하기에 매우 적은 사례이지만, 전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체적인 의견 수렴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조사 결과

#### 1) 조사 참여

- 지역은 아래 표에 나타나있듯이,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총 16개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가 참여했다.

[표 5-3] 설문조사 참여센터

(단위: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구 분	빈도	퍼센트
강원	1	6.3	울산	1	6.3
경기	1	6.3	인천	1	6.3
경남	1	6.3	전남	1	6.3
경북	1	6.3	전북	1	6.3
광주	1	6.3	제주	1	6.3
대구	1	6.3	충남	1	6.3
대전	1	6.3	충북	1	6.3
부산	1	6.3	전체	16	100.0
서울	1	6.3			

#### 2) 대상과제 선정방식

- 각 지역센터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대상과제 선정방식을 물었다. 선정방식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특정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각 센터별로 선정방식은 상이했다.
- 또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경우, 선정방식이 센터별로 차이가 커서 유형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선정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4] 지역센터 대상과제 선정방식

지역	선정방식
강원	-실무담당자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일차 선정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사전 컨설팅, 위원회 심의로 진행

경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와 기관담당자가 선정 -실무담당자가 각 사업담당자로부터 미리 신청을 받기도 하고, 컨설턴트와 협의 후 선정하기도 함
경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선정
경북	-실무담당자, 컨설턴트
광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선정
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가 선정
대전	-체크리스트 사용 -체크리스트 이용 선정-->실무담당자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회의 -->각 실과 선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최종 승인
부산	-체크리스트 사용 (체크리스트는 타 지역의 체크리스트와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상황에 맞게 재가공하여 사용)
서울	-총괄담당자 1차 추천 - 센터에서 2차 추천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울산	-자치구 실무담당자가 선정
인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가 선정
전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선정
전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가 선정
제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 실무담당자
충남	-실무담당자와 센터 공동 선정
충북	-체크리스트 사용 -(체크리스트는 타 지역의 체크리스트와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상황에 맞게 재가공하여 사용)

○ 주체별로 보면, 대상과제 선정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혹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그리고 지역의 실무담당자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컨설턴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실무담당자가 함께 어떤 방식으로든 협력하여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 (1) 대상과제 선정방식 : 체크리스트 사용(대전, 부산, 충북)

○ 대상과제 선정에서, 13개 기관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3개 기관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과 부산,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대상과제를 1차로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자체적으로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확인하며, 체크리스트를 실무담당자가 수합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보내준다. 센터는 체크리스트의 점수화를 통해 리스트를 만든 다음 실무담당자와 센터가 함께 예산서를 보며 적합한 대상과제를 다시 논의를 한 후, 각 실과에 대상과제로 선택된 사업리스트를 보낸다. 이후 각 실과에서는 사업리스트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골라 실무담당자와 성별센터에 보내고 선별된 대상과제는 최종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물론 각 자치구는 사정에 따라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센터는 충북과 부산도 있다. 충북과 부산은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대상과제를 선정하는데, 체크리스트는 센터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다.
-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3 기관의 업무 효율성, 선정방식의 객관성, 그리고 업무협조 수준의 효과성은 대체로 낮았다. 그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업무강도가 높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도 담당공무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즉 객관성을 위해 고안된 체크리스트가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2) 대상과제 선정방식 :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경남, 광주, 전남)**

- 경남과 광주, 전남은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3) 대상과제 선정방식 :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대구, 인천, 전북)**

- 대구와 인천, 전북은 지역의 컨설턴트들이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세기관은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협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지만, 대상과제 선정의 객관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4) 대상과제 선정방식 : 실무담당자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강원, 서울)**

- 강원도와 서울의 경우, 실무담당자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 강원도와 서울의 경우, 업무효율성과 업무협조, 그리고 대상과제 선정의 객관성의 만족도에 중간 점수를 주고 있다.

**(5) 대상과제 선정방식 : 실무담당자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경기, 경북)**

- 경기와 경북은 실무담당자와 컨설턴트가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경기의 경우 업무 효율성과 대상과제 선정의 객관성, 업무협조 부분에서 만족도가 낮은 반면에, 경북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6) 대상과제 선정방식 : 실무담당자(울산)**

- 실무담당자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울산의 경우,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협조, 그리고 대상과제 선정의 객관성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7) 대상과제 선정방식 : 실무담당자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제주)**

- 제주는 실무담당자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그리고 컨설턴트가 함께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세부야의 만족도는 중간으로 조사됐다.

**3) 대상과제 선정방식의 만족도**

- 대상과제 선정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각각의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센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상과제 선정방식의 만족도와 객관성 등을 측정해서, 이를 통해 세종시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 현재 대상과제 선정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0점(매우불만족)~5점(매우만족)으로 6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업무의 효과성, 대상과제 선정의

객관성, 업무협조(공무원, 컨설턴츠 등)를 위한 효과성 총 3가지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 3가지 만족도 질문에 0점(매우불만족)에 대한 치수가 없어, 1점을 ‘매우불만족’으로 바꾸어 제시하도록 하였고,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매우 비효율적’, ‘매우 효율적’으로, 대상과제 선정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매우 비객관성’, ‘매우 객관성’으로, 업무협조(공무원, 컨설턴츠 등)에 대해서는 ‘매우 비효과성’, ‘매우 효과성’으로 분석하였다.
- 대상과제 선정방법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는 매우 효율적이 3명(18.8%), 효율적이 5명 (31.3%), 보통이 4명(25%), 비효율적 3명(18.8%), 그리고 매우 비효율적이 1명 (6.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명(50.1%)이 ‘효율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5-5] 대상과제 선정방법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

(단위: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매우 비효율적	1	6.3
비효율적	3	18.8
보통	4	25.0
효율적	5	31.3
매우 효율적	3	18.8
전체	16	100.0

- 대상과제 선정방법에 대한 객관성의 총 응답수는 16명으로 ‘매우 객관성’이 4명 (25%), ‘객관성’이 5명 (31.3%), ‘보통’ 5명 (31.3%), ‘비객관성’이 1명 (6.3%), 그리고 ‘매우 비객관성’도 1명 (6.3%)로 나타났다. 표를 보면 보통을 기준으로 ‘객관성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9명, 약 56.3%로 나타난다.
- 그러나 대상과제 선정방식이 센터별로 다르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척도는 유효하지 않다. 다만 센터별로 자기 방식에 대한 효율성을 직접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차선택으로 이 방식을 선택했다.



- 즉 질문에서 연구진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각 센터들이 취하는 대상 과제 선정방식의 전체적인 만족도와 효율성, 객관성을 볼 수 있는 정도이다.

**[표 5-6] 대상과제 선정방법의 객관성**

(단위: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매우 비객관성	1	6.3
비객관성	1	6.3
보통	5	31.3
객관성	5	31.3
매우 객관성	4	25.0
전체	16	100.0

- 대상과제 선정방법이 업무협조를 위한 효과성을 살펴보면 총 응답자는 16명이다. ‘매우 효과성이 있다’ 는 7명 (43.8%), ‘효과성’ 은 4명 (25%), ‘보통’ 은 2명 (12.5%), ‘비효과성’ 은 1명 (6.3%) 그리고 ‘매우 비효과성’ 은 2명 (12.5%) 결과가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중 11명 (68.8%)가 업무협조를 위한 효과성 면에서 ‘효과성이 있다’ 라고 응답하였다.

**[표 5-7] 대상과제 선정방법이 업무협조를 위한 효과성**

(단위: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매우 비효과성	2	12.5
비효과성	1	6.3
보통	2	12.5
효과성	4	25.0
매우 효과성	7	43.8
전체	16	100.0

#### 4) 대상과제 선정방식 변경

- 대상과제 선정방식의 변경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방식을 유지한다고 응답한 센터가 10곳이고, 나머지 6곳이 변경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 그러나 이런 응답이 선정방식의 효율성이나 객관성, 만족도를 증가하지는 않는다. 선정방식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업무 부담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을 수 있다.

**[표 5-8] 대상과제 선정방식 변경여부**

(단위: 명, %)

구 분	빈도	퍼센트
변경함	6	37.5
변경하지 않음	10	62.5
전체	16	100.0

### 4. 각 지역 센터별 대상과제 선정 방식 분석

#### 1) 지역별 현재 대상과제 선정 방식 도입 이유와 선정기준

**[표 5-9] 대상과제 선정방식 도입 이유와 선정기준**

지역	현행 선정 방식 도입이유	선정기준
강원	-실효성 있는 대상과제 선정 -선정된 과제에 대한 사업담당자(혹은 부서)의 수용도 제고	-1. 지침 2. 인적, 계속, 자체 사업 중심
경기	-업무담당자 및 기관담당자의 성별 영향분석평가 업무의 효율성 증대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의 실효성 증대	-경기도는 매년 공통과제를 선정하여 공통과제 및 자율과제가 포함되도록 함 -그 외에 예산이 큰 사업을 위주로 선정 함
경남	-대상과제 선정기준을 통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파악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성별요구도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사업

경북	-신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선정 고려	-건설턴트와 기관담당자, 센터담당자 모두 개입됨
광주	-대상과제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해마다 반복되었기 때문 -과제선정의 타당성 확보	-사업조서, 사업예산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국비, 시비, 구비 등을 고려하여 대상과제를 선정
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추진 -실무담당자의 요청	-당해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담당 건설턴트가 대상과제(안)을 선정 -선정기준은 성별 관련성이 많고 실질적인 정책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
대전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대상과제 선정의 객관성 확보	-체크리스트 사용으로 해당없음
부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에 맞는 대상사업 선정	-체크리스트 사용으로 해당없음
서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과성을 증대 -대상과제 적절성 검토	-자치구청괄(부서추천, 센터제시 기준 이용: 신규과제, 중점분야, 성인지예산서 연계 등), -센터(분석평가 가능성과 효과성) -위원회(선정 기준 등 종합 검토)
울산	-사업담당자(공무원) 반발을 최소화 -업무 담당자, 실무담당자, 건설턴트가 수용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함	-기관 담당자가 1차로 대상과제를 선정 -다음 센터와 건설턴트가 각각 2차 선정을 한 후 취합하여 최종 확정
인천	-특별히 도입한 선정방식은 없음. - 거의 대부분의 군구 센터 컨설팅을 거쳐 선정함	-각 자치구 실과가 1차 선정 -센터 컨설팅턴트가 컨설팅함. 기본적인 선정 기준은 분석평가지침에 의함
전남	-실효성 있는 대상과제 선정을 위해	-인적대상 및 성별관련성 높은 예산사업
전북	-실무담당자와 업무담당자와의 업무 효율화 증대	-전년도 대상과제 검토 -타시군 비교 -도 중점사업 등
제주	-민관협력 -성별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부재	-공약사업 및 특화사업 -(분야별) 성별 격차 크거나 영향력 큰 사업 -예산 1천 만원 이상의 사업
충남	-기관담당자의 선정에 대한 어려움 해소 -제도의 효과적인 추진과 성과 도출	-성평등지표 -사업의 중요도(중점사업, 지속사업)
충북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체크리스트 사용으로 해당없음

## 2) 지역별 현재 과제선정 방식의 장·단점

[표 5-10] 지역별 현재 과제선정 방식의 장·단점

지역	현재 선정 방식	
	장점	단점
강원	-센터 (컨설턴트)가 대상과제 선정에 참여하고 선정 사유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하므로 분석평가서 작성 및 정책개선안 마련이 보다 쉬울 것으로 보임	-센터 (컨설턴트)와 기관담당자의 협력적 사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음
경기	-일대일 컨설팅 및 대상과제 선정 사유작성 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분이 있음	-딱히 단점은 없다. 좋은 방법인데 컨설턴트별 격차가 있고 너무 많은 시군과, 단위사업이 많은 시군들의 경우 과제 선정이 어렵다는 점
경남	-대상과제 선정기준에 따라 각 시도별로 일관성 있는 선정방식이 이루어짐	-각 시도별로 비슷한 대상과제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음
경북	-컨설턴트, 기관담당자, 센터담당자의 의견 골고루 수렴됨	-시간이 오래 걸림
광주	-사업 조서, 사업 예산서, 사업 계획서를 전담연구원이 검토하여 1차 리스트를 만들고, 센터장 검토를 거쳐 각 기관담당자에게 전달되므로(전문가의 2번 검토) 선정 근거의 타당한 명분이 생겨 공무원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담연구원의 업무과다
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단계별의 추진의 효율성 증대	-사업담당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
대전	-사업담당자가 직접 체크함으로써 대상과제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고, 점수화를 통해 객관성을 높임.	-업무가 복잡하고 센터 전문연구원의 업무 과중
부산	-예산서에 제시된 모든 사업을 전문가-담당자와 함께 선정함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됨
서울	-빠른 시간내에 기본 내용 검토 : 담당공무원에게 인지 효과	-세부내용 점검 어려움 -컨설턴트 참여 어려움
울산	-업무담당자가 본인의 사업이 선정된 이유를 알 수 있어 진행이 수월함	-신규 사업 발굴이 어려움.

인 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보다 더 전문가의 입장을 반영하여 선정한다는 장점이 있음	-위원회 등 해당 지역 시민들의 선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취약
전 남	-성별평가 관련성이 높은 대상과제 선정	-사업담당자 만큼 사업운영 및 특성과약이 어려움
전 북	-대상과제 선정 근거를 컨설팅 함으로써, 대상과제 선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세출예산단위사업명세서를 보고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담당자와 부서조율하면서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제 주	-센터위주	-공무원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모호
충 남	-기관담당자와 사업담당자의 성별 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	-성별사업과의 연계성 및 이행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움
충 북	-대면 및 서면 컨설팅에 저항감 감소	-선정 기간이 오래 걸림

## 5.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방식에 대한 분석<sup>110)</sup>

- 대상과제 선정방식 체크리스트 사용유무에 따른 만족도 차이와 대상과제 선정방식 변경의향에 따른 대상과제 선정방식의 만족도, 대상과제 선정방식의 만족도 항목간의 상관관계, 대상과제 선정방식 체크리스트 사용유무에 따른 대상과제 선정방식 변경 의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 분석을 위해서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체계화를 위해 실무담당자, 컨설턴트,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주관적 개입이 아니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사용을 중심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대상과제 선정의 객관성, 그리고 업무협조의 효과성을 분석해 보았다.
- 대상과제 선정 방식이 16개 센터별로 다른 점, 응답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점, 응답자가 대상과제 선정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응답자가 선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점 등은 이 조사의 한계로 작용한다.

110) 보고서의 5.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방식에 대한 분석 내용은 정책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에 활용한 분석기법 및 해석을 자세히 기입하였음.

## 1) 대상과제 선정방식 체크리스트 사용 유무에 따른 만족도 차이

- 대상과제 선정방식 체크리스트 사용 유무 따라 만족도(6점, 리커트척도), 업무의 효율성, 대상과제 선정의 객관성, 업무협조를 위한 효과성에는 우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동일한 표본의 두 집단을 대상으로 변수 값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여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 대상과제 선정방식 체크리스트 사용 유무 따라 만족도(6점, 리커트척도), 업무의 효율성, 대상과제 선정의 객관성, 업무협조를 위한 효과성에 대해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위해서 독립표본 t-test를 하였다.
- 총 16개 기관이 응답하였는데 체크리스트를 사용한 기관은 3곳, 그렇지 않은 기관은 13곳이다.
- 체크리스트를 사용한 3개 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답변은 3점, 그렇지 않은 기관은 3.46점으로 나타났다.
- 체크리스트를 사용한 3개 기관의 ‘선정의 객관성’의 평균은 3점, 사용하지 않은 기관은 3.77점으로 나타났다.
- 체크리스트를 사용한 기관의 ‘업무협조 효과성’은 3.67점, 그렇지 않은 기관은 3.85점으로 나타난다.

[표 5-11] 대상과제 선정방식 체크리스트 사용 유무에 따른 만족도 차이1

(단위: 명, 점)

체크사용여부		N	평균	표준편차
업무의 효율성	사용함	3	3.00	1.00
	사용하지 않음	13	3.46	1.27
선정의 객관성	사용함	3	3.00	2.00
	사용하지 않음	13	3.77	0.93
협조 효과성	사용함	3	3.67	2.31
	사용하지 않음	13	3.85	1.28

- 하지만 체크리스트 유무의 응답자의 수가 각각 3명과 13명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3명이 응답한 3점과 13명의 응답한 3.46점을 동일

하게 보는 것은 분석에 대한 문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응답자의 수가 다른데 이에 따른 결과가 3.00과 3.46이라고 이 차이가 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집단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독립표본 t-test를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표 5-12] 대상과제 선정방식 체크리스트 사용 유무에 따른 만족도 차이<sup>2</sup>**

구분	대상과제선정방식의 만족도					
	업무의 효율성		대상과제 선정의 객관성		업무협조를 위한 효과성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사용함(N:3)	3.00	1.00	3.00	2.00	3.67	2.31
사용하지 않음(N:13)	3.46	1.27	3.77	0.93	3.85	1.28
t-value (p)	-0.683 (0.535)		-0.650 (0.577)		-0.130 (0.907)	

\* $p < 0.05$ , \*\* $p < 0.01$ , \*\*\* $p < 0.001$

- t-value를 통해서 각각의 평균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 t-value 옆에 있는 (p)를 보고 유의미한지 아닌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업무의 효율성 (0.535), 대상과제 선정의 객관성 (0.577), 효과성 (0.907)으로 기준이 되는 (p)의 숫자 0.05, 0.01, 0.001보다 큰 것<sup>111)</sup>으로 나타났다. 즉, 체크리스트 사용 여부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대상과제 선정의 객관성, 업무협조를 위한 효과성에는 차이가 없다.

## 2) 대상과제 선정방식 변경의향에 따른 대상과제 선정방식의 만족도

- 대상과제 선정방식에 대한 변경의향에 따른 집단간 만족도의 차이 (업무 효율, 선정의 객관성, 업무협조효과성)를 보는 것이다. 선정방식 변경을 원하는 응답자는 6명, 그렇지 않은 응답자는 10명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가?’ 를 보기위해서 독립표본 t-test를 하였다.

111) 반대로 0.05보다 숫자들이 작게 나왔다면 그 뜻은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13] 대상과제 선정방식 변경 의향에 따른 만족도 차이 1

(단위: 명, 점)

선정방식 변경의향		N	평균	표준편차
업무의 효율성	변경함	6	4.17	0.75
	변경하지 않음	10	2.90	1.20
선정의 객관성	변경함	6	4.00	0.89
	변경하지 않음	10	3.40	1.26
업무협조 효과성	변경함	6	4.50	0.84
	변경하지 않음	10	3.40	1.58

- 대상과제 선정방식 변경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업무의 효율성, 대상과제 선정 객관성, 협조 효과성 측면에서 만족도 평균이 각각 4.17, 4.00, 4.50으로 그렇지 않은 응답자 2.90, 3.40, 3.4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그러나 각 집단의 응답자가 6명과 10명으로 동일한 숫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p)값을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표 5-14] 대상과제 선정방식 변경 유무에 따른 만족도 차이 2

구분	대상과제 선정방식의 만족도					
	업무의 효율성		대상과제 선정의 객관성		업무협조를 위한 효과성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변경함	4.17	0.75	4.00	0.89	4.50	0.84
변경하지 않음	2.90	1.20	3.40	1.26	3.40	1.58
t-value (p)	2.598 (0.021)*		1.108 (0.287)		1.819 (0.090)	

\*  $p < 0.05$ , \*\*  $p < 0.01$ , \*\*\*  $p < 0.001$

- 대상과제 선정방식 변경의향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의 차이는 평균이 4.17과 2.90으로 변경을 원하는 응답자가 느끼는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정방식 변경의향에 따른 객관성과 효과성 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 (p) 값 앞에 있는 t-value는 두 집단 평균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값이 클수록 (p)가 0.05보다 작아질 수 있다. 업무의 효율성은 2.598로 선정의 객관성의 t-value 1.108, 협조 효과성은 1.819으로 차이가 보인다. 효율성의 숫자가 다른 측면의 숫자들보다 조금 높은데 이는 응답자 집단의 평균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t-value 숫자가 클수록 (p) 값이 0.05보다 작아지며 유의미한 통계결과를 얻을 수 있다.<sup>112)</sup>
- 즉, 대상과제 선정방식 변경의향에 여부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에는 차이가 있고 대상과제 선정의 객관성, 업무협조를 위한 효과성에는 차이가 없다. 대상과제 선정방식 변경의향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평균이 더 높았다.

### 3) 대상과제 선정방식 만족도 항목 간의 상관관계

- 상관분석은 각 만족도 항목 간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관성은 파악할 수 있지만 인과분석은 불가능하다. 즉, ‘a와 b는 상관관계 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a에 따른 b다. 혹은 b에 따른 a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다.
- 업무의 효율성과 선정의 객관성은 ‘\*’ 별 하나로 나타났으며 이는 0.05보다 작다는 것을 뜻한다. 약 0.591 정도의 상관계수를 갖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과 객관성이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 객관성과 효과성의 상관계수는 0.821이며 ‘\*\*\*’ 별 두 개로 나타났으며 두 항목간의 0.821의 상관계수로 높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객관성과 효과성의 상관계수도 0.688로 ‘\*\*\*’ 별이 두 개인데 이 또한 상관관계가 높다. 그리고 (p) 값이 0.01로 나타났다.
- 만족도 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업무의 효율성, 선정의 객관성, 협조 효과성 간의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12) 유의미한 통계결과가 나온다 = 귀무가설이 채택이 되지 않는다 = ‘a에 따른 b에는 차이가 있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15] 대상과제 선정방식 만족도 항목 간의 상관관계

	업무의 효율성	선정의 객관성	협조 효과성
업무의 효율성	1		
선정의 객관성	0.591*	1	
협조 효과성	0.821**	0.688**	1

\* $p < 0.05$ , \*\* $p < 0.01$ , \*\*\* $p < 0.001$

#### 4) 체크리스트 사용 유무에 따른 대상과제 선정방식 변경의향 차이

-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변수간의 관계를 설명, 체크리스트 사용여부 1. 사용함, 2 사용하지 않음. 그리고 변경의향 1. 변경함, 2. 하지 않음을 보았을 때 응답자의 숫자가 높아지는 것과 응답은 상관이 없다.
- ‘체크리스트를 사용했는데 대상과제 선정방식 변경하겠다’ 는 1명 (6.3%), ‘체크리스트 사용하였으나 대상과제 변경하지 않음’ 은 2명 (12.5%), ‘체크리스트 사용하지 않았고 변경의향 있음’ 은 5명 (31.3%), 그리고 ‘체크리스트 사용하지 않았고, 변경하지도 않겠다’ 는 8명(50%)로 나타났다.
- 4집단 간의 차이, 관계에 대해서 교차분석, x2를 분석해보면, x2 값은 0.027, p-value는 0.869로 0.05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즉, 집단 간의 차이는 없다. 체크리스트를 사용여부에 따른 대상과제 선정방식의 변경여부에는 차이가 없다.
- 체크리스트를 사용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대상과제 선정방식 변경의향에는 아무런 차이를 가지고 오지 못했고 관련이 없다. 즉, 체크리스트 사용 여부에 따른 대상과제 선정방식 변경의향에는 차이가 없다.

[표 5-16] 체크리스트 사용 유무에 따른 대상과제 선정방식 변경의향 차이

체크리스트	대상과제 선정방식 변경의향		계	x <sup>2</sup>
	변경함(%)	변경하지 않음(%)		
사용함	1(6.3)	2(12.5)	3(18.8)	0.027(0.869)
사용하지 않음	5(31.3)	8(50.0)	13(81.3)	

\* $p < 0.05$ , \*\* $p < 0.01$ , \*\*\* $p < 0.001$

## 6장

### 정책제언

- 1절. 2017년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총평
- 2절.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언



## 6장 정책제언

### 1절. 2017년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총평

#### 1. 세종시 성별 영향분석평가제도의 진행과정

- 2016년 10월 대전세종연구원의 개원과 함께 이전에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진행해 왔던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2017년부터는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담당하게 되었다.
- 2017년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본격적인 업무진행에 앞서,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및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담당자간의 업무회의를 통해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전임센터와 실무담당자들과의 회의에서 도출된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점은 ‘1) 제도의 체계화와 2)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강화 3) 성인지 교육 확대’ 라는 3가지로 도출되었다.
-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제도의 체계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으며, 진행과정의 큰 흐름은 대상과제 선정방식과 컨설턴트 선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일정 규정으로 하였다.

## 1)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방식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은 체크리스트 사용을 우선시했다. 제도의 체계화, 특히 대상과제 선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대응과 선정과정의 객관성 확보, 적정한 대상과제라는 측면에서 체크리스트를 이용했다.
- 세종시 담당 공무원들이 각 과제별로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사업 내용을 확인한 다음 직접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 특히,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라는 세종시의 역점과제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해 체크리스트의 고려대상에 아동, 돌봄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선정했다.

## 2)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선정

-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컨설턴트 위촉에 있어서,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젠더전문가 및 안전과 일자리 등 특정분야의 컨설턴트를 새로 위촉하여 교육하는 것은 시간여건상 적절하지 않았다. 대전시의 컨설턴트 가운데,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를 위주로 세종시 컨설턴트를 총 6명(법령 1명 포함) 선정했다.

## 3) 2017년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일정

-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2017년 일정을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 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6-1] 2017년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일정**

구 분	시 기	진 행	비 고
전문가 회의	2월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대전(세종)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컨설턴트 위촉식 및 교육	3월	대전(세종)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세종시 법령담당(1명) 세종시 사업담당(5명)	
총괄담당자 회의	4월	대전(세종)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2017년 주요 업무 협의	
전국의 대상과제 선정방식 조사	5월	대전(세종)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전국 16개 성별센터의 대상과제 선정방식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2016년 종합분석 보고서 작성	6월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2016년에 작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분석 및 우수사례 검토	
성주류화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한 콜로키움	7월	대전(세종)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협의세종시의원, 컨설턴트, 실무담당자 등	
대상 과제(안) 확정	8월~ 9월	대전(세 종)성별 영향분석 평가센터 · 여성정책 담당	대상과제 체크리스트 배포	사업담당자가 직접체크
			체크리스트 취합	잠정적 대상과제 목록 작성
			목록 배포 및 대상과제(안) 확정	실국별 내부 협의
사업담당자 교육	10월	여성정책담당 (교육대상 : 대상과제 담당자)	총 2회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분석평가서 작성법)	
분석평가서 작성	10월 ~ 12월	사업 담당자	대상과제 담당자 분석평가서 초안 저장	GIA시스템에 작성
			서면컨설팅 대면컨설팅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 담당컨설턴트
			분석평가서 보완 및 GIA 컨설팅 요청	GIA 컨설팅 요청 필수

검토의견서 작성	11월 ~ 12월	여성정책담당	GIA를 통한 전문가 검토의견 제시
반영결과서 제출	11월 ~ 12월	사업담당자	GIA를 통한 전문가 검토의견 제시

- 2월부터 4월까지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담당자와 2017년도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진행 일정 및 대상과제 선정방식, 컨설팅트 위촉, 그리고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있어서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 5월에는 세종시에 적합한 대상과제 선정방식을 확정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대상으로 ‘대상과제 선정방식 과 효율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 6월에는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대상과제선정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했다.
- 7월에는 5월에 진행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세종시 대상과제 선정 방식에 대한 전문가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 8월에는 2017년 세종시 사업대상과제 선정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체크리스트를 배포->사업담당자의 체크리스트 작성-->체크리스트 점수화->1차 대상과제 선정->내부연구진 대상과제 재선정->실국별 내부 협의’라는 단계를 거쳐 최종 대상과제를 선정했다.
- 이 과정에서 세종시 대상과제 선정 근거에 대한 공무원들의 요구가 많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사업담당자들의 이의신청을 수렴하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 수렴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내부회의를 진행하여 대상과제 선정 이유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상과제 작성자의 이해를 높여나갔다.
- 대상과제를 최종 확정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구성되었으나, 컨



설팅과 위원회 개최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위원회는 개최되지 못했다.

- 10월 12일, 13일(2일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 교육 이후, 대상과제에 대한 서면컨설팅이 이뤄졌고, 10월 26일과 27일 대면 컨설팅을 진행했다.

## 2. 2017년도 세종시 성별 영향분석평가 과정의 어려움

- 2017년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서면과 대면 컨설팅에 참여한 6명의 컨설턴트의 의견을 수렴했다.

### 1) 담당부서와 실무담당자의 협조

- 전반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부서와 사업대상 공무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았다. 이런 이유로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컨설턴트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컨설턴트 1).
- 총괄부서와 실무담당자의 협조와 전문성이 자체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세종시의 총괄부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컨설턴트 2).
- 여성아동청소년과가 세종시의 성평등 정책이나 성주류화를 주도하는 추진의지와 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의문이 존재한다(컨설턴트 3).
- 타 시군의 경우 부서 관련 공무원 교육이나 행사 등에 부서장이나 팀

장 등이 참석하여 타부서의 업무협조를 유도하고 권장하는 것으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관련 교육, 컨설팅시 부서장 및 팀장 등의 참여가 소극적인 것으로 보아 기관 자체의 관심도나 추진의지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타부서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컨설턴트 4).

-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부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시에 실무담당자 자리를 비우거나, 타부서 공무원과 의견일치를 보지 못할 때 같이 참여하여 협조를 하는 등 컨설팅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타지자체의 경우 실무담당자가 모두 준비를 하고, 컨설턴트와 함께 각 과제에 대해 함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컨설턴트-실무담당자-사업담당자 4명이 한 과제에 대해 같이 논의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다(컨설턴트 5).
-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 성평등정책 추진에 관심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도 실무담당자들의 협조나 추진 의지가 높은 편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음에도 상대적으로 부서나 담당자들의 관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컨설턴트 6).

## 2) 사업담당자들의 젠더 관점

- 대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받는 사업담당자들의 젠더관점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젠더관점이 교육이나 관련 사례 등에 노출된 정도와 비례한다고 본다면,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담당자들이 ‘여성친화’ 라든지, ‘성인지적’, ‘성별 특성을 고려’ 라는 의미를 어려워하고 있으며, 오히려 ‘여성우대’ 정책을 성평등정책으로 오인하고 있는 태도를 보였다(컨설턴트 3).

- 세종시 공무원의 젠더관점, 성인지 관점의 수준은 지자체 내의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컨설팅트 4).
- 특히 여성친화도시의 경우, 까다로운 지정 조건 때문에, 기관 내 공무원 성평등교육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자체단체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전부서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음에도 공무원들의 젠더관점이나 성인지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컨설팅트 5).
- 컨설팅에 참여한 과제담당 공무원의 약 30% 정도는 젠더 의식을 갖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나머지 40% 정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설팅에 참여하였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성 및 그 의미 등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나머지 30% 정도는 평가서 작성에 공감하는 편이었다(컨설팅트 6).

### 3) 컨설팅의 어려움

#### (1) 사업담당자들의 의지

- 해당부서나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대상과제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거부감 등으로 본인의 사업이 대상과제에서 제외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대면컨설팅 등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추진의 의지가 약한 사업담당자들이 의외로 많았다(컨설팅트 1).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담당자 다수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여 대면컨설팅 이전에, 분석평가서를 작성한 공무원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컨설팅의 대부분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설명에 할애한 경우가 많아, 컨설팅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컨설턴트 2).

## (2) 사업담당자들의 거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경우, 평가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대면컨설팅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컨설팅 자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컸다(컨설턴트 1).

## (3) 컨설팅 기간

- 사업담당자가 제출한 사업설명서 내용만으로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런 경우, 대면 컨설팅 후 서면컨설팅 완료까지 컨설팅 기간이 2-3일밖에 여유가 없어 질적으로 좋은 컨설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컨설턴트 3).
- 또한 사업담당 공무원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 사업에 대한 설명, 사업에서의 젠더관점, 실현 가능한 정책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면컨설팅 시간의 짧음은 2017년 세종시 컨설팅의 한계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질이 담보된 컨설팅을 위해서는, 대면컨설팅 자체 시간의 확보와 함께, 대면 컨설팅과 서면컨설팅 기간도 일정 정도 확보가 필요하다(컨설턴트 6).

## (4) 정책개선안 도출의 어려움

- 사업담당자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사업계획서, 예산서, 결과보고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등)를 제공하지 않고 컨설턴트의 컨설팅 의견에 부정적으로만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컨설턴트와 사업담당자간의 충분한 정보교류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컨설팅과정에서 성평등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어려웠다(컨설턴트 2).

## 4) 대상과제의 적절성

### (1) 체크리스트 활용

- 체크리스트 등을 이용하는 방식은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체크리스트 개발이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과제를 걸러내기에 부적절할 수도 있다(컨설턴트 1).
- 또한 사업담당자인 공무원들이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체크리스트에 대한 이해도 부족, 담당사업에 대한 젠더관점부족(성평서의 대상이 될지, 남녀특성반 영이 필요한 사업인지 등), 체크리스트를 잘못 기재했을 때 점검체계가 부족한 경우에는 체크리스트의 활용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컨설턴트 2).
-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2016년도에 컨설턴트가 대상과제를 선정했을 때보다 사업담당자의 반발이 확실히 줄었다. 그러나 일몰과제 등이 2과제 포함되어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사업담당자가 직접 체크하는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대상과제를 선정한다는 이점이 있으나 사업담당자가 과제를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우, 체크리스트에 바르게 응답하지 않는 경우 등 임의 오류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센터의 업무가 과중되는 경향이 있다(컨설턴트 3)
-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체크리스트 지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컨설턴트 4).
-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가운데 몇몇은 적절치 않은 과제로 보이기도 했다. 또한 사업명으로는 적합해보이거나, 사업계획서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많았다. 체크리스트 외에 담당부서와의 간담회, 전문가들의 검토, 혹은 대상과제만을 담당할 컨설턴트 배정도 대상과제 선정방식에 추가하는 방식

을 고려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컨설턴트 5).

- 세종시의 경우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초기단계로 내부적인 반발이 심한 편이다. 특히 지자체장이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내부적 반발이 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성주류화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무원들의 동의도 아직 안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컨설턴트 6).

## 2절.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언

### 1)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 주체

-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지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세종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받아, 장기적으로 세종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정착시켜 성평등을 확산하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전세종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지정을 받아 인력을 지원받자는 것이다. 이 경우 대전과의 협력을 통해 세종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안정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1) 세종성별영향분석평가 지정의 필요성

- 지정된 센터가 없으면, 세종시가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말고도 법령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부분을 간과할 수도 있다. 세종시는 현재 법령이 많이 입법되는 시기로 젠더관점이 포함된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특히 현재 세종시는 3~5년 주기의 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가 부재할 경우, 계획에 젠더관점을 통합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법령·계획·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결산을 모두 다루게 되고 각종 보고서 작성과 포럼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체계적인 업무가 없다는 점에서는 세종시가 지역의 성평등을 확산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 세종시가 2016년에 사업 대상 상당한 수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합동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의지도 작용했다. 그러나 평가지표가 과제수가 아니라 정책개선 사례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만큼,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질과 정책개선안에 집중해야할 시기이며, 이를 위해서는 과제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지정센터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 (2) 대전세종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통합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센터장 1명과 전담인력 1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인구 30만의 세종시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하는 것은 예산상 부담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2012년부터 센터지정을 받아 센터업무에 대한 노하우와 역량, 전문성을 갖고 있다. 즉 대상과제 선정, 컨설팅,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성주류화 포럼, 찾아가는 교육, 보고서 작성, 예산 관리 및 행정처리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왔다.
- 이런 측면에서 세종시가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통합하고, 대신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전담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아 대전시의 경험을 전수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즉 한 센터에 두 지역이 건강한 경쟁과 협력을 이뤄나가는 체제도 새로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센터는 공무원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센터가 없다고 해서 세종시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에 큰 지장을 받는다는 확증은 없다. 타지자체의 경우에도 지원센터가 있지만 그 센터로부터 얼마만큼의 지원을 유도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는 결국 지자체와 실무담당자의 의지이다. 따라서 센터의 유무가 지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적 개선 등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히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없는 세종시는 충남센터와 대전센터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 경험 속에서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해, 유연하게 필요로 하는 도움을 지원받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 (3)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역할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주요 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과제는 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런 차원에서 세종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다음과 같다.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 2016.6.2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861호, 2016.6.20.,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가족과)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 및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3) 대상과제 선정방식

-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안에서 어떠한 방식이든 대상과제 선정방식은 문제적이다. 사업담당자나 실무담당자, 컨설턴트, 센터 등 어느 누구도 만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국 16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대상과제 선정방식은 모두 다르다.
- 따라서 어떤 방식이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의 성평등상황과 자원을 활용하여 대상과제선정 방식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 2017년 세종시에 활용한 대상과제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각 사업담당자들이 자신의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가 될 수 있는지를 체크한 후, 체크리스트를 수합하여 대전(세종)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점수화를 진행했다. 과제리스트를 세종시 실무담당자와 센터가 함께 과제를 다시 선별했고, 이후에 다시 각 실과에 리스트를 보내,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런 다층적 과정속에서 적절하지 않은 대상과제에 대한 불만이 사업담당자와 컨설턴트들로부터 왔다.
- 세종시에 적합한 대상과제 선정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체크리스트 이용 대상과제 선정 -> 전문가그룹의 대상과제 재선정’을 이상적으로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체크리스트 지표 수립과 과정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전문가그룹이 참여할 경우, 이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이 과정은 진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종시의 경우 대상과제 선정시에 기존 타시도 정책개선사례가 있는 과제를 먼저 점검하여 이들 위주로 개선을 유도

한 이후,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정책개선을 유도한다든지의 전략도 제시할 수 있다. 즉 세종시 실무담당자가 타시도에서 정책개선이 이뤄진 사업을 찾아 대상과제로 선정하여 정책환류의 효과를 앞당기는 방식이다.

##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세종시의 조치

### (1) 단체장의 의지 표명

- 지자체의 분위기, 역량 등이 함께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가 표명되어야 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및 성인지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제도화해야 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보고서 작성 및 실무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 (2)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강화

- 전 부서 공무원들의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세종시 공무원의 이해도나 반발/거부감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 이런 현상은 타 시도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시작된 2010년대 초반에 경험했던 현상이다. 갈등과 저항을 경험한 타 시도는 다음단계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발전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세종시는 그 전 단계로 다음 단계로의 발전이 요구된다.

### (3) 실무담당자의 전문성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활성화된 타시도의 경우, 젠더전문가가 실무담당자로 배치될 경우에는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상위직급으로 배치하고 있는 게 추세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담당자로 7,8급을 선정한 지자체는 제도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따라서 젠더전문가를 실무담당자로 배치하여, 3년 이상 업무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4) 성인지 교육강화

- 실국장급 등 관리직 공무원의 성주류화에 대한 이해와 추진의지 등이 향상될 필요도 있다. 여러 부서와의 협조, 담당공무원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부서를 책임진 실국장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관리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고, 교육내용도 다양화하면서 정례화하는 등의 교육강화가 시급하다.
- 사업담당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뿐만 아니라 사례집을 배포 할 필요가 있다.

#### (5) 의회협력

- 공무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나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무원의 의지가 약한 상황에서 다른 거버넌스 주체들의 적극성을 토대로 공무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 (6) 성별통계구축

- 성별통계구축이 중요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근거자료가 성별통계인데 세종시는 성별통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사업별로 사업수요도, 만족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별로는 결과가 없는 것이 많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업별로 성별통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종시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성인지통계 및 각종 통계의 성별분리통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7) 세종성평등지수

- 세종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안정적 정착과 성평등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의 성평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경제활동(경제활동참가율, 성별임금격차, 상용근로자비율), 의사결정(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관리직 비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교육·직업훈련(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여성의 인권, 복지(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건강 관련 삶의 질, 건강검진 수검률, 스트레스 인지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강력범죄 피해자, 가사노동시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성평등의식, 문화(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자, 여가시간, 여가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여가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 등 지역의 성평등을 확산하고 향상시킬 지표들에 대한 통계구축과 함께 지표의 향상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마련해야한다.

## 참고문헌

- 국회여성위원회(2004), <여성발전기금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 국회.
-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2016),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매뉴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경희 외(2015), <성주류화 기반 정책 평가제도의 성평등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재인(2008), <성평등정책론>, 교육과학사.
- 김태홍(2011), <2011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태홍(2011), <지역 성평등 지수 표준안 개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류유선·주혜진(2016), <대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문옥희·박경애(2014), <전남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실태와 환류 활성화 방안>, 전남여성플라자.
- 박성정(2003),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선행 모범사례 연구>, 여성부·한국여성개발원.
- 성지혜·이미원 (2012), <지역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재) 대구여성가족재단.
- 세종특별자치시(2016),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 조선주(2010),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선주(2014), <성인지 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선주 외(2015). <국가 성인지 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재선(2016),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김태홍(2011), <2011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태홍(2012), <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4),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운영안내>
- 오은정(2011), <KOICA 성 주류화 가이드라인>, 한국국제협력단
- 이수연(2004),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전기택(2011),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연계방안>

-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기택(2012),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 통계 생산 현황 분석 및 확대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차선자(2016), <정책연구용역보고서-입법의 성평등영향분석을 위한 분석방법 및 지침개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 최유진 외(2014),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희선(2017), <최근의 여성 전문직 증가와 노동시장 성과>, KIET산업연구원.
- 김경희(2010), 노인 일자리정책의 성주류화 실행모델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돌순·강민아 외(2010), 성별영향평가 제도 수행조건과 공무원의 수행전략, <페미니즘 연구>, 제10권 1호, 285~333.
- 김미성 외(2007),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고용과 남녀고용평등정책 비교, <아시아여성연구>. 제46권 2호. 85~128.
- 김양희(2003), 젠더 통합된 환경정책의 의미와 발전 과제. 주제발표 2, <여성환경포럼>.
- 마경희(2007),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여성학>.
- 박영란(2004), 외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동향, <여성정책포럼 Vol.6, 한국여성개발원>.
- 우수정(2014),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발전방안 모색,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 이기순(2016),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을 통해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성주류화정책 추진동력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선민(2013).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방안 모색, <젠더연구>, no.18, 63-88.
- 이은경(2014), 한국 성 주류화의 틀짜기에 대한 분석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초점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은아(2016), 성 주류화와 성평등 사회구조로서의 ‘전환가능성’ :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4), 265-288.
- 이재경·김경희(2012), 여성주의 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성평등’ <한국여성학> 28(3), 1-33.
- 임성일(2012),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이 지방재정에 주는 의미와 과제, <한국

- 행정학회>, 제2012년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30.
- 장민선(2011), 젠더적 관점에서의 입법평가에 관한 고찰 : 성별영향평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Vol.3 No.1, 63-86.
- 전주열(2016). 프랑스 재정법상 공회계 제도에 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1호, 1-30.
- 전혜림(2016).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지표 적절성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도시공학과 석사학위논문.
- 허라금(2005), 성 주류화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한국여성학회> 21(1), 199-231.
- 허라금(2008), 여성주의 성평등 개념을 통해 본 성주류화, <여성학논집> 제25집 2호, 45~79.
- EIGE(2015), *Gender Equality Index 2015-Measuring gender equality in the European Union 2005-2012*, (<http://eige.europa.eu/sites/default/files/documents/mh0215616enn.pdf>), 2017년 12월 13일 검색
- Pyper, D. (2015) *'Flexible Working'*, briefing paper, [Online]. Available at: [ext\\_local\\_file\\_imageC:/Users/yk0183/Chrome%20Local%20Downloads/SN01086.pdf](http://ext_local_file_imageC:/Users/yk0183/Chrome%20Local%20Downloads/SN01086.pdf), 2017년 12월 13일 검색
- Pollack, Mark A. and Hafner-Burton, Emilie(2000), *Mainstreaming gender in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7(3): 432-56, ([http://pages.ucs.d.edu/~ehafner/pdfs/gm\\_eu.pdf](http://pages.ucs.d.edu/~ehafner/pdfs/gm_eu.pdf)), 2017년 12월18일 검색
- 스웨덴대사관, 양성평등 스웨덴 정부(2015.11.19.), <<http://www.swedenabroad.com/ko-KR/Embassies/Seoul/--/1/----sys37/>>, 2017년 11월 13일 검색
-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페미니스트 정부<스웨덴정부>” <<http://www.government.se/government-policy/a-feminist-government/>>, 2017년 11월 13일 검색
- 경향신문, 2011년 7월 14일자, “오스트리아, 성평등 방영해 국가(國歌) 개사 결정”
- 광주매일신문, 2014년 9월 29일자 “특집-성인지 평등으로 행복그리다-낭만과 음악이 흐르는 ‘예술천국’ 이 ‘여성천국’ 으로”
- 국민일보, 2017년 4월 3일자, “초저출산 늪 탈출, 뛰는 독일 기는 한국”,
- 세계일보, 2016년10월25일자, “[이슈탐색] 아직도 걸도는 '성인지 예산'...떨기만한 남녀 성평등 사업”
- 나우뉴스, 2016년 12월 19일자, “옥스퍼드대, ‘미스터, 미세스는 이제 그만’ 양

성평등 앞장”

아시아투데이, 2017년 3월 8일자, “G7 중 여성 국회의원이 가장 적은 나라 일본”

연합뉴스, 2017년 2월 27일자, “양성평등의 나라 스웨덴, 육아 휴직자 4명 중 한 명은 아빠”

여성신문, 2017년 2월 14일자 “페미니즘 정당, 세계 정치판 흔든다”

여성신문, 2017년 4월 11일자, “ ‘동일노동·임금’ 은 세계적 흐름...한국은?”

여성신문, 2017년 7월 9일자. “[저출산 정책, 선진국서 배워라] 프랑스 ‘동거가족 인정’ , 스웨덴 ‘스피드 프리미엄’ 으로 출산율 올랐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해외동향, 2016년 11월 15일 게시 [NYPI 청소년 해외동향리포트-영국] 생각하라, 행동하라, 보고하라(Think, Act, Report Initiativ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통계 <http://www.sejong.go.kr/stat.do>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http://www.mogef.go.kr)

통계청 <http://kostat.go.kr>